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정비 방안

이정원·조숙인·엄지원·이상인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정비 방안

저 자

이정원, 조숙인, 엄지원, 이상인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이 정 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조 숙 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엄 지 원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이 상 인 (충남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1-04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정비 방안

발행일 2021년 11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86-9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우리나라에서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한 무상보육·교육 정책이 실시된 이후 취학 전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기관 보육만으로 커버할 수 없어 가정에서의 1:1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

가정 내 1:1 돌봄서비스는 주로 민간의 돌봄서비스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공적 영역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2007년 신규 사업으로 도입된 후 많은 영유아 가정의 선호 속에서 여성가족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사업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공적 차원에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비용 지원을 할 뿐 아니라 서비스 인력까지 양성하는 매우 특이한 경우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와 선호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이러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2007년 신규 사업으로 도입 이후 외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지속되어 왔으나 다양한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객관적 정책 데이터 부재로 근거 기반 정책 개선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20년 5월 아이돌봄 지원법의 개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가 마련되어 마침내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고 국가승인통계로 추진 예정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법적 근거가 마련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국가통계로 승인받기 위해 사전적으로 관련법의 기준을 고려한 조사 설계의 정비와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추진의 차별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사 설계, 필수 조사항목, 표본설계에 반영할 주요 변수와 표본 규모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향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가 실시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방대한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1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요약	1
-----------	----------

I. 서론	2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 내용	25
3. 연구 방법	26

II.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	29
-----------------------------	-----------

1. 사업 배경과 연혁	31
2.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현황	33
3.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조사	60
4. 소결	65

III. 돌봄 관련 주요 국가승인통계 분석	67
--------------------------------	-----------

1. 국가통계 승인의 조건과 특성	69
2. 국가승인통계 현황	76
3. 복지 부문 주요 돌봄 관련 승인통계의 추진현황	79
4. 시사점 및 추진 일정(안)	83

IV. 종합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조사 설계 제안	85
-----------------------------------	-----------

1. 조사 모집단 및 주요 특성	87
2. 조사대상별 표본설계에 반영할 주요 변수 및 적정 표본규모	99
3. 조사 방법	117
4. 조사 항목	119

V.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활용 방안	135
1.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활용 방안	137
2.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제언	139
참고문헌	143
부록	147
부록 1. 부표	147



표 목차

〈요약 표 1〉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국비)	3
〈요약 표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추이(2011~2020)	3
〈요약 표 3〉 소득유형별 이용가구 수	4
〈요약 표 4〉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추진 일정(2019년)	6
〈요약 표 5〉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추진 일정(안)	7
〈요약 표 6〉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종별 조사 방법(안)	9
〈요약 표 7〉 서비스 대상자(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 대상 조사항목	9
〈요약 표 8〉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대상 조사 항목(안)	12
〈요약 표 9〉 아이돌보미 대상 조사 항목(안)	16
〈요약 표 10〉 광역지원센터,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조사 항목(안)	17
〈표 I-3-1〉 자문회의 개최 현황	27
〈표 II-1-1〉 아이돌봄 지원사업 연혁	33
〈표 II-2-1〉 일시연계서비스 특성	36
〈표 II-2-2〉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특성	36
〈표 II-2-3〉 아이돌봄서비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38
〈표 II-2-4〉 2021년 영아종일제서비스 지원유형 및 금액	38
〈표 II-2-5〉 2021년 시간제서비스 지원유형 및 금액	39
〈표 II-2-6〉 2021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지원유형 및 금액	40
〈표 II-2-7〉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국비)	40
〈표 II-2-8〉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추이(2011~2020)	41
〈표 II-2-9〉 서비스 유형별 이용가구(2020)	42
〈표 II-2-10〉 소득유형별 이용가구 수	43
〈표 II-2-11〉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한 양육공백의 기준과 내용	44
〈표 II-2-12〉 가구유형별·서비스유형별 이용가구 수(2020)	45
〈표 II-2-13〉 지역별·서비스 유형별 이용가구 수(2020)	45
〈표 II-2-14〉 2020년 지역별, 유형별 아이돌보미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50
〈표 II-2-15〉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별 가산수당액	55
〈표 II-2-16〉 아이돌봄서비스 양성교육기관 현황(2021년 1월 기준)	57
〈표 II-2-17〉 아이돌봄서비스 광역거점기관(2021년)	58
〈표 II-2-18〉 아이돌봄서비스 2021년, 2022년 서비스 지원 체계 변경 사항	59

〈표 II-3-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시간제, 종일제) 만족도 조사내용	60
〈표 II-3-2〉 아이돌봄 만족도 조사내용	61
〈표 II-3-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62
〈표 II-3-4〉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대상별 조사개요	64
〈표 III-1-1〉 국가승인통계의 정의	69
〈표 III-1-2〉 국가통계작성기관의 지정여부에 따른 통계 분류	70
〈표 III-1-3〉 작성방법에 의한 통계 분류	70
〈표 III-1-4〉 집중형과 분산형 통계제도의 장·단점	71
〈표 III-1-5〉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72
〈표 III-1-6〉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73
〈표 III-1-7〉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74
〈표 III-1-8〉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서 포함 사항	75
〈표 III-1-9〉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 포함 사항	75
〈표 III-1-10〉 통계작성의 미승인 사유	76
〈표 III-2-1〉 부문별 승인통계 현황(2021. 9. 3. 기준)	76
〈표 III-2-2〉 복지 부문 승인통계 현황(2021. 9. 3. 기준)	77
〈표 III-3-1〉 보육실태조사의 통계 개요	79
〈표 III-3-2〉 보육실태조사의 추진 일정(2018년)	81
〈표 III-3-3〉 장기요양실태조사의 통계 개요	82
〈표 III-3-4〉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추진 일정(2019년)	83
〈표 III-4-1〉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추진 일정(안)	84
〈표 IV-1-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 인구: 만 12세 이하 아동 인구 (2020년 주민등록인구통계)	88
〈표 IV-1-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 인구: 만 12세 이하 아동 인구 (2020년 인구총조사)	89
〈표 IV-1-3〉 만 12세 미만 자녀 연령별 맞벌이 가구 현황(2019~2020)	91
〈표 IV-1-4〉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주당 평균 취업시간(2019~2020)	92
〈표 IV-1-5〉 서비스 유형별·소득유형별 이용가구 수	93
〈표 IV-1-6〉 서비스 유형별·연령별 아동 수	94
〈표 IV-1-7〉 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2021년 1월 기준)	98
〈표 IV-2-1〉 아동연령집단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100
〈표 IV-2-2〉 아동연령집단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100

〈표 IV-2-3〉 지역규모 및 아동연령집단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101
〈표 IV-2-4〉 지역규모 및 아동연령집단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101
〈표 IV-2-5〉 2018년 서비스대상자 조사 데이터 지역규모 및 자녀연령대 분포	102
〈표 IV-2-6〉 지역규모 대도시의 자녀연령대별 주요항목 상대표준오차 (CV, %)	102
〈표 IV-2-7〉 지역규모 중소도시의 자녀연령대별 주요항목 상대표준오차 (CV, %)	103
〈표 IV-2-8〉 지역규모 농어촌의 자녀연령대별 주요항목 상대표준오차 (CV, %)	103
〈표 IV-2-9〉 소득기준유형 구분별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103
〈표 IV-2-10〉 소득기준유형 구분별 [일-양육 양립의 어려움(이른 출근으로 아침시간에 아이를 맡겨야 할 때)]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104
〈표 IV-2-11〉 서비스대상자 조사 주요 항목에 대한 2022년 CV값	104
〈표 IV-2-12〉 소득기준유형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106
〈표 IV-2-13〉 소득기준유형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106
〈표 IV-2-14〉 아동연령집단 및 소득기준유형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107
〈표 IV-2-15〉 아동연령집단 및 소득기준유형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107
〈표 IV-2-16〉 2018년 이용자 조사 데이터 소득기준유형별 가구수	108
〈표 IV-2-17〉 소득기준유형 구분별 주요항목 상대표준오차(CV, %)	109
〈표 IV-2-18〉 소득기준유형 구분별 [아이돌봄서비스 주당 총 이용시간]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109
〈표 IV-2-19〉 소득기준유형 구분별 [월평균 이용 비용]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109

〈표 IV-2-20〉 소득기준유형 구분별 [비용 만족도]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110
〈표 IV-2-21〉 이용자 조사 주요 항목에 대한 2022년 CV값	110
〈표 IV-2-22〉 연령대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	112
〈표 IV-2-23〉 연령대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	112
〈표 IV-2-24〉 지역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113
〈표 IV-2-25〉 지역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114
〈표 IV-2-26〉 2018년 아이돌보미 조사 데이터 연령대별 돌보미 수	115
〈표 IV-2-27〉 연령대별 주요항목 상대표준오차(CV, %)	115
〈표 IV-2-28〉 연령대 구분별 [충취업경력]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	115
〈표 IV-2-29〉 연령대 구분별 [아이돌보미 활동만족도(시간당 급여)]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116
〈표 IV-2-30〉 연령대 구분별 [아이돌보미 활동만족도(제도 전반)]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116
〈표 IV-2-31〉 아이돌보미조사 주요 항목에 대한 2022년 CV값	117
〈표 IV-3-1〉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종별 조사 방법(안)	118
〈표 IV-4-1〉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119
〈표 IV-4-2〉 서비스대상자(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 대상 조사항목	121
〈표 IV-4-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대상 조사 항목(안)	125
〈표 IV-4-4〉 아이돌보미 대상 조사 항목(안)	130
〈표 IV-4-5〉 광역지원센터,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조사 항목(안)	132



그림 목차

[그림 II-2-1] 2020년 월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구 수	42
[그림 II-2-2] 2020년 서비스 유형별 이용가구	43
[그림 II-2-3] 2020년 월별 아이돌보미 현황(소속돌보미 기준)	47
[그림 II-2-4] 2019년, 2020년 월별 아이돌보미 현황(소속돌보미 기준)	47
[그림 II-2-5] 2015년-2020년 아이돌보미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48
[그림 II-2-6] 2020년 유형별 아이돌보미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49
[그림 II-2-7] 2020년 지역별, 유형별 아이돌보미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50
[그림 II-2-8] 2020년 아이돌보미 자격증 소지자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51
[그림 II-2-9] 2020년 지역별 아이돌보미 중 자격증 소지자 현황 (활동도우미 기준)	52
[그림 II-2-10] 2020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현황	53
[그림 II-2-11] 2020년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현황	54
[그림 II-2-12]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추진 체계도	56
[그림 IV-1-1] 자녀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중(2019~2020)	91
[그림 IV-1-2] 2020년 지역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현황	95
[그림 IV-1-3] 2020년 지역별 아이돌보미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96
[그림 IV-1-4] 2020년 아이돌보미 연령 분포 현황(소속돌보미 기준)	97



부록 표 목차

〈부록 표 1〉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별 서비스제공기관(2021년 기준)	147
--	-----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연구임.
-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1회성이 아닌 정기적 조사를 통해 이용 실태의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 변화 등 사업의 발전 추이를 지속 추적하며, 조사 결과에 기초한 근거 기반 정책 평가와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여성가족부, 2018: 325).
- 2020년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을 통해 동법 28조의2(아이돌보미 실태조사)가 신설되어 향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실시에 앞서 실태조사의 목적에 부합한 설계와 실태조사의 결과물을 국가승인통계로 추진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함.
- 본 연구는 법정 조사로 예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조사 목적에 부합한 조사로 설계하고, 국가통계 승인을 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사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 내용

- 실태조사 대상의 주요 특성과 조사 설계를 위한 서비스 유형별·가구소득유형별, 지역별 이용가구수, 아이돌보미 양성 및 활동 현황,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이용대상자 통계(12세 이하 아동수 등) 등 분석함.
- 돌봄 관련 국가승인통계들의 국가승인통계 승인 추진 절차에 관한 주요 사항을 분석 하여 국가통계 승인 관련 시사점을 도출함.
-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표본설계에 반영할 주요 변수를 추출하고 이에 따른 대상별 적정 표본규모, 조사 항목과 조사 추진 일정 등 전반적인 조사 설계를 제안함.

다.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전반적 현황, 국가승인통계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조건, ‘돌봄’과 관련된 비교 대상 조사의 목적·대상·항목·조사 설계를 분석함.

☐ 전문가 자문회의

☐ 2차 자료 분석

-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표본설계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2018년도에 실시된 시범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주요 항목을 분석하여, 적정 표본규모 산정 근거로 활용함.

2.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

가. 사업 목적

-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인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시행된 제도임(여성가족부, 2021a: 9).

나.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현황

☐ 서비스 유형

-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대상에 따라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서비스로 구분됨(여성가족부, 2021a: 46-54). 이외 정기이용 여부에 따른 일시연계서비스 등이 있음(여성가족부, 2021a: 42).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형’, ‘나형’, ‘다형’, ‘라형’의 4가지로 지원유형으로 분류되며(여성가족부, 2021a: 31), 지원유형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원함(여성가족부, 2021a: 10).

□ 예산

- 2021년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책정된 여성가족부 예산은 2,514억 93백만원으로 전년 비해 75억 증액됨(여성가족부, 2021b: 51). 2007년¹⁾ 대비 2021년 국비 예산은 약 97배 증가하였으며, 시간제 돌봄에 대한 예산 비중이 가장 큼(약 1,564억원)(여성가족부, 2021b: 51).

〈요약 표 1〉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국비)

단위: 백만원, (%)

영아종일제 돌봄(0~2세)	시간제 돌봄 (0~12세)	아이돌봄미 양성 및 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광역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사업관리	계
23,723 (9.4)	156,435 (62.2)	52,026 (20.7)	18,543 (7.4)	566 (0.2)	200 (0.1)	251,493 (100.0)

자료: 여성가족부(2021b). 2021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51.

□ 이용 현황

-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에 대한 지원의 꾸준한 확대로²⁾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여성가족부, 2018: 31). 단,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 2015년 5,333가구가 이용하여 최대치를 기록한 이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요약 표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추이(2011~2020)

단위: 가구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8	2019	2020
이용가구 계	39,138	51,393	57,687	63,546	64,591	70,485	59,663
시간제	37,934	47,700	52,354	58,489	60,053	66,783	56,525
영아종일제	1,204	3,693	5,333	5,057	4,538	3,702	3,138

주: 시간제 이용자 수에는 종합형, 질병감염아동 이용자 수가 합산된 수치임.

자료: 1)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p.49 〈표 II-2-1〉

2)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 서비스 유형별로는 시간제 일반형이 53,046가구가 이용하여 전체 이용가구 수의 88.9%에 달함(여성가족부, 2020a: 2). 시간제 일반형이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중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서비스임.
- 소득유형별로는 '가'형의 이용 비중이 51.1%로 가장 높고, 지원을 받지 않는 '라'형 22.6%, '나'형 21.5%, '다'형 4.8% 순임.

1) 2007년 예산은 국비 2,600,452천원, 지방비 포함 3,952,684천원임(권미경·박원순·엄지원, 2016: 77).

2) 본고 〈표 II-1-1〉 참조.

〈요약 표 3〉 소득유형별 이용가구 수

단위: 가구(%)

75%이하(가형)	75~120%이하(나형)	120~150%이하(다형)	150%초과(라형)
30,493 (51.1%)	12,812 (21.5%)	2,848 (4.8%)	13,510 (22.6%)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이용가구 수가 가장 많으며(2020년 말 기준(누적) 13,991가구: 전국 대비 23.5%), 서울시 8,766가구(14.7%), 경북 4586가구(7.7%), 경남 3,879가구(6.51%), 부산 3,861가구(6.48%) 순임(여성가족부, 2020b).

□ 아이돌보미 현황

- 2020년 아이돌보미(소속돌보미)³⁾는 월별 최고 23,376명(2020년 10월)에서 최저 22,474명(2020년 5월)으로 나타남(여성가족부, 2020a: 4).
- 활동도우미⁴⁾ 기준으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수가 증가해왔음. 단, 2020년의 경우 아이돌보미수가 2019년에 비해 약 200명 정도 낮게 나타나 지난 6년 중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임(여성가족부, 2020a: 1, 4).
- 서비스 유형별로는 시간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수가 2020년 12월 기준 23,69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영아 종일제(4,603명), 질병감염(2,391명), 기관연계(1,255명), 종합형(1,241명) 순으로 나타남(여성가족부, 2020a: 18).
- 지역별, 서비스 유형별 활동돌보미 수는 전 지역에서 시간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수가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나 지역마다 서비스 별 활동 아이돌보미 수의 경향에 차이가 나타남.

□ 전달체계 및 행정

-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광역거점기관, 교육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의 전달체계를 거쳐 각 가정에

3) 소속돌보미는 돌보미 양성 후 기관에 고용계약이 되어있는 인력을 의미함. 본 보고서에서 이용한 소속돌보미 자료는 누적된 수치가 아니고 해당 년, 월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을 산출함. 따라서 월별로 새롭게 양성된 아이돌보미와 계약 종료된 아이돌보미의 수가 반영되어 월별로 가감이 있음.

4) 활동도우미 통계 자료는 각 해당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누적 수치를 의미함. 해당년도 중간에 계약이 중단되어 더이상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않는 인원 역시 누적되어 포함된 값임.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21a: 14).

- 2022년 1월 1일부터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제가 변경되어, 사업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새로 지정하고 운영되어, 향후 아이돌보미의 소속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되며, 이들을 배치하는 업무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지속하게 될 예정임⁵⁾.

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조사

□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사업의 중앙 전달체계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시간제/영아종일제)와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 98) 1년주기로 실시됨.

□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실태조사(2018)

- 2018년에 여성가족부 수탁과제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법정조사화를 염두에 둔 시범조사였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대상 가구,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여성가족부, 2018: 37-38).

3. 돌봄 관련 주요 국가 승인통계 추진 현황

가. 주요 국가 통계의 승인통계 추진 현황

□ 보육실태조사⁶⁾

- 보육실태조사는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5)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1. 1.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C%9D%B4%EB%8F%8C%EB%B4%84%20%EC%A7%80%EC%9B%90%EB%B2%95>에서 2021. 10. 26. 인출.

6) 이 부분은 보육실태조사 통계설명자료 (<http://www.narastat.kr/metastat/svc/SvcMetaDcDtaPopup.do>)에서 2021. 9. 3. 인출)에 근거함.

지금까지 총 5차례 실시되었고, 2021년 제6차 조사가 실시중임.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와 이용만족도, 요구도 파악 및 보육시설 운영의 전반적 현황 파악을 통한 보육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보육실태 기초 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함.

- 보육실태조사의 조사는 가구조사와 어린이집 조사의 2종으로 나뉘며, 가구조사의 대상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가구, 어린이집 조사의 대상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임.

□ 장기요양실태조사⁷⁾

- 2016년 5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제6조의2에 근거하여 법제화된 이후 2019년 최초로 장기요양실태조사를 기획하여 실시함.
- 장기요양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의 현황을 조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양적 및 질적 개선을 도모하며,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장기요양실태조사의 경우 조사표 개발에 상당한 기간을 할애했으며 조사표 개발의 기간 동안 통계승인을 위한 자료 작성을 동시에 추진하여 조사표 개발 직후 통계승인 신청과 승인이 단기간에 잘 추진이 된 사례임

〈요약 표 4〉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추진 일정(2019년)

추진과제		세부추진내용	추진시기
설문지개발 및 확정	설문지 개발	조사표 개발	‘19. 3. 15 ~ ‘19. 7. 23
	최종 설문지 확정	설문지 확정	‘19. 7. 23
		국어연구원 감수	‘19. 7. 15
통계승인		매뉴얼, 결과표 등 통계승인 자료 작성	‘19. 3. 19 ~ ‘19. 8. 31
		통계승인신청 및 승인	‘19. 8. 30

출처: 『장기요양실태조사』통계정보보고서(보건복지부, 2020). p.1 장기요양 실태조사 추진일정(2019년) 표 일부 재구성

나.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추진 일정(안)

- 조사 대상이 4종인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는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추진 일정보다 더욱 빠른 일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7) 이 부분은 『장기요양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보건복지부, 2020)에 근거함

-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는 조사 대상이 4종이나 되어 설문지의 구성과 매뉴얼, 통계승인 자료 작성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승인 통계로 추진하기 위해 통계청 관련 부서와의 논의 시간도 염두에 두어야 함.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등 대상자 모집단의 규모가 매달 변동하므로, 조사표 개발과 통계승인 관련 각종 서류 작성과 더불어 통계승인 신청을 앞둔 1달 이내 모집단 정보를 확보하여 빠른 표본설계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요약 표 5〉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추진 일정(안)

추진과제		세부추진내용	추진시기
통계청 담당부서 협의		조사의 필요성(차별성), 효과성	‘22. 2 ~ 4
설문지 개발 및 확정	설문지 개발	조사표 개발	‘22. 3 ~ 5
		전문가 워크숍	‘22. 5
	최종 설문지 확정	예비조사	‘22. 5 ~ 6
		설문지 확정	~‘22. 6
표본설계		모집단 규모 확정	~‘22. 6
		모집단 정보/명단 확보에 따른 표본설계	~‘22. 7
통계승인		매뉴얼, 결과표 등 통계승인 자료 작성	‘22. 6 ~ ‘22. 7
		통계승인신청 및 승인	‘22. 8. 10 ~ 8. 30
조사추진		조사업체선정	‘22. 8. 10 ~ 8. 30
		실사	‘22. 9

4. 종합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조사 설계 제안

가. 조사대상별 표본설계에 반영할 주요 변수 및 적정 표본규모

□ 서비스 대상자 조사

- 주민등록인구 2021년 9월 기준 12세 이하 아동의 모집단 정보(5,209,721명)를 이용하여 단순랜덤추출 가정 하에 대표성 있는 표본수를 산정 시 신뢰수준과 오차한계에 따라 90%신뢰수준, 오차한계 0.05일 경우 272명에서 95%신뢰수준, 오차한계 0.01일 경우 9586명까지의 표본규모가 가능.
- 지역규모 및 아동연령집단별 모집단 정보를 이용하였을 때의 적정표본수는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인 4,598명임.

-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대상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실시할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목표 상대표준오차를 표본규모별(완료수 기준)로 산출한 결과를 활용시, 2018년도의 완료 표본 수(2,020) 이상으로 조사한다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임.

□ 이용가구 조사

- 서비스 이용가구는 2020년 기준으로 59,663가구로 모집단 정보(59,663가구)를 이용하여 단순랜덤추출 가정 하에 대표성 있는 표본수를 산정 해보았을 때, 신뢰수준과 오차한계에 따라 90%신뢰수준, 오차한계 0.05일 경우 271가구에서 95%신뢰수준, 오차한계 0.01일 경우 8272가구까지의 적절 표본수를 산출할 수 있음.
- 아동연령구간 및 소득유형별 이용아동 수의 모집단 정보를 이용하였을 때 적정 표본수는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인 5,124명으로 볼 수 있음.
-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서 이용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실시할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목표 상대표준오차를 표본규모별(완료수 기준)로 산출한 결과를 활용시, 2022년 이용자 조사에서는 4,000가구 이상 조사 완료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이돌보미 조사

- 아이돌보미는 지역별 분포, 소속기관별 분포, 연령대가 중요한 표본설계의 기준이 될 수 있음. 2021년 4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이돌보미 채용, 시·군·구 간 수급 불균형 해소, 노무 등을 관리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근거가 신설되어,⁸⁾ 2022년부터 전국 227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로 아이돌보미의 소속기관이 바뀌게 됨. 지역과 돌보미 연령대를 고려한 표본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아이돌보미의 2020년 소속돌보미 수인 모집단 정보(23,185명)를 이용하여 단순랜덤추출 가정 하에 대표성 있는 표본수를 산정 해보았을 때, 90%신뢰수준, 오차한계 0.05일 경우 269명에서 95%신뢰수준, 오차한계 0.01일 경우 6790명까지의 샘플 수가 필요함.

8)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4. 30.).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가족 지원 체계 강화

- 연령대별 아이돌보미 조사 표본규모는 신뢰수준 및 오차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3일 경우 4,587명으로, 5천여명 정도 규모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조사의 적절성에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음.
- 지역별 활동돌보미 수 모집단 정보를 이용하였을 때의 적정표본수는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인 4,740 명 정도로 볼 수 있음.
- 2018년도 주요 항목의 CV값을 이용하여 2022년 예상 표본 규모에 따른 목표 CV값을 산출한 결과, CV값이 모두 2% 내외로 적절하므로, 아이돌보미 조사는 5천명 정도의 규모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나. 조사 방법

〈요약 표 6〉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종별 조사 방법(안)

구분	접근 방법	조사 방법	비고
이용대상자 조사	- 조사구 방식 활용	면접조사	표본조사
이용자 조사	1안) 서비스 이용자 명단 확보를 통한 접근(랜덤 샘플링) 2안) 서비스제공기관별 조사사례 협조를 통한 접근	1안)면접조사 2안)온라인 조사(이메일, 모바일 활용)	
아이돌보미	1안) 아이돌보미 명단 확보를 통한 접근(랜덤 샘플링) 2안) 광역서비스지원센터별 조사사례 협조 및 할당을 통한 접근	1안) 면접조사 2안) 온라인 조사 (이메일, 모바일 활용)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명단 확보를 통한 접근	1안) 온라인 조사 (이메일, 모바일 활용)	전수조사

다. 조사 항목

□ 서비스 대상자(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

〈요약 표 7〉 서비스 대상자(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 대상 조사항목

구분	문항 번호	2018년 조사 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응답가구 특성	선문	대상자녀 유무, 자녀수, 대상자녀 출생연월/성별, 거주지역, 응답자 성별, 가족유형	(유지)
	1	가구원수	(유지)
	2	부모 취업관련 특성(취업상태, 근로형태, 일평균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맞벌이) 일/학업으로 인한 양육 어려움 정도	(유지) (수정) 부모 취업관련 특성에 교대근로 등의 특수한 근로형태 추가, 맞벌이 대상을 맞벌이(한부모포함) 으로 수정

구분	문항 번호	2018년 조사 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3	가구소득	(유지)
	4	자녀 장애/질병 유무	(유지) 장애/질병 해당 예 추가
자녀 양육 실태	1	막내자녀 취학여부 막내자녀(취학/미취학)의 주양육자	(유지)
	2	막내 자녀 발달 시기별 돌봄사람(기관) 및 모의 취업상태)	(유지)
	3	긴급 돌봄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유지)
아이돌봄 서비스 인지 및 이용경험	4	인지여부	(유지)
	5	신청경험 여부	(유지)
	6	이용 경험 여부 (이용경험자) 이용해 본 서비스 유형, (이전경험자) 중단 이유 (종일제 이용경험자) 이용 이유	(유지) 과거이용자 이용기간 응답란 추가, 이용 서비스유형 수정(질병감염아 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일시 연계서비스 추가), 중단이유 중복응답으로 수정 (추가) 코로나19 관련 문항
	7	(이용경험자) 이용 이유	(유지) 보기 추가(정부지원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어서, 국가 사업으로 신뢰가 가서)
	8	신청 후 대기 경험 여부 (신청 후 대기 중) 대기 기간 (신청 후 대기 중) 대기 중인 이유 (신청 후 대기 중단) 대기 중단 이유	(유지)
	9	(신청경험 없음) 미이용 이유	(유지) 보기 추가(아동학대 사례 보도/ 주변 경험 등 부정적 인식)
	10	(신청경험 없음) 정부 지원의 구체적 내용 인지 여부 정부 지원 세부사항 인식 전/후의 이용 의향	(유지) 정부지원 비용표 최신 업데이트
[이용수요] 향후 서비스 이용 계획	11	향후 이용 계획 의향 향후 5년('19-'23) 년도별 이용 의향 향후 5년('19-'23) 년도별 이용희망 유형 주간 이용 희망 시간대 야간 및 주말 서비스 이용 의향 (현재 미이용/향후 이용희망) 향후 이용 희망 이유 (이용의향자) 종합형/보육교사형 이용의향, 이용미희망 이유	(유지) 향후 이용계획 기간 3년으로 단축(5년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실태 조사 주기와 맞춰 수정), 향후 이용 희망 이유 보기 수정(타 서비스와 비교내용 외에 본 서비스의 장점도 추가, 공공 서비스를 알게 되어서, 취학 후 방과후 돌봄이 필요하여서 등) (추가) 보육교사형 이용의향자 희망이유 (혹은 기대하는 서비스내용), 전문화된 서비스 유형 필요여부, 필요 서비스 내용, 돌봄공백 여부, 돌봄공백이 있는 미이용가구 대상 미이용 이유
	12	민간육아도우미 이용 경험 민간육아도우미 이용형태(유형, 월간이용	(유지)

구분	문항 번호	2018년 조사 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경험 및 인식		일수, 회당 이용시간, 월 이용비용) 민간육아도우미 이용 이유	
	13	(공공+민간 이용경험자) 공공 대비 민간 육아도우미의 장점	(유지) 보기 추가(민간 도우미가 더 빨리 연결됨, 연속성)
	14	(공공+민간 이용경험자) 민간 대비 공공 아이돌보미의 장점	
아이돌봄 서비스 정책 만족도 및 개선요구	15	정책평가(긍/부정 정도) 긍정평가 이유 부정평가 이유	(유지) 긍정평가 보기 추가(국가 사업으 로 신뢰할 수 있어서, 일가정 양립에 도움, 돌봄부담 경감) (추가) 공공 아이돌보미 필요요건, 공공서 비스로서 민간 대비 기대하는 차별성
	16	비용부담 수준 평가	(유지) 지원 단가 최신 업데이트
	17	최대 지불 의향 비용 수준	(유지) 보기 상향수정(연속형 금액으로 수정도 고려)
	18	(이용경험자) 항목별 개선 필요도(비용 지 원대상 확대, 비용 지원 수준 상향, 돌 보미 모니터링 및 자격 기준 강화, 서 비스 내용 전문성 제고, 이용시간 확 대, 신청-연계 체계 효율화)	(유지) 항목에 '정부지원 시간 확대' 추가
추가항목		-	(추가) 코로나19 관련 문항 (코로나 전/ 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 가 여부, 증가 이유, 신청여부, 질병 감염아동서비스 이용여부/이용만족도, 필요 서비스 유형/내용, 이용기관 휴 원/휴교/교사 백신접종 혹은 자가격 리 등 경험 여부, 코로나19 관련 긴 급보육 시 대처 방법/필요 기간, 팬 데믹으로 인한 가정양육 가능 최대 기간, 향후 팬데믹 시 기관 대신 이 용 의향, 이용 이유/미이용 이유 등)

주: 1) 변경 전은 2018년 조사항목이고, 실태조사(안)은 본 연구의 결과임.

2) 수정할 항목은 밑줄로 표기함.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p.36, pp.373-384.

□ 이용자(가구) 조사

〈요약 표 8〉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대상 조사 항목(안)

구분	문항번호	2018년 조사 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자녀양육 특성	1	응답자 성별	(유지)
	2	총 자녀수	(유지)
	3	서비스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동의 수, 연령, 성별, 이용 여부(자녀별 응답)	(유지)
	(추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자녀	(추가) 응답 가구의 자녀들 중 서비스 이용 대상 자녀를 특정하는 질문 필요
	4	미취학 자녀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여부	(유지)
	4-1	미취학 자녀가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의 종류	(유지)
	4-2	아이돌봄서비스와 반일제 이상 기관을 함께 이용하는 이유	(유지)
	(추가)	취학 자녀가 방과후에 이용하는 기관 유무	(추가) 취학자녀의 방과후 돌봄기관 이용 특성
	(추가)	취학 자녀가 방과후에 이용하는 기관의 종류	(추가) 취학자녀의 방과후 돌봄기관 이용 특성
	(추가)	취학 자녀가 방과후에 아이돌봄서비스와 기관을 함께 이용하는 이유	(추가) 취학자녀의 방과후 돌봄기관 이용 특성
	(추가)	취학자녀의 돌봄에 대한 아이돌보미에 기대하는 역할	(추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	5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정책에 관한 인지 여부	(유지) 정책 변경 내용을 반영한 보기 수정
	(추가)	이용해본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6	현재 이용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유지) 서비스 유형의 변경 사항 반영
	6-1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가구의) 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함에도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유지)
	7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유지)
	8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작 시기	(유지)
	9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기간	(유지)
	(추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방법	대기시스템 이용 경험 질문 추가
	(추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시스템 이용 만족도	대기시스템 이용 경험 질문 추가
	(추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점 항목 동의도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점 항목에 대한 동의도 추가
	10	아이돌봄서비스 정기적 이용 여부	(유지)

구분	문항번호	2018년 조사 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10-1	(정기 이용시) 주당 이용 횟수	
	10-2	(정기 이용시) 주당 이용 시간	
(추가)	(정기 이용시) 이용 시간대		(추가) 현재 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욕구 파악 필요. 문 20-1, 20-2을 활용해 현재 이용 시간대에 대한 설문으로 변형
(추가)	(정기 이용시) 주당 이용 시간에 대한 만족도		(추가)
(추가)	(정기 이용시 주당 이용시간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더 이용하지 않는 이유		(추가)
	10-3	(정기 이용시) 주중/주말/방학중 이용 시간대	
(추가)	(수시 이용시) 월평균 이용 횟수		(추가) 수시 이용 형태 파악 필요
	11	아이돌봄서비스 회당 평균 이용시간	
	1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월평균 지출 비용(정부지원금 제외)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_이용 시간의 양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이용 변화 파악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_이용 시간대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이용 변화 파악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_지원대상 경험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경험 파악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만족도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경험 파악
(추가)	지출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		(추가)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도 파악
	13-1	해당하는 소득기준 유형	(유지) 문 6 앞으로 위치 변경 고려
	13-2	이용요금 및 부담수준의 적절성 정도	(변형) '이용요금의 적절성 정도'와 '본인 소득기준 유형의 본인부담 적절성 정도'로 구분하여 질문
	13-3	부담 가능한 최대 본인 부담액 수준	(삭제) 응답의 주관성이 높고, 응답 결과를 본인 부담 수준 결정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1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애로사항	(유지)
	1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유지)
(추가)	대기시스템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		(추가)
(추가)	간편 결제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		(추가)
(추가)	모바일 앱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		(추가)
	16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 체감하는 변화	(유지)
	17	아이돌보미와의 갈등 경험 여부	(유지)

구분	문항번호	2018년 조사 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17-1	아이돌봄미와의 갈등 이유	(유지)
	17-2	아이돌봄미와의 갈등 해결 방법	(유지)
	18	선호하는 아이돌봄미 연령	(유지)
	18-1	해당 연령의 아이돌봄미 선호 이유	(유지)
	(추가)	선호하는 아이돌봄미 경력	(추가) 아이돌봄미 질 제고 요구 관련 문항 추가
	(추가)	해당 경력의 아이돌봄미를 선호하는 이유	(추가)
	(추가)	돌봄 관련 자격증 소유 아이돌봄미에 대한 선호도	(추가) 아이돌봄미 질 제고 요구 관련 문항 추가
	(추가)	자격증 소유 아이돌봄미를 선호하는 이유	(추가)
	19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단 경험	(유지)
	19-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단 이유	(유지)
향후 아이돌봄미 이용 계획 및 개선요구	20	향후 5년 내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유형별 이용 계획	(변경 또는 삭제) 향후 1년 이후의 이용 계획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결과 활용이 의문시. 다음해 이용 계획만 질문하거나 삭제.
	20-1	평일 희망하는 서비스 이용 시간	(변경) 현재 운영시간 외 희망 이용 시간 체크할 수 있도록 추가. 다음해 희망이용시간으로 한정
	20-2	평일 야간, 주말 서비스 희망 여부	(변경) 주말 희망하는 서비스 이용 시간 문항으로 변경.
	21	종합형 서비스 이용 희망 여부	(변경) 종합형 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서비스 이용 희망 여부를 질문하는 문항으로 변경
	21-1	종합형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변경) 서비스 유형별 해당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이유
	22	보육교사형 서비스 이용 희망 여부	(삭제) 보육교사형 서비스 미운영에 따라 삭제. 돌봄관련 자격증 소지 아이돌봄미에 대한 선호 문항으로 대체될 수 있음.
	22-1	보육교사형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삭제) 서비스 미운영에 따라 삭제
	23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 요구 사항	(유지)
	24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논의 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	(변경) 보기의 개선사항 중 실현된 사항 삭제 및 해당 시점의 개선 논의 사항으로 보기 대체
아이돌봄미 대체서비스 이용 경험	25	민간육아도우미 이용 경험	(유지)
	(추가)	(민간육아도우미 유경험자) 민간도우미 이용 경로	(추가) 민간도우미 이용 경로 변화 파악 필요
	25-1	(현재 이용중) 민간육아도우미 병행 이용 이유	(유지)

구분	문항번호	2018년 조사 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25-2	(현재 이용중) 민간육아도우미 서비스 이용 기간	(유지)
	(추가)	(현재 이용중) 민간도우미 이용 형태	(추가) 정기/ 수시 이용 파악.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형태와 동일 형태 추가
	25-3-1	(현재 이용중) 민간도우미 이용 유형	(유지)
	25-3-2	(현재 이용중) 민간도우미 이용의 빈도	(유지)
	25-3-3	(현재 이용중) 민간도우미 1회당 이용 시간	(유지)
	(추가)	(현재 이용중) 민간도우미 시간당 급여	(추가)
	25-3-4	(현재 이용중) 민간도우미 월평균 이용 비용	(유지)
	26	민간도우미에 비해 아이돌보미(서비스)의 장점	(변형) 동일 항목에 대한 민간도우미와 아이돌보미의 특성에 대한 동의도 정도로 비교 가능하도록 함.
	27	아이돌보미(서비스)에 비해 민간도우미의 장점	
응답가구 특성	28	동거 가구원수	(유지)
	29	가족구성	(유지)
	30	가족유형	(유지) 양육공백 가정 종류 확인
	31-1	근로특성(취업 여부)	(유지)
	31-2	근로특성(취업자의 근로 형태)	(유지)
	31-3	근로특성(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유지)
	31-4	근로특성(종사상 지위)	(유지)
	32	가구소득	(변경) 총 가구소득만 질문
이용 중단가구 설문	(추가)	이용중단 가구의 (중단 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추가) 이용실태 범주의 설문 문항을 서비스 이용 중단 전의 이용실태로 응답하도록 동일 문항 구성으로 추가할 필요
기타 추가안			정부 정책의 변화 내용(서비스 이용 요금, 돌보미 자격제도 도입, 모바일 앱, 대기시스템, 간편결제 도입, 아이돌보미 만족도 평가 결과 열람, 아이돌보미 자격제도 도입 등)에 대한 인지 정도와 만족도 파악 문항
기타 수정안			서비스 대상자녀의 연령별로 구분된 범주 구성(영아/유아/초저/초고)

주: 1) 변경 전은 2018년 조사항목이고, 실태조사(안)은 본 연구의 결과임.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p.36, pp.385-396.

□ 아이돌보미 대상 조사

〈요약 표 9〉 아이돌보미 대상 조사 항목(안)

구분	문항 번호	2018년 조사 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취업경력 및 특성	1	아이돌보미 활동 여부, 활동 유형	(유지)
	2	취업 경력(기간)	(유지)
	3	아이돌보미 활동 이전 아동 대상 취업경 력(직종/업무), 경력, 대상 아동 연령	(유지)
	4	정부 사업 활동 경험	(유지)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5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경험 유무 양성교육 내용 만족도 양성교육 방법 만족도 불만족 이유	(수정) 시간 적절성(교육 일수, 교육 시 간, 교육 횟수), 내용 적절성(도움 되었 던 교육 내용, 필요한 교육 내용) 질문 으로 수정
	6	양성교육 개선사항	(유지)
	7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경험 유무 보수교육 내용 만족도 보수교육 방법 만족도 불만족 이유	(수정) 시간 적절성(교육 일수, 교육 시 간, 교육 횟수), 내용 적절성(도움 되었 던 교육 내용, 필요한 교육 내용) 질문 으로 수정
	8	보수교육 개선사항	(유지)
아이돌봄 활동 실태와 만족도	9	아이돌보미 활동 경력(기간) - 구간	(유지) 연속변인으로 수정(0년 0월)
	10	돌보미로 활동하는 시간(종일제/시간제) 한 주 활동 시간(평일/주말) 선호하는 시간(평일/주말)	(유지)
	11	가장 선호하는 활동 시간대 선호하는 이유	(유지)
	12	돌봄 선호 연령	(유지)
	13	주당 돌보미 활동 시간	10번 문항과 중복되므로 삭제
	14	돌보미 활동 동기	(유지)
	15	돌보미 활동 외 정기적 유급 직업 활동 유무, 직업 종류, 월 평균 급여	(유지)
	16	선호 활동 유형(종일제 vs. 시간제) 선호 이유	(유지)
	17	활동 중단 여부(1개월 이상) 활동 중단 기간 중단 이유, 어려움 다시 일하게 된 이유	(수정) 활동 중단 이유만 남기고 활동 중 어려움(17-2-2)은 19번으로 통합
	18	아이돌보미 관련 만족도	(유지)
아이돌봄 활동의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	19	아이돌보미 활동 어려움	(유지)
	20	활동 개선이 필요한 부분	(유지)
	21	4대 보험 만족도	(수정) 1개월 기준 60시간 이상 근무일

구분	문항 번호	2018년 조사 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만족하지 않는 이유	때 4대보험을 제공하는 기준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으로 수정 4대 보험 가입 관련 개선점 질문 추가
	22	아이돌보미 직업 추천 의향 추천/비추천 이유	(유지)
응답자 특성	23	성별	(유지)
	24	연령	(유지)
	25	자녀 유무 자녀 수, 연령, 동거 여부	(유지)
	26	건강상태	(유지)
	27	월평균 가구소득 - 구간 아이돌보미 개인 월 평균 소득 - 구간 소득 만족도	(유지) 연속변인으로 수정(000만원)
	28	희망 근무 시기(언제까지)	(유지)
	29	최종학력, 전공	(유지)
	30	소지 자격증	(유지)
추가안			코로나 관련 질문 추가(위생이나 감염 위험 관련, 아이와의 상호작용 등) 인성 적성검사 받는 것에 대한 인식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pp.397-407 설문지 내용 바탕으로 정리

□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조사

〈요약 표 10〉 광역지원센터,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조사 항목(안)

구분	문항 번호	2018년 조사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서비스제공기관
응답자 특성	1	성별	(유지)	(유지)
	2	아이돌보미 업무 종사 기간	(유지)	(유지)
	3	근무 지역	(수정) 시, 도로 작성	(수정) 시, 도로 작성
	4	인력 유형(전담/지원)	(유지)	(유지)
	5	소지 자격	(유지)	(유지)
기관 기본 현황 및 업무 수행 전반	6	기관 내 아이돌봄서비스 업무 담당 인력수	(유지)	(유지)
	7	기관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수	(수정) 광역지원센터에서 채용/계약한 아이돌보미 수(지난 한달 기준)	(수정) 기관에서 배치한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 돌보미 수(지난 한달 기 준)
	8	아이돌보미 관련 담당 업무	(유지)	(유지)

구분	문항 번호	2018년 조사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서비스제공기관
	9	(선발) 우선 선발 기준	(유지)	NA
	10	(선발) 선발 업무 어려움	(유지)	NA
	11	(가정 연계) 가정 연계 업무 어려움	NA	(유지)
	12	(가정 연계) 조정위원회 개최 여부, 횟수	NA	(유지)
	13	(가정 연계) 돌보미 교체 주요 사유	NA	(유지)
	14	(가정 연계) 돌보미 활동 계약 해지, 연계 중지 주요 사유	(유지)	
	15	(가정 연계) 이용 가정 서비스 제한 주된 사유	NA	(유지)
	16	(민원처리) 아이돌보미의 불만	(유지)	NA
	17	(민원처리) 정부 지원 이용 가정의 불만	NA	(유지)
	18	(민원처리) 정부 미지원 이용 가정의 불만	NA	(유지)
	19	지난 1년간 자격 정지 자격 취소된 아이돌보미 수	자격정지 기준 변화 내용 반영: 자격취소 사유에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 만료 이후 3년 내 자격정지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등 추가	NA
업무 및 처우에 대한 인식과 애로사항	20	제공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	(유지)	(유지)
	21	전담 인력 배치기준의 적정성 적절한 전담인력 1인당 아이돌보미 수	(유지) (수정) 적절한 전담인력 1인당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수/계약 대상 아이돌보미 수	(유지) (수정) 적절한 전담인력 1인당 배치하는 아이돌보미 수 아이돌보미 50명당 1명, 200명 이상시 팀장 배치 타당성
	22	기관 내 아이돌보미 업무 담당 총인력 충분성 필요한 인원 총원 수	(유지)	(유지)
	23	업무 담당 시 가장 어려운 점	(유지)	(유지)
	24	아이돌보미 제도의 개선점	(유지)	(유지)
아이돌봄 서비스 업무 개선 요구	25	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봄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선점	(수정) 광역지원센터의 아이돌봄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선점	(유지)

구분	문항 번호	2018년 조사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서비스제공기관
추가안			서비스 체계 변경 이후 운영 안정화 정도 체계 변경으로 인한 어려움	서비스 체계 변경 이후 운영 안정화 정도 체계 변경으로 인한 어려움

주: NA = 해당사항 없음.

자료: 1)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pp.408-413 설문지 내용 바탕으로 정리

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4. 30).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가족 지원 체계 강화.

5.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활용 방안

가.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활용 방안

□ 이용대상자 조사

- 이용자가 극히 미미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추정의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미이용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인지도, 돌봄서비스 욕구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안하거나 못한 이유를 파악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얻는데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이용가구 조사

- 이용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상세한 이용 실태(이용횟수, 회당 이용 시간, 시간대, 비용 등)와 타 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 행태(이용 서비스와 구체적인 이용 행태, 병행 이용 이유)의 파악과 개선사항, 이용 행태의 변화, 정책 변화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 이용자 입장에서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개선 정책 개발에 활용해야 할 것임.

□ 아이돌보미 조사

- 아이돌보미 일자리의 주요 관심 대상층을 파악하는데 활용 가능함.
- 양질의 일자리 제공의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양질의 일자리로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조사

-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들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업무의 현황과 애로사항,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정책 지원의 요구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어 서비스 연계 업무의 개선과 이용자, 아이돌보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활용하여야 할 것임.

나.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제언

□ 육아지원체계 내에서의 차별화된 역할 정립

- 전문화된 일자리, 기관 중심의 돌봄서비스와 차별화된 아이돌봄서비스 만의 역할을 정립하여 사회적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함.
- 지속적으로 숨어 있는 새로운 돌봄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개별 돌봄서비스의 장점을 살려 수요자의 욕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하여야 할 것임.

□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의 안정화

- 조속한 안정화를 통해 서비스 업무의 고도화와 효율화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자격제도 도입과 함께 채용기준의 엄격화로 인력의 질 관리

I

서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 내용

03 연구 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5월, 아이돌봄 지원법의 개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¹⁾ 실시 근거가 마련되었다²⁾. 본 연구는 2020년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향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등 가정양육지원 여건의 개선은 문제인 정부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과제로(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2017년 문제인 정부의 출범 후 적극적인 정책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 지원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정책 데이터의 부재는 서비스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06년 ‘아이돌보미 양성 및 연계 시범사업’으로 시작, 2007년 신규사업으로 본격 도입되어 그간 지속적인 확장과 근거법 제정 등으로 제도 정착 단계에 진입하였고(여성가족부, 2018: 31), 2021년 도입 15년차로 여성가족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 민간 시장에 맡겨져 있는 ‘개인양육지원서비스’에서 유일한 공공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1:1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특성상 단시간 내 공급의 대폭 확대가 어렵고 수요 추정이 불확실하여 사업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는데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기관 중심의 서비스의 한계와 사각지대의 발생, 코로나19 등 기관을 통한 돌봄 제공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공공의 저렴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발전과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요구, 질 높은 제공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의 실태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1) 법상으로는 ‘아이돌보미 실태조사’로 명명됨.

2) 아이돌봄지원법 제28조의2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발전을 위한 객관적 정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의뢰하여 실시한 바 있다. 이는 향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정례화·법정조사화를 염두에 둔 시범적 조사였으며, 2018년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향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법정화가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18: 324). 동 연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양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일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형태로, 영유아 대상 기관 이용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차별화한 조사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1회성이 아닌 정기적 조사를 통해 이용 실태의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 변화 등 사업의 발전 추이를 지속 추적하며, 조사 결과에 기초한 근거 기반 정책 평가와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325). 이러한 제안을 반영하여 2020년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을 통해 동법 28조의2(아이돌보미 실태조사)가 신설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가 법정조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앞서 실태조사의 목적에 부합한 설계와 실태조사의 결과물을 국가승인통계로 추진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국가통계로 추진하고자 한다.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 제도’의 취지는 유사·중복 통계 작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국민 응답 부담 경감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며, 통계의 기술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통계작성 승인을 얻어야 할 9가지의 사항이 존재한다(임명선, 2015).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국가통계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관련법의 기준을 고려한 조사 설계의 정비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아이돌봄지원법 제28조의2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이라는 조사의 목적이 제시되어 있고³⁾,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으로써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아이

3) 제28조의2(아이돌보미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제15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잠재수요자(서비스 대상자)의 4개 집단을 가능한 조사 대상으로 하고, 각 조사 대상에 조사해야 할 주요 내용을 명시하였다. 즉,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목적에 부합하며 특정 대상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에 반영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 항목 등의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법정 조사로 예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조사 목적에 부합한 조사로 설계하고, 국가통계 승인을 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사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과 사업 확대를 위해 이용자,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잠재수요자(이용 대상자) 대상의 조사를 적정 규모로 기획하며,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 조사 시행 관련 주요사항의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또한 국가통계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준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돌봄서비스의 주요 현황을 분석한다.

실태조사 대상의 주요 특성 파악과 조사 규모 설계를 위한 서비스 유형별·가구 소득유형별, 지역별 이용가구수, 아이돌보미 양성 및 활동 현황,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이용대상자 통계(12세 이하 아동수 등)를 분석할 것이다. 소득계층별·가구 유형별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취약계층 대상 활용도, 돌봄 공백 대응 현황, 코로나19 이후의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실태
 2. 아이돌보미의 특성 및 활동 실태
 3. 서비스 기관의 운영 현황 및 종사자 실태
 4.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 정도 및 이용 수요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실태조사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둘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타 보육제도, 다양한 대상층에 대한 돌봄 관련 조사의 주요 사항을 분석 하여 국가통계 승인 관련 시사점을 도출한다.

노인 돌봄 관련 조사 등 가정돌봄, 보육서비스 등 기타 돌봄 관련제도 관련 조사의 주요 조사 설계 관련 사항 분석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차별적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법정 조사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설계를 제안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이라는 아이돌봄지원법 상의 조사 목적과 타 조사와의 차별성 추구, 가정돌봄서비스 수요 측정 등 실태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표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내용을 포함하는 설문 항목을 개발한다.

넷째, 표본 설계에 반영할 주요 변수와 적정 표본 규모 등 표본설계의 주요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가능한 공표수준과 표본할당의 주요 기준을 파악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이용자,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현황을 분석하였다.

첫째, 아이돌봄서비스의 목적과 주요 대상, 지원의 내용 등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활용할 용도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둘째, 표본설계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현재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조사 대상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용자의 경우 지역별, 소득유형별, 이용 서비스 유형별 분포를 파악하며, 아이돌보미의 지역별, 활동유형 및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제공기관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셋째,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국가승인통계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승인통계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조건을 분석하였다.

넷째, 조사통계로 분류되는 국가승인통계 중 ‘돌봄’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비교 대상 조사로 선별하여, 조사의 목적, 조사 대상, 조사 설계를 분석하였으며, 국가통계 승인을 받았던 절차와 과정을 파악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국가통계 승인 추진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나.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 방향 설정, 국가승인통계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표본설계 방향성 선정 등을 위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자문회의는 표본설계의 방향 검토, 승인통계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자문과 설문구성 검토 등 총 3개 안건을 위한 회의를 추진하였으며, 표본설계 관련 통계 전문가,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선행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I-3-1〉 자문회의 개최 현황

구분	일정	안건	대상	비고
1차 /2차	8.18/8.24	- 국가승인통계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 적정 표본규모의 산정 방안	관련 학계 전문가 (통계학)	
3차	10.21 ~ 28	설문항목 검토	관련 학계 전문가 (아동학, 유아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아이돌봄서비스/ 가정 내 돌봄 관련 선행연구자를 중심으로 함

다. 2차 자료 분석

적정 표본규모의 산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표본설계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2018 년도에 이루어진 시범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주요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사종별 적정 표본규모를 산정하는데 활용하였다.

II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

- 01 사업 배경과 연혁
- 02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현황
- 03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조사
- 04 소결

II.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

1. 사업 배경과 연혁

가. 사업 목적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인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시행된 제도이다(여성가족부, 2021a: 9). 이 사업은 부모의 근로상황이나 자녀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돌봄공백 뿐만 아니라 개별보육을 원하는 영아가정을 위한 종일돌봄까지 다양한 돌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여성가족부, 2021a: 7).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소관사업으로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에 근거하여 가정 내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여성가족부, 2021a: 7).

나. 사업 내용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의 영아종일제서비스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시간단위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가 가장 주요한 서비스이며, 질병 감염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어려운 아동을 위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기관연계서비스도 있다(여성가족부, 2021a: 9)

이용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100%로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a: 10).

다. 사업 연혁

아이돌봄지원사업은 2006년에 천안과 울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연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아이돌보미 130명을 양성하여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아동에 대한 긴급한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06. 6. 21: 1). 당시 야근 등 갑작스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의 아동이 그 대상이었고, 가정과 공동체 내 자녀양육지원기능이 약화되어 공적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 도입 배경이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06. 6. 21: 1-2). 아이돌보미는 4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아 양성되었고, 이용요금은 전액 수요자부담으로 시간당 6천원이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06. 6. 21: 1). 이러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2006년 11월에 발표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지원서비스 다양화의 일환으로 포함되었다(재경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 외, 2006. 11: 6).

정부가 예산을 마련하여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도입한 것은 2007년이며, 2009년에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었다(여성가족부, 2021a: 8).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2010년에 0세아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고 이후 지원대상이 지속 확대되어 2017년 이래로 만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여성가족부, 2021a: 8).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운영근거가 되는 「아이돌봄 지원법」은 2012년에 제정되었다(여성가족부, 2021a: 8).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졌는데 4대 보험 가입(‘13년), 휴일 및 야간수당 지급(‘15년), 주휴 등 법정수당 지급(‘19년)이 이루어졌다(여성가족부, 2021a: 8). 영아종일제 대기관리시스템은 2015년부터 운영되었고, 2019년에는 정부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중위소득 150% 이하가 되었다(여성가족부, 2021a: 8). 2018년부터는 정부 지원율이 지속 상향되어왔으며, 시간제서비스의 정부지원시간도 지속 확대되어 2021년 기준 연간 840시간이 되었다(여성가족부, 2021a: 1, 8).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1-1>과 같다.

〈표 II-1-1〉 아이돌봄 지원사업 연혁

추진년도	추진경과
2007년	-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 신규 실시
2008년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65개소)
2009년	- 아이돌봄 지원사업 전국 확대, 장애아 양육지원 사업 분리 운영
2010년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사업 신규 실시(0세아)
2011년	- 영아종일제 최소 이용시간 변경(160시간 → 120시간)
2012년	-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대상 확대,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개칭 -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2012. 8. 시행) - 지원대상 확대(소득하위 70% 이하 → 모든 취업부모 대상)
2013년	- 시간제 돌봄 지원예산 확대 - 아이돌봄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금 지급(2013. 9.) - 취약계층 자녀 등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근거 조항 신설(2013. 11.)
2014년	-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연령 확대(만 12개월 → 만 24개월)
2015년	- 영아종일제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 아이돌봄 휴일 및 야간활동수당 지급
2016년	- 이용가정 소득유형 판정기준 변경(전국가구 평균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17년	-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연령 확대(만 24개월 → 만 36개월)
2018년	- 정부지원 확대 * 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율 상향(5%p)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480시간 → 600시간)
2019년	- 정부지원 확대(중위소득 120% → 150%로 상향) * 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율 상향(5%p)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600시간 → 720시간) * 아이돌봄 치유개선(주휴 등 법정수당 지급)
2020년	-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정부지원 시간 특례(연 720시간 → 960시간)
2021년	- 정부지원 확대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720시간 → 840시간) * 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질병감염아동 정부지원율 상향(5%p)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요금규정 신설

자료: 여성가족부(2021a).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p.1, 8.

2.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현황

가. 서비스 유형 및 지원 현황

아이돌봄서비스 유형과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유형,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 서비스 유형별 특성 및 지원, 전체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서비스 유형별 특성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대상에 따라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가 있으며(여성가족부, 2021a: 46-54), 정기이용 여부에 따른 일시연계서비스 등이 있다(여성가족부, 2021a: 42).

가)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과 관련된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간당 10,040원의 이용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a: 46). 1회에 3시간 이상을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지원 유형 가형~다형은 월 60~200시간 이내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a: 46).

나) 시간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등·하원, 임시보육, 놀이,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기기 등의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기본형 서비스와 기본형 돌봄활동 외에 아동관련 가사를 추가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형 서비스로 나뉜다(여성가족부, 2021a: 47-48). 이용요금은 기본형은 시간당 10,040원이며, 종합형은 시간당 13,050원이며 1회에 2시간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정부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 이내이다(여성가족부, 2021a: 48).

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기관이용 아동⁵⁾을 돌보는 서비스로서 이용가정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a: 50). 아이돌보미가 질병아동의 병원을 동행하거나 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질병 완치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시간당 12,050원으로 1회 2시간 이상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a:

5)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50).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과 기관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를 증빙하여야 하며, 서비스 비용 전액을 가상 계좌로 납부가능한 경우는 긴급 신청도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21a: 51).

라) 기관연계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장 등⁶⁾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기관에서 돌봄수요가 증가하는 특정시간대에 보조인력으로 아이돌보미를 활용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하는 서비스이다(여성가족부, 2021a: 53).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의 기관에 다니는 만 0세에서 12세 아동이 돌봄대상이며 시간당 16,870원의 이용요금으로 1회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21a: 54).

마) 일시연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기이용 여부에 따라 정기이용 서비스, 대기서비스, 일시연계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a: 40-42). 정기이용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보미를 연계 받은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며, 대기서비스는 정기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정회원(대기) 등급이 이용하는 서비스이다(여성가족부, 2021a: 40).

일시연계 서비스는 정회원 등이 정기이용 서비스 외에 긴급돌봄 필요시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으로 다른 서비스 유형과 달리 이용자가 직접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희망일정에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찾아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특징이다(여성가족부, 2021a: 42). 이용요금은 정기이용 서비스 기준과 같으며, 서비스 희망시간 3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21a: 42). 긴급하게 돌봄공백이 생긴 가정에게 유용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6)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공동육아나눔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표 II-2-1〉 일시연계서비스 특성

구분	이용대상	이용방법	이용요금	이용시간	신청 기간
일시 연계 서비스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등급 중에 정기이용 서비스 외에 긴급 돌봄 필요시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PC, 모바일앱 등을 통해 직접 서비스 요청	정기이용 서비스 기준과 동일함 *단, 예치금이 미리 충전되어야 가능	1회 2시간 이상	서비스 시작 3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야간신청은 제한

주: 1)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아이돌보미 휴식을 위해 서비스 신청은 제한되나, 서비스 이용은 제한 없음.
2) 아이돌봄서비스 회원 구분은 웹회원, 승인대기 회원,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가 있으며, 이중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등급이 이용대상임.

자료: 여성가족부(2021a).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38, 42.

바) 유형별 특성 및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특성을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돌봄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영아종일제와 시간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질병아동을 위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와 기관이용 아동의 돌봄보조를 위한 기관연계서비스가 있다(표 II-2-2 참조). 이용 기본시간은 영아종일제만 3시간 이상이며, 나머지 유형은 2시간 이상이다(표 II-2-2 참조). 시간당 이용요금은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기본형이 10,040원으로 동일하며, 가사가 추가된 시간제 종합형이 13,05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2,050원, 기관연계 16,870원으로 돌봄활동 범위에 따라 상이한 수준이다(표 II-2-2 참조). 정부지원시간은 영아종일제의 경우 월 6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이고, 시간제는 연 84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표 II-2-2 참조).

〈표 II-2-2〉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특성

구분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돌봄 대상	만3개월 ~36개월 영아	만3개월 ~12세 이하 아동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사설이용아동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10세~12세 아동
돌봄 활동 범위	영아 돌봄 전반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기본 형 등하원,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간식 종합 형 기본형 활동 + 아동 관련 가사 (청소, 세탁, 조리, 설거지)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재가 돌봄 서비스	기관 내 아동돌봄 보조
이용 시간	1회 3시간 이상	1회 2시간 이상		

구분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시간당 이용 요금	10,040원	기본형 10,040원 종합형 13,050원	12,050원	16,870원
정부 지원 시간	월 60시간~ 200시간 이내	연 840시간 이내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960시간)	*이용가정이 택일	-

주: *질병감염아동지원은 A형(가형, 나형), B형(가형)의 경우 “1) 정부지원시간 차감을 적용, 2) 정부지원시간을 차감하지 않고 정부지원율을 50%로 비용지원” 중에 선택 가능

자료: 여성가족부(2021a).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p.9, 46, 48, 49, 50, 51

정부가 자녀양육과 관련한 지원사업들 간의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시간제서비스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기관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시간제서비스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여성가족부, 2021a: 29). 그러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라형’ 등의 경우는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다(여성가족부, 2021a: 29).

2)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차등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a: 10). 지원유형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형’, ‘나형’, ‘다형’, ‘라형’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통해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여 지원유형을 분류하게 된다(여성가족부, 2021a: 31). 중위소득 기준 75% 이하 가구는 ‘가형’, 120% 이하는 ‘나형’, 150% 이하는 ‘다형’으로 분류되어 정부지원금이 가형 > 나형 > 다형의 순으로 차등되며,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라형’으로 본인부담금 100%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여성가족부, 2021a: 31). 아이돌봄서비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II-2-3〉 아이돌봄서비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형	75% 이하	2,987,963원	3,657,218원	4,318,030원	4,971,452원	5,622,899원	6,274,345원
나형	120% 이하	4,780,740원	5,851,548원	6,908,848원	7,954,324원	8,996,638원	10,038,952원
다형	150% 이하	5,975,925원	7,314,435원	8,636,060원	9,942,905원	11,245,797원	12,548,690원

자료: 여성가족부(2021a).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31.

정부지원금액은 서비스 유형별로 지원비율이 다르며, 가구의 특성(일반가정, 한부모가정 등)과 돌봄 자녀의 출생년도 등에 따라 세부적 기준이 상이하다(표 II-2-4, 표 II-2-5, 표 II-2-6 참조). 2021년도 정부지원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일부 유형에 대해 확대되었다(여성가족부, 2021a: 1). 서비스 유형별로 지원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 2021년도 기준 시간당 10,040원에 대해 일반가정의 정부지원율은 가형(85%), 나형(60%), 다형(15%)이며, 한부모가정이나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의 경우 정부지원율은 가형(90%)에 한해 일반가정보다 지원기준이 완화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1a: 47).

〈표 II-2-4〉 2021년 영아종일제서비스 지원유형 및 금액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0,040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150% 초과
지원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등 ^{주1)}			
정부지원	8,534원 (85%)	9,036원 (90%)	6,024원 (60%)	1,506원 (15%)	없음
본인부담	1,506원 (15%)	1,004원 (10%)	4,016원 (40%)	8,534원 (85%)	10,040원 (100%)

주: 1)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대상

자료: 여성가족부(2021a).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47.

시간제서비스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돌봄대상 아동의 출생년도에 따라 지원비율이 이원화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1a: 49, 52).

시간제서비스는 영유아와 초등 1학년까지(A형)의 경우 지원유형별 정부지원비율이 영아종일제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초등 2학년 이상(B형)에 비해 정부지원이

높은 편이며, 초등 2학년 이상(B형)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가형’만 정부지원비율이 높고, ‘나형’과 ‘다형’은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다(여성가족부, 2021a: 49, 52).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중 A형(2014.1.1.이후 출생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도 기준 시간당 10,040원에 대해 일반가정의 정부지원율은 가형(85%), 나형(60%), 다형(15%)이며, 한부모가정 등의 경우 정부지원율은 가형(90%)에 한해 일반가정보다 지원기준이 완화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1a: 49).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은 가사가 포함된 형태로 본인부담금이 기본형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1a: 49).

〈표 II-2-5〉 2021년 시간제서비스 지원유형 및 금액

시간제서비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150% 초과	
지원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등 ^{주1)}							
아동 출생기준 ^{주2)}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0,040원)	정부 지원	8,534원 (85%)	7,530원 (75%)	9,036원 (90%)	8,032원 (80%)	6,024원 (60%)	2,008원 (20%)	1,506원 (15%)	1,506원 (15%)	없음	없음
	본인 부담	1,506원 (15%)	2,510원 (25%)	1,004원 (10%)	2,008원 (20%)	4,016원 (40%)	8,032원 (80%)	8,534원 (85%)	8,534원 (85%)	10,040원 (100%)	10,040원 (100%)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 13,050원)	정부 지원	8,534원	7,530원	9,036원	8,032원	6,024원	2,008원	1,506원	1,506원	없음	없음
	본인 부담	4,516원	5,520원	4,014원	5,018원	7,026원	11,042원	11,544원	11,544원	13,050원	13,050원

주: 1)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대상

2) A형: 2014.1.1.이후 출생(영유아~초1), B형: 2013.12.31. 이전 출생(초2 이상)

자료: 여성가족부(2021a).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49.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다른 유형의 서비스에 비해 정부지원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표 II-2-6 참조). 보통 본인부담금 100%로 이용하던 ‘라형’가구도 이 용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형’과 ‘다형’도 자녀의 출생년도에 따라 50~60% 정부지원을 받는다(여성가족부, 2021a: 52).

〈표 II-2-6〉 2021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지원유형 및 금액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시간당 12,050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150% 초과	
지원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등 ^{주1)}							
아동 출생기준 ^{주2)}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정부지원	10,243원 (85%)	9,038원 (75%)	10,845원 (90%)	9,640원 (80%)	7,230원 (60%)	6,025원 (50%)	6,025원 (50%)	6,025원 (50%)	6,025원 (50%)	6,025원 (50%)
본인부담	1,807원 (15%)	3,012원 (25%)	1,205원 (10%)	2,410원 (20%)	4,820원 (40%)	6,025원 (50%)	6,025원 (50%)	6,025원 (50%)	6,025원 (50%)	6,025원 (50%)

주: 1)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대상

2) A형: 2014.1.1.이후 출생(영유아~초1), B형: 2013.12.31. 이전 출생(초2 이상)

자료: 여성가족부(2021a).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52.

3) 예산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책정된 여성가족부 예산은 2,514억 93백만원이며, 이는 전년에 비해 75억 증액된 것이다(여성가족부, 2021b: 51).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권미경·박원순·엄지원, 2016: 77), 2007년⁷⁾ 대비 2021년 국비 예산은 약 97배 증가하였다. 2021년 세부 예산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은 시간제 돌봄(약 1,564억원)이며, 영아종일제 돌봄에 약 237억원,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에 약 520억원 가량이 배정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1b: 51).

〈표 II-2-7〉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국비)

단위: 백만원, (%)

영아종일제 돌봄(0~2세)	시간제 돌봄 (0~12세)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광역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사업관리	계
23,723 (9.4)	156,435 (62.2)	52,026 (20.7)	18,543 (7.4)	566 (0.2)	200 (0.1)	251,493 (100.0)

자료: 여성가족부(2021b). 2021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51.

2021년 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서울 30%, 그 외 시·도 70%로 17개 시·도의 지방비 약 1,444억원을 포함하면 총 지원예산은 약 3,957억원 규모이다(여성가족부, 2021a: 111).

7) 2007년 예산은 국비 2,600,452천원, 지방비 포함 3,952,684천원임(권미경·박원순·엄지원, 2016: 77).

나. 이용 현황

1) 개황

아이돌봄서비스는 2007년 여성가족부의 신규사업으로 도입된 이래, 2009년 전국사업으로 확대, 2010년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사업 신규 도입 등 지속적으로 확장되었고(여성가족부, 2018: 31), 이용자에 대한 지원의 꾸준한 확대⁸⁾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다만 2020년에는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용가구가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다만,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 2015년 5,333가구가 이용하여 최대치를 기록한 이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는 합계출산율⁹⁾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영아의 기관 이용률은 증가하면서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2-8〉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추이(2011~2020)

단위: 가구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8	2019	2020
이용가구 계	39,138	51,393	57,687	63,546	64,591	70,485	59,663
시간제	37,934	47,700	52,354	58,489	60,053	66,783	56,525
영아종일제	1,204	3,693	5,333	5,057	4,538	3,702	3,138

주: 시간제 이용자 수에는 종합형, 질병감염아동 이용자 수가 합산된 수치임.

자료: 1)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p.49 〈표 II-2-1〉

2)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단,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 감소로 이용가구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신청가구가 모두 이용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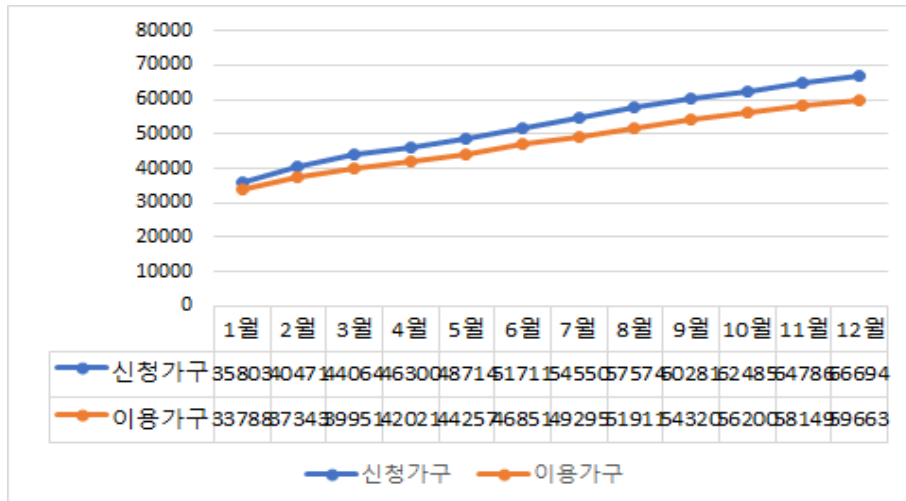
8) 본고 〈표 II-1-1〉 참조.

9)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39명이나, 지속 감소하여 2019년 0.918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에서 2021.

9. 2 인출).

[그림 II-2-1] 2020년 월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구 수

단위: 가구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2) 유형별 이용가구 수

2020년도 12월 기준 아이돌봄서비스의 서비스 유형별 이용가구 수는 다음 <표 II-2-9>와 같다. 시간제 일반형이 53,046가구가 이용하여 전체 이용가구수의 88.9%에 달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중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서비스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아종일제서비스는 3,138가구가 이용하였으며, 질병감염아동 서비스 2,233가구, 종합형서비스 1,246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9> 서비스 유형별 이용가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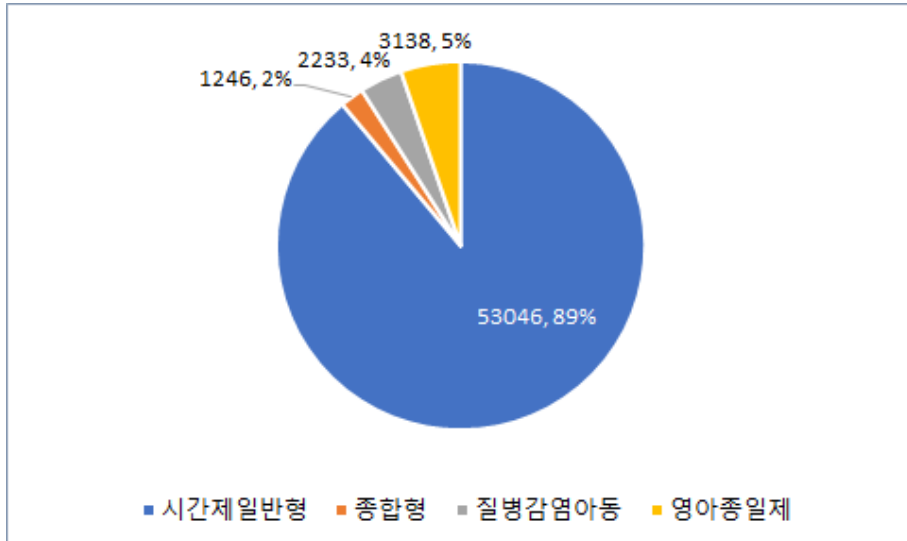
단위: 가구

계	시간제			영아종일제
	일반형	종합형	질병감염아동	
59,663	53,046	1,246	2,233	3,138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그림 II-2-2] 2020년 서비스 유형별 이용가구

단위: 가구, %



주: <표 II-2-9>을 그림으로 구성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¹⁰⁾. <표 II-2-10>에는 2020년말 누적기준 소득유형별 이용가구 수를 제시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는 전체 이용가구 중 중위소득 대비 75%이하인 '가'형에 해당되는 가구가 5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지원을 받지 않는 중위소득 150%초과 가구('라'형)이 22.6%, 중위소득 75~120%이하 가구('나'형) 21.5%, 중위소득 120~150%가구('다'형) 4.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10> 소득유형별 이용가구 수

단위: 가구(%)

75%이하(가형)	75~120%이하(나형)	120~150%이하(다형)	150%초과(라형)
30,493 (51.1%)	12,812 (21.5%)	2,848 (4.8%)	13,510 (22.6%)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10) 본고 2장 2절 2) 참조.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부지원의 결정은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른 기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지, 자녀양육 정부지원의 중복이 발생하는지를 통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된다(여성가족부, 2021a: 26). 아동 연령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육공백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양육공백에 해당하는 가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 2021a: 27).

〈표 II-2-11〉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한 양육공백의 기준과 내용

구분	기준	비고
맞벌이 가정	-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기간 동안은 취업기간으로 인정
한부모 가정	- 한부모로 취업중인 경우 - 비취업 한부모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 -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가정	-
다자녀 가정	- 만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중증 장애인 자녀를 포함한 아동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 부모 모두가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제외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5일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의 출산으로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자료: 여성가족부(2021a). pp.27-28의 내용을 표로 구성.

이러한 가구유형별로 얼마나 이용했는지를 〈표 II-2-12〉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유형은 ‘맞벌이가구’로 전체 이용가구의 51.8%에 달하였다. 다음으로 ‘다자녀가구’ 15.4%, ‘한부모가구’ 15.1%, ‘일반가구’ 13.0%, ‘기타양육부담가구’ 2.9%, ‘장애부모가구’ 1.8%, ‘조손가구’ 순으로 이용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아이돌봄서비스는 현재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에 대응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외 한부모가구, 다자녀가구 등에도 양육공백을 메꾸고 양육부담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표 II-2-12〉 가구유형별·서비스유형별 이용가구 수(2020)

단위: 가구(%)

구분	계	한부모	조손부모	장애 부모	맞벌이	다자녀	기타 양육부담	일반
시간제일반형	53,046	8,332	9	970	27,027	8,140	1,530	7,038
종합형	1,246	274	0	18	603	157	39	155
질병감염아동	2,233	278	0	30	1,358	192	40	335
영아종일제	3,138	131	0	73	1,894	710	94	236
합계	59,663 (100.0%)	9,015 (15.1%)	9 (0%)	1,091 (1.8%)	30,882 (51.8%)	9,199 (15.4%)	1,703 (2.9%)	7,764 (13.0%)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3) 지역별·서비스 유형별 이용가구 수

다음으로 지역별 이용가구 수를 살펴보았다. 〈표 II-2-13〉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총 이용가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이며, 2020년 말 기준(누적) 13,991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전국 이용가구 수 대비 23.5%가 경기도에 분포하였다. 다음으로는 서울시의 이용가구 수가 8,766가구(14.7%)로 많았으며, 경북 4586가구(7.7%), 경남 3,879가구(6.51%), 부산 3,861가구(6.4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경기도에서 시간제 일반형, 시간제 종합형, 질병감염서비스가 모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이용했으며, 영아종일제서비스만이 서울시의 이용가구 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가구 분포는 서비스 대상인 만 12세이하 인구 분포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II-2-13〉 지역별·서비스 유형별 이용가구 수(2020)

단위: 가구, (%)

구분	시간제	종합형	질병감염	영아종일제	계	전국대비 비율
서울	7,521	184	222	839	8,766	(14.7)
경기	12,569	369	549	504	13,991	(23.5)
부산	3,482	101	81	197	3,861	(6.5)
대구	2,104	7	48	101	2,260	(3.8)
인천	2,209	8	111	126	2,454	(4.1)
광주	1,758	72	70	138	2,038	(3.4)
대전	1,390	0	55	100	1,545	(2.6)
울산	1,626	27	59	68	1,780	(3.0)
세종	564	1	21	28	614	(1.0)

구분	시간제	종합형	질병감염	영아종일제	계	전국대비 비율
강원	2,529	59	206	143	2,937	(4.9)
충북	1,629	48	58	96	1,831	(3.1)
충남	2,207	22	139	119	2,487	(4.2)
전북	2,593	41	92	132	2,858	(4.8)
전남	2,491	19	142	129	2,781	(4.7)
경북	4,059	238	77	212	4,586	(7.7)
경남	3,526	30	152	171	3,879	(6.5)
제주	789	20	51	35	895	(1.5)
계	53,046	1,246	2,133	3,138	59,563	(100.0)

자료: 여성가족부(2020b).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통계(세부자료)). 2020년 12월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다. 아이돌보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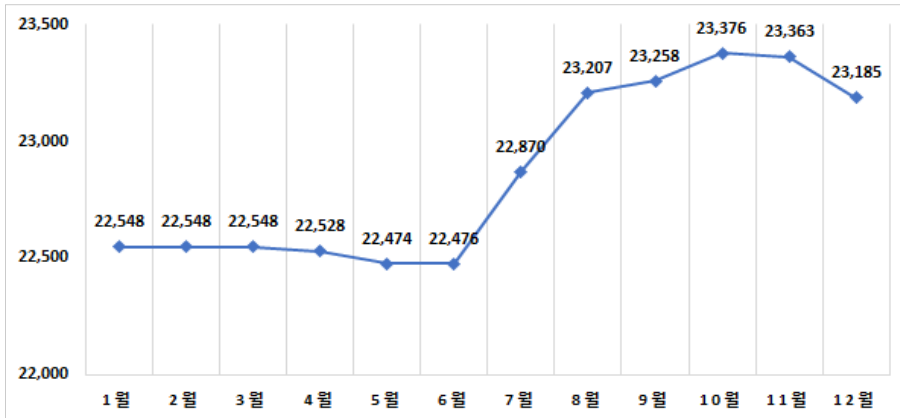
1) 아이돌보미 수

여성가족부의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 통계 자료(내부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아이돌보미(소속돌보미)¹¹⁾ 수는 월별 최고 23,376명(2020년 10월)에서 최저 22,474명(2020년 5월)으로 나타났다. 월별 변화를 세세히 살펴보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4~6월까지 그 수가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7월부터 소속 아이돌보미의 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다가 11~12월에 이르러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 초에 소속돌보미의 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거나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아이돌보미의 양성과 활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1) 소속돌보미는 돌보미 양성 후 기관에 고용계약이 되어있는 인력을 의미함. 본 보고서에서 이용한 소속돌보미 자료는 누적된 수치가 아니고 해당 년, 월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을 산출함. 따라서 월별로 새롭게 양성된 아이돌보미와 계약 종료된 아이돌보미의 수가 반영되어 월별로 가감이 있음.

[그림 II-2-3] 2020년 월별 아이돌보미 현황(소속돌보미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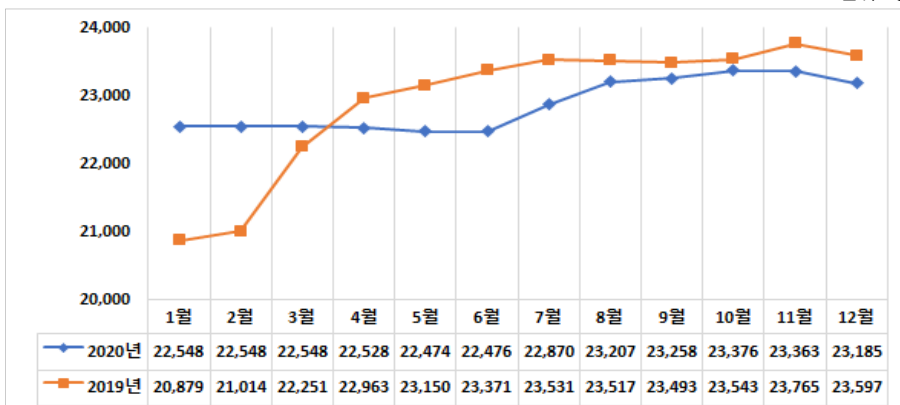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p.4. 바탕으로 재구성.

한편, 2020년의 월별 아이돌보미의 수를 2019년 수치와 비교해보면 월별로 그 추이가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2020년의 1~3월 아이돌보미 수는 2019년 동기간의 아이돌보미 수보다 더 앞섰으나, 4월 이후에는 2019년 아이돌보미의 수가 2020년 보다 지속해서 우위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9년 초반 소속아이돌보미의 수가 202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시작되었지만, 신규 아이돌보미의 유입이 2019년 초반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영향으로 이해된다.

[그림 II-2-4] 2019년, 2020년 월별 아이돌보미 현황(소속돌보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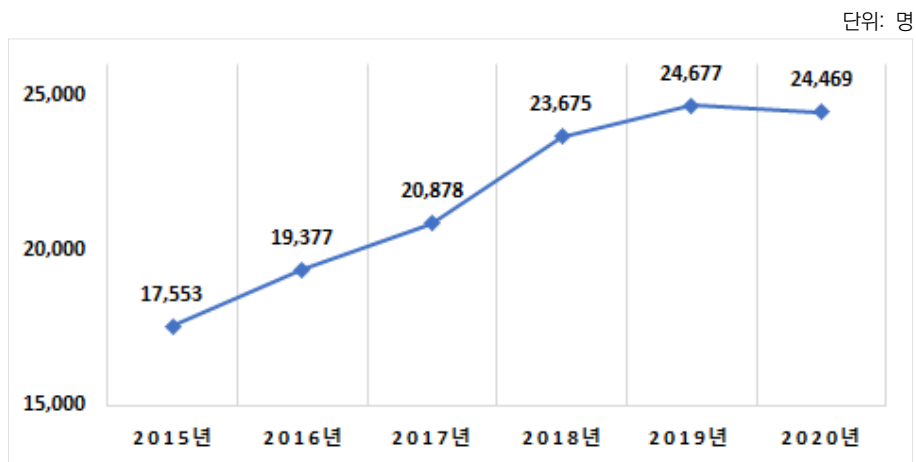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p.4. 바탕으로 재구성.

활동도우미¹²⁾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아이돌보미 수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수가 해마다 증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II-2-5 참조). 특히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의 증가폭이 다른 년도에 비해 높게 보고되었다. 2020년의 경우 아이돌보미 수가 2019년에 비해 약 200명 정도 적게 나타나 지난 6년 중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해된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정에서 수요가 줄어들었을 수 있으며, 아이돌보미 역시 감염병 위험 때문에 소극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2-5] 2015년~2020년 아이돌보미 현황(활동도우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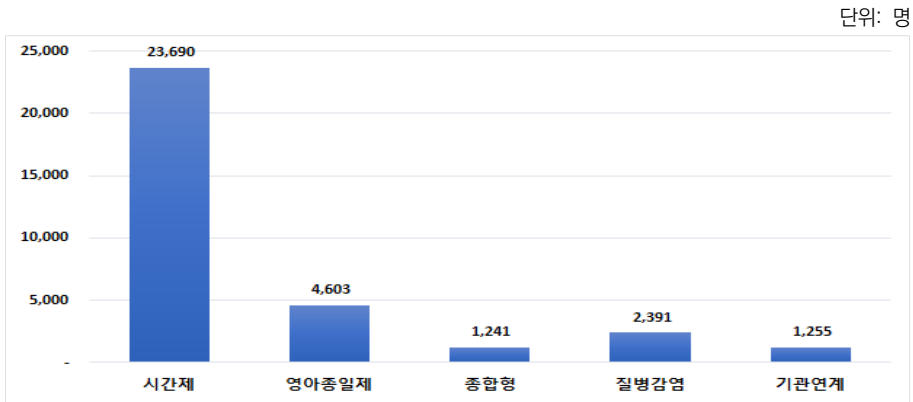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p.1,4. 바탕으로 재구성.

2020년 12월 누적 활동도우미 기준으로 서비스 유형별 아이돌보미 현황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II-2-6]과 같다. 시간제(일반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수가 2020년 12월 기준 23,69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영아종일제서비스(4,603명), 질병감염아동서비스(2,391명), 기관연계서비스(1,255명), 종합형서비스(1,241명) 순으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수가 적어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12) 활동도우미 통계 자료는 각 해당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누적 수치를 의미함. 해당년도 중간에 계약이 중단되어 더이상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않는 인원 역시 누적되어 포함된 값임.

[그림 II-2-6] 2020년 유형별 아이돌보미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p.18. 바탕으로 재구성.

다음으로 <표 II-2-14>와 [그림 II-2-7]에 2020년 12월까지의 한해 누적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서비스 유형별 실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수를 정리하였다. 전 지역에서 시간제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수가 가장 많이 집계되었으나, 지역마다 서비스별 활동 아이돌보미 수의 경향은 달리 나타났다. 서울은 시간제, 영아종일제, 기관연계, 질병감염, 종합형 순으로 아이돌보미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 데에 반해, 경기도, 강원도, 충북, 전남 등은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 종합형, 기관연계 순으로 아이돌보미 수가 줄어들었다. 광주, 경북은 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질병감염, 기관연계 순이었으며, 부산은 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기관연계, 질병감염 순이었다. 종합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돌보미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335명)였으며, 경북(199명), 서울(194명), 부산(117명)이 뒤를 이었다. 질병감염아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567명)이며, 서울 255명, 강원도 220명으로 나타났다. 기관연계 아동돌보미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320명)이며, 경북이 151명, 부산이 1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종합해보면, 서비스 유형별, 지역별로 아이돌보미 수의 분포가 상이하여 지역 상황과 수요에 따라 유형별 아이돌보미 양성에 차별을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2-14〉 2020년 지역별, 유형별 아이돌봄미 현황(활동돌봄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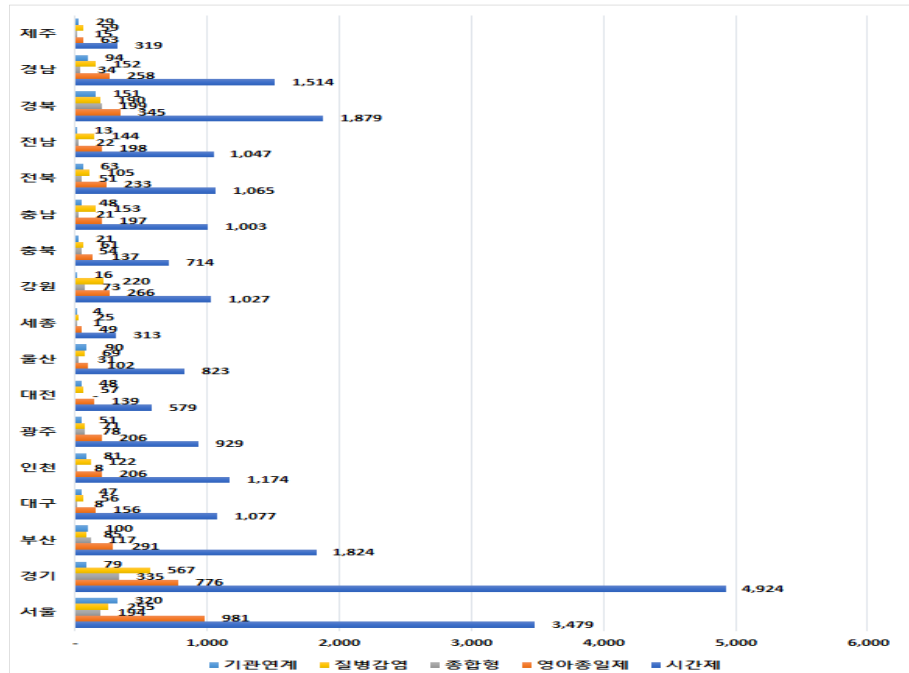
단위: 명

지역/서비스	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질병감염	기관연계
서울	3,479	981	194	255	320
경기	4,924	776	335	567	79
부산	1,824	291	117	85	100
대구	1,077	156	8	56	47
인천	1,174	206	8	122	81
광주	929	206	78	71	51
대전	579	139	0	57	48
울산	823	102	31	69	90
세종	313	49	1	25	4
강원	1,027	266	73	220	16
충북	714	137	54	61	21
충남	1,003	197	21	153	48
전북	1,065	233	51	105	63
전남	1,047	198	22	144	13
경북	1,879	345	199	190	151
경남	1,514	258	34	152	94
제주	319	63	15	59	29

자료: 여성가족부(2020b).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통계(세부자료)). 2020년 12월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II-2-7〕 2020년 지역별, 유형별 아이돌봄미 현황(활동돌봄미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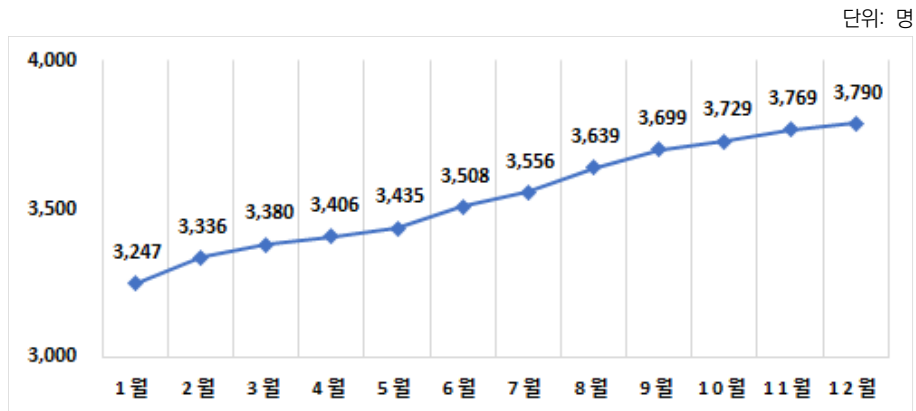
주: 활동돌봄미 수는 2020년 12월까지의 누적 수치임.

자료: 여성가족부(2020b).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통계(세부자료)). 2020년 12월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 자격증 보유 현황

2020년에 활동한 아이돌보미 중에 보육교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 의료인 자격증¹³⁾ 등을 소지한 사람은 2020년 1월에 3,247명에서 시작하여 12월에 3,790명으로 집계되었다. 1년 동안 월별로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2020년 12월 기준 전체 실 활동 아이돌보미(24,469명) 중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3,790명)의 비율은 15.49%로 나타났다.

[그림 II-2-8] 2020년 아이돌보미 자격증 소지자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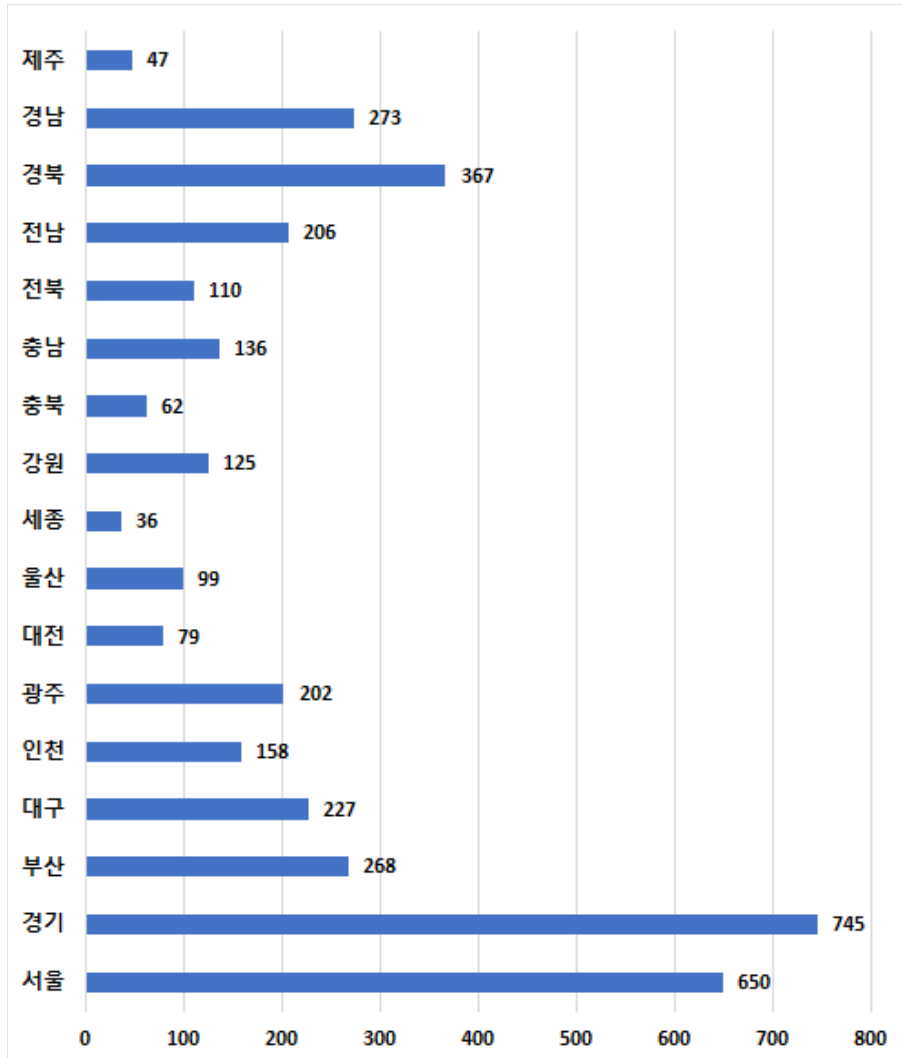
주: 활동돌보미 수는 누적 수치임.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p.18. 바탕으로 재구성.

2020년 12월 기준으로 활동돌보미와 소속돌보미 중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수를 지역별로 정리한 결과는 [그림 II-2-9]와 같다. 실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 중 가장 많은 수의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지역은 경기도(활동돌보미 745명, 소속돌보미 692명)였다. 서울의 경우 자격증을 가진 활동돌보미가 650명, 소속돌보미가 588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의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자격증을 가진 아이돌보미 수가 급감하는 경향이 있었다.

13)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62쪽에 따르면, 관련 자격증은 다음과 같음. ①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여성가족부, 2021a: 62)

[그림 II-2-9] 2020년 지역별 아이돌봄미 중 자격증 소지자 현황(활동도우미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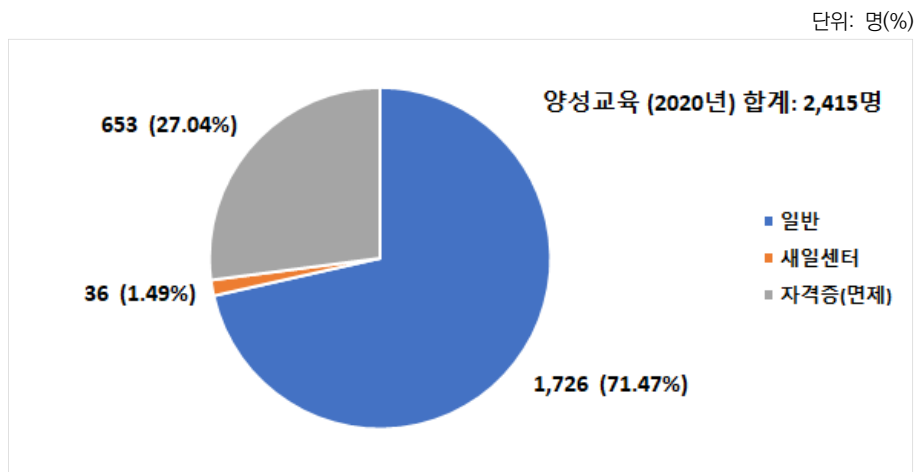
주: 활동돌봄미 수는 누적 수치임.
자료: 여성가족부(2020b),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통계(세부자료)), 2020년 12월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3) 아이돌봄미 교육 현황

2020년의 아이돌봄미 양성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양성교육을 이수한 인원이 총 1,726명으로 가장 많았다(그림 II-2-10 참조).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양성교육을 면제받은 경우가 653명으로 총 양성교육 대상자 중 27.04%가 이에 해당하였다. 새일 센터를 통해 교육을 받은 경우는 총 36명으로 가장 적었다(그림 II-2-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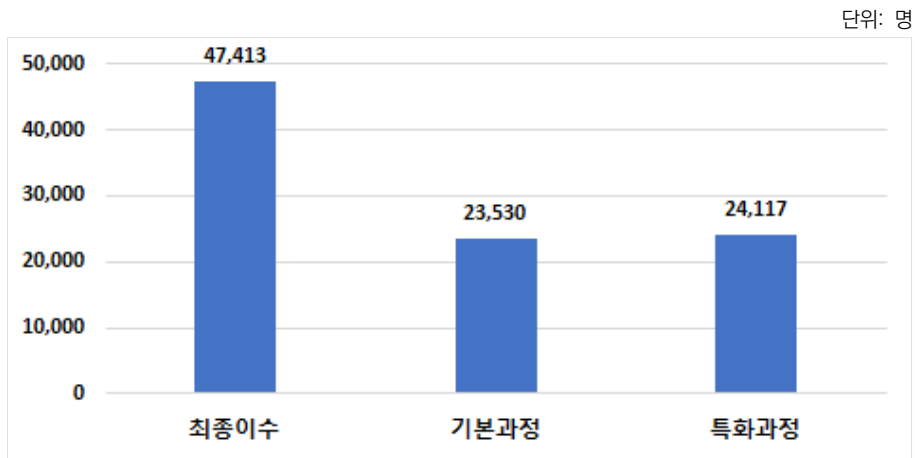
2020년 12월 누적 기준 아이돌봄미 보수교육 현황은 [그림 II-2-11]과 같다, 아이돌봄미 보수교육 총 이수자는 47,413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들 중 기본과정을 이수한 인원은 총 23,530명, 특화과정을 이수한 아이돌봄미의 수는 24,117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10] 2020년 아이돌봄미 양성교육 현황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p.19.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II-2-11] 2020년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현황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p.19. 바탕으로 재구성.

4) 아이돌보미 처우

2021년 기준 아이돌보미 돌봄수당(기본시급)은 8,730원으로, 2020년 8,600원에서 소폭 상승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와 아동수에 따라 가산수당 금액이 달라지는데,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의 가산수당은 시간 당 3,020원,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2,700원, 기관연계서비스는 6,850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또한 돌보는 아동 수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이 상이하다. 아동 2명을 돌볼 시 4,365원, 3명을 돌보는 경우 8,730원의 수당을 기본시급에 가산한다(여성가족부, 2021a: 72). 주휴수당은 이전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이전 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뒤 기본시급을 곱하여 계산한다(여성가족부, 2021c: 62).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서 근무해야하는 경우 서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보미의 동의하에 가능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100% 범위)을 지급한다(여성가족부, 2021c: 14-15).

〈표 II-2-15〉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별 가산수당액

단위: 원

서비스 종류	가산수당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3,020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2,700
기관연계서비스	6,850
아동추가(2인)	4,365
아동추가(3인)	8,730

자료: 여성가족부(2021a).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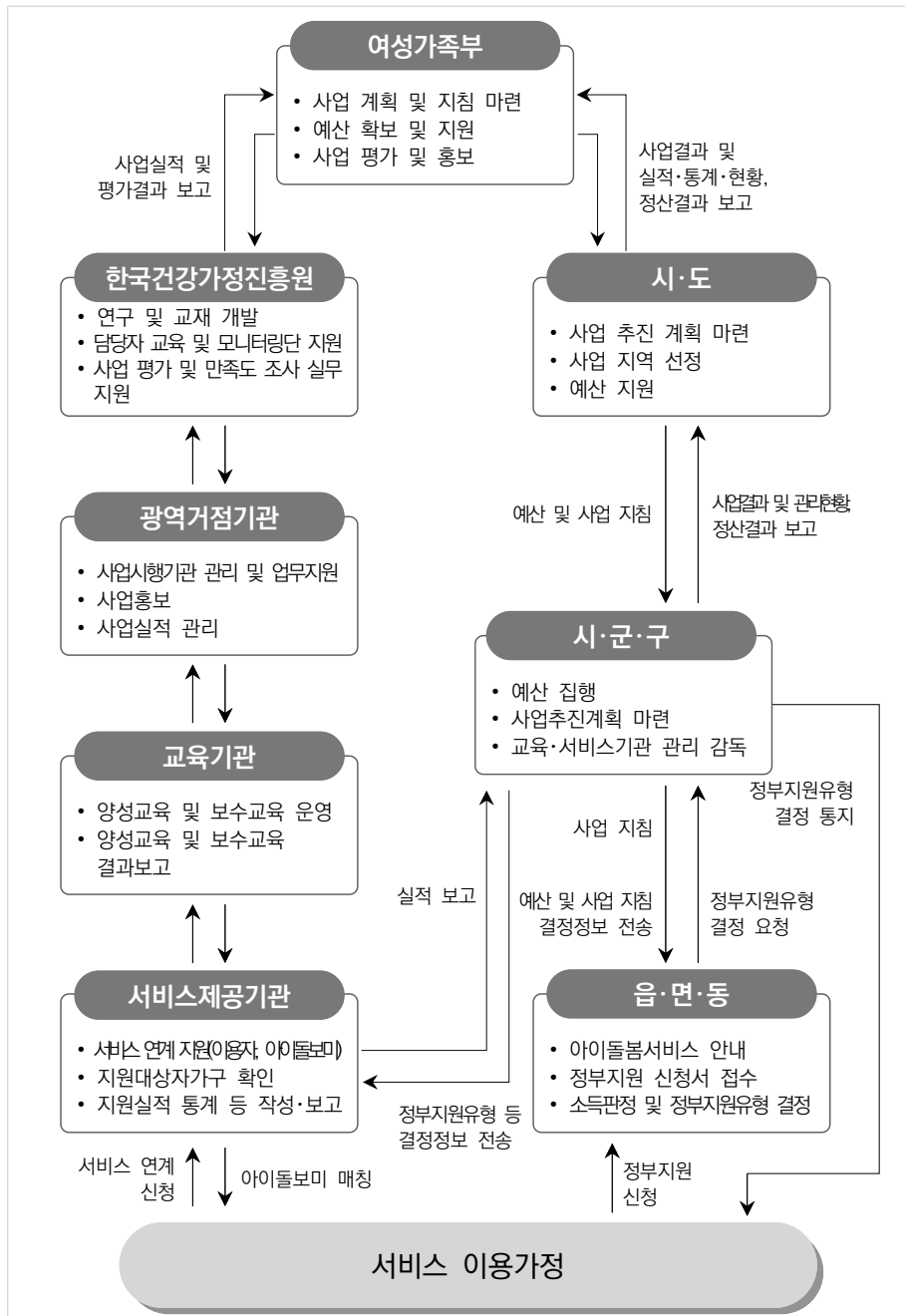
2021년 아이돌보미 노무 매뉴얼에 따르면, 아이돌보미의 법정근로시간은 휴계 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21c: 14). 아이돌보미의 소정근로시간은 지원하는 서비스 종류와 근로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평일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21c: 14).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근로 시 1시간의 휴계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21c: 9, 17).

2021년 기준 아이돌보미의 4대 보험은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관리하는데, 1개월 이상 지속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소정근로시간)하는 아이돌보미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자가 된다(여성가족부, 2021c: 54). 하지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아이돌보미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여성가족부, 2021c: 55). 단,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지속해서 근무하면 가입 대상자가 된다(여성가족부, 2021c: 55). 아이돌보미 직장 건강보험 가입 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여성가족부, 2021a: 88).

라. 전달체계 및 행정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광역거점기관, 교육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의 전달체계를 거쳐 각 가정에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a: 14).

[그림 II-2-12]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추진 체계도



자료: 여성가족부(2021a).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14.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사업계획 지침과 예산확보 지원, 사업 평가 홍보 등을 담당한다(여성가족부, 2021a: 1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읍·면·동에서 신청 가정의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지하는 역할을 한다(여성가족부, 2021a: 14, 18). 아이돌보미 사업 연구 수행과 교재 개발, 사업 담당자를 교육하고 사업 평가와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의 업무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맡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a: 14).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와 이용 가정 사이에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과, 지원 실적 통계 등 관리를 담당하며 전국에 총 227개가 존재한다(여성가족부, 2021a: 14, 18).¹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 새로일하기센터, YWCA/YMCA 등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담당한다.¹⁵⁾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유형은 여성인력 새로일하기센터로 48개소 중 26개소가 이에 해당되었다.

〈표 II-2-16〉 아이돌봄서비스 양성교육기관 현황(2021년 1월 기준)

단위: 개소

종류	수
양성교육기관 전체	48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	6
건강가정지원센터	4
여성인력 새로일하기센터	26
YWCA/YMCA	5
기타(대학교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원, 사회복지재단)	7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front/main/main.do>에서 2021. 8. 26. 인출.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교육기관, 서비스제공기관)을 관리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은 광역거점기관에서 수행한다. 전국 시도별로 1개소씩 광역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2021년 기준으로 광역거점기관 목록은 〈표 II-2-17〉과 같다.

14) 전국 서비스제공기관 목록은 부록을 참조하라.

15)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front/main/main.do>에서 2021. 8. 26. 인출.

〈표 II-2-17〉 아이돌봄서비스 광역거점기관(2021년)

시·도	광역거점기관명
서울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천	미추홀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	광주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전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울산	사회복지법인 삼일사회복지재단
경기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강원	원주YMCA
충북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남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	영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북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	제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료: 여성가족부(2021a). 2021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 14.

2022년 1월 1일부터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제가 변경된다. 사업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새로 지정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는 중앙 전담 관리 기관으로 역할을 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1) 아이돌봄지원 사업 관련 연구와 자료 발간, 2)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발, 보급, 3) 아이돌보미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4)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관리 등 양성·보수교육 관리·운영, 5) 아이돌보미 자격·이력·채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6) 서비스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 7)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수행한다(아이돌봄지원법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¹⁶⁾.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업무는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 관리, 2)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안전사고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 3)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 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16)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3. [시행 2022. 1.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C%9D%B4%EB%8F%8C%EB%B4%84%20%EC%A7%80%EC%9B%90%EB%B2%95>에서 2021. 10. 26. 인출.

현황 모니터링, 5)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지원 및 서비스 홍보 등을 포함한다(아이돌봄지원법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 제10조의4(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¹⁷⁾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신설로 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가 변경될 예정이다. 변경 후 서비스기관의 임무는 1)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를 서비스 기관 내에 배치, 2) 보호자의 서비스 제공 요청 이행, 3) 아이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이행, 4)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에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돌보미 제공, 5) 아이와 관련된 가사가 추가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6) 아이돌보미에 심리상담 제공 등을 포함한다(아이돌봄지원법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 제13조(서비스 기관의 임무 등)).¹⁸⁾

요약하면, 법 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는 서비스제공기관 소속이 아닌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소속이 되며, 이들을 배치하는 업무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지속한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계약과 복무에 관련된 업무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업무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함께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표 II-2-18〉 아이돌봄서비스 2021년, 2022년 서비스 지원 체계 변경 사항

추진주체	2021년	2022년
사업 총괄 감독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사업 관리	시·도	시·도
사업 운영 관리	시·군·구	시·군·구
정부지원 접수	읍·면·동	읍·면·동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지원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제공기관
교육	교육기관	교육기관
사업 지원	광역거점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신설)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신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료: 여성가족부(2021a).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8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4. 30).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가족 지원 체계 강화.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534>에서 2021. 10. 26. 인출.

17)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 [시행 2022. 1.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C%9D%B4%EB%8F%8C%EB%B4%84%20%EC%A7%80%EC%9B%90%EB%B2%95>에서 2021. 10. 26. 인출.

18)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시행 2022. 1.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C%9D%B4%EB%8F%8C%EB%B4%84%20%EC%A7%80%EC%9B%90%EB%B2%95>에서 2021. 10. 26. 인출.

3.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조사

가.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사업의 중앙 전달체계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시간제/영아종일제)와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 98). 이 조사는 2007년부터 시작되어 매해마다 1년 주기로 실시되었다¹⁹⁾. 당해연도 하반기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 3, 98). 조사는 조사부문별로 조사표본이 미리 설정되고,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조사링크를 탑재하여 조사대상(이용자 및 아이돌보미)이 링크에 접속하여 조사하는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²⁰⁾.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크게 이용자 조사와 아이돌보미 조사로 구분된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대상의 만족도 조사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뉘며,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서비스 내용, 이용요금, 정부시간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기관 담당자, 서비스 모니터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며, 더불어 이용자의 시간당 적정 이용 요금에 대한 의견, 대기 소요시간, 아이돌보미 필요 자질, 민간 베이비시터 이용경험과 비교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 98-102).

〈표 II-3-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시간제, 종일제) 만족도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아이돌봄서비스	- 전반적 만족도, 육아여건 개선 만족도, 서비스 내용 만족도 - 이용요금 만족도, 시간당 적정 이용요금 - 정부지원시간 만족도, 대기 소요시간
아이돌보미 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 가장 필요한 요소
서비스기관 담당자	- 전반적 만족도

19)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조사담당자 전화 문의(2021. 9. 1.)로 파악함.

2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조사담당자 전화 문의(2021. 9. 1.)로 파악함.

구분	조사내용
서비스 모니터링	- 서비스 모니터링 경험 여부, 모니터링 만족도
타 서비스와의 비교	- 민간 베이비시터 이용경험 여부, 아이돌봄서비스 비교 만족도

주: 5점 척도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0). 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pp. 3, pp. 98-102.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는 아이돌보미의 돌봄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활동 동기, 정부 유사사업 활동 경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필요 사항, 서비스 모니터링에 대한 만족도, 아이돌봄서비스 활동 개선 사항 등을 조사한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 103-104).

〈표 II-3-2〉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아이돌봄 활동	- 전반적 만족도, 활동 동기
유사사업 경험	- 정부 유사사업 활동 경험 여부, 경험한 사업 종류
아이돌보미 교육	- 양성교육 만족도, 개선 필요사항 - 집합보수교육 만족도, 개선 필요사항
서비스 모니터링	- 모니터링(현장점검) 경험 여부, 모니터링 만족도
서비스 개선	- 아이돌봄 활동 서비스 개선 사항

주: 5점 척도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0). 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pp. 4, pp. 103-104.

조사 표본은 2020년 기준으로 시간제 서비스 이용자 4,500명, 종일제 서비스 이용자 2,000명, 아이돌보미 12,000명의 총 18,500명으로 계획되었고, 지역 등의 세부할당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²¹⁾. 조사응답자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시간제 서비스 이용자 1,068명, 종일제 서비스 이용자 709명, 아이돌보미 9,228명이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 5-7). 조사 결과보고서에서는 만족도를 소득유형(가형, 나형, 다형, 라형), 성별, 연령대, 일 평균 이용시간, 취학자녀 구분, 지역(17개 시도)에 따른 세부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도, 육아여건 개선 만족도, 서비스 내용 만족도, 이용요금 만족도, 정부지원시간 만족도, 아이돌보미 만족도, 제공기관 담당자 만족도, 모니터링 만족도, 타서비스 비교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 11-14).

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조사담당자 전화 문의(2021. 9. 1.)로 파악함.

최근 5년 동안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만족도가 2016년 88.5점에서 2020년 90.6점으로 지속 상향되어 왔으며, 종일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해 90점 이상으로 시간제에 비해 높은 편이며 2020년 기준 90.6점이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7. 8: 6).

〈표 II-3-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시간제 서비스	88.5점	88.8점	88.9점	89.5점	90.6점
종일제 서비스	90.4점	90.5점	90.8점	90.9점	90.6점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7. 8).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계기,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점검. p.6.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019년 70.4점에서 2020년에는 77.7점으로 만족도가 크게 상승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 10)²²⁾.

나.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실태조사

2018년에 여성가족부 수탁과제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실태조사는 대상에 따라 크게 4개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 수요자의 입장에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상황을 이해하고 서비스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용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잠재적 수요자의 입장을 살펴보고 필요한 서비스의 규모와 예산을 추정하기 위해 전국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대상자 조사’를 시행하였다. 셋째, 아이돌봄서비스의 서비스 공급자인 아이돌보미의 활동 실태와 인력 양성 관련한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조사 시점 기준 1개월 이상 아이돌보미로 근무한 활동돌보미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이용 가정을 연계해주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조사’를 시행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2-3).

조사는 2018년 9월에 시행되었으며, 이용가구 조사는 6,730가구, 서비스 대상

22) 아이돌보미 조사 문항 1번 ‘전반적으로 아이돌봄 활동에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조사 결과임(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 103).

자 조사(일반 국민 중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는 2,020가구, 아이돌보미 조사는 6,111명, 서비스 기관 종사자는 228명이 최종 응답하였다. 이용가구와 아이돌보미 대상 조사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형식으로 제공되었다.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대상자 조사는 조사업체의 패널을 이용한 웹조사 형태로 이루어졌다. 서비스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간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이메일을 통해 응답결과를 받았다(여성가족부, 2018: 37-38).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조사 개요는 <표 II-3-4>에 정리하였다.

〈표 II-3-4〉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대상별 조사개요

구분	대상	수	조사목적	방법	조사내용
수요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6,730사례	- 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서비스 내용 개선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	온라인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응답가구 특성 - 자녀 양육 특성 - 아이돌봄서비스 정책 인지도, 이용 현황 - 향후 수요 - 서비스 개선 요구 - 아이돌보미 대체서비스 이용 경험
	2 서비스 대상자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가구)	2,020사례	- 잠재적 수요 예측, 향후 서비스, 예산 규모 추정 자료 마련	웹조사 (조사업체 패널)	- 응답가구 특성 - 자녀 양육 특성 - 아이돌봄서비스 인지도, 이용 경험 - 향후 서비스 이용 계획 - 아이돌보미 대체서비스 이용 경험 - 아이돌봄서비스 정책 만족도와 개선요구
공급	3 아이돌보미	6,111사례	- 아이돌보미 활동 현황 및 요구 파악, 아이돌보미 양성 개선 사 항 정리	온라인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응답자 특성 - 경력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경험, 만족도, 개선 요구 - 아이돌봄 활동 현황, 만족도, 선호 활동 유형 - 어려움, 개선 요구
	4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228사례	- 서비스 연계 현황 및 서비스 제 공기관 요구 파악	공문, 이메일	- 응답자 특성 - 기관 정보 및 업무 수행 현황 - 업무와 차우 관련 인식, 어려움 - 개선 요구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pp. 2-3, 37-40. 내용 바탕으로 재구성.

4. 소결

아이돌봄서비스가 2007년 신규 사업으로 실시된 후 2021년으로 15년째에 접어들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기관의 집단보육이 아닌 가정으로 파견되는 개인양육 지원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차별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관보육인프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관보육을 이용할 수 없는 다양한 사례와 가정양육의 욕구가 존재함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와 서비스의 질 제고의 요구가 높다. 또한 이용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로의 개선과 이용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확대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인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및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서의 개발 요구도 높으며, 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증가할 연계와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서비스제공 기관의 역할제고 요구도 높다. 이처럼,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자, 공급자, 연계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를 연계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각각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만족도 조사는 이용자와 아이돌보미의 만족도 평가와 이용 정도를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어, 다양한 기준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의 구조와 가구소득, 가정유형, 돌봄공백의 유형 등 다양한 형태에 따른 서비스의 이용 수요와 만족 수준, 개선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 실시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법정화와 국가승인통계로의 추진을 염두에 둔 시범조사로 실시되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정교하지 못한 표본설계로 추진되었으나 시범실태조사의 결과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정책 개선에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음을 고려하면,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는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로 국가승인통계로 당연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III

돌봄 관련 주요 국가승인통계 분석

- 01 국가통계 승인의 조건과 특성
- 02 국가승인통계 현황
- 03 복지 부문 주요 돌봄 관련 승인통계의 추진현황
- 04 시사점 및 추진 일정(안)

Ⅲ. 돌봄 관련 주요 국가승인통계 분석

1. 국가통계 승인의 조건과 특성

가. 배경

여기서는 국가통계 승인의 조건과 특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국가통계를 포함한 통계의 종류와 우리나라의 국가통계제도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통계의 종류

통계란 “사회·자연현상을 계량화한 수치정보”이다(이재형, 2004: 13; 정지범, 2014: 10에서 재인용).

통계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먼저 법률적 분류에 따라서는 승인 통계와 기타통계로 나뉜다. 승인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로 통계법상의 통계²³⁾에 해당되며, 기타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하는 통계로서 통계법상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이삼렬·정윤수, 2008: 4).

〈표 Ⅲ-1-1〉 국가승인통계의 정의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출처: 통계법(법률 제17339호) 제3조 1항.

승인통계는 다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나뉜다(이삼렬·정윤수, 2008: 4). 지정 통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고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23) 통계법 제3조1항 참조.

위하여 널리 활용되는 통계 중에서 지정된다(통계청, 2018: 16). 일반통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로서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를 말한다(통계청, 2018: 16).

〈표 III-1-2〉 국가통계작성기관의 지정여부에 따른 통계 분류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지정통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	- 자료제출명령, 실지조사 등 권한 부여 - 반드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고시
일반통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	

출처: 통계청(2018). 통계행정편람.p.16의 내용을 표로 구성

다음으로 작성방법에 따라서는 조사통계와 보고통계, 가공통계로 구분할 수 있다(통계청, 2018: 15). 조사통계는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statistical survey)를 통해 얻어진 통계를 말하며, 보고통계는 행정통계와 동일한 개념으로 법령에 의해 개인,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 업무를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로부터 작성되는 통계를 말한다(통계청, 2018: 15). 마지막으로 가공통계는 조사통계나 보고통계에 어떠한 연산을 추가해서 작성한 통계로서, 해석적 특성이 있는 통계를 말한다(통계청, 2018: 15).

〈표 III-1-3〉 작성방법에 의한 통계 분류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조사통계	- 통계조사를 통해 얻어진 통계 -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분	- 조사예산 및 조사원 확보, 응답자의 비협조 등 어려움 많음
보고통계	-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통계 - 세부적 통계 작성 가능	- 현실적 어려움이 적음. - 보고내용의 정확성 중요
가공통계	- 조사통계나 보고통계에 어떠한 연산을 추가해 작성 - 해석적 특성	- 집단 특성치의 평균, 분산, 지수, 상관계수 등 - 국민소득통계와 같은 추계에 의한 통계

출처: 통계청(2018). 통계행정편람. p.15의 내용을 표로 구성

한편, 이외에도 생산주체에 따라서는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국가통계와 민간기관이 생산하는 민간통계로도 나눌 수 있다(이삼렬·정운수, 2008: 4).

2) 국가통계제도의 종류

국가통계는 정부부처는 물론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기초정보로서, 정책의 과학적 수립을 위한 필수 자료인 동시에 정책의 품질 향상 및 성과 평가의 핵심적인 수단이며, 국가전반에 걸친 각종 현상의 실질적인 구조와 그 변화내용을 객관적, 그리고 중립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중요한 국가인프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김승태, 2011: 243). 이하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국가통계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 전제조건인(김승태, 2011: 243) 국가통계제도의 종류와 한국의 국가통계제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통계제도는 그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통계조직과 통계작성 능력에 따라 ‘집중형 통계제도’와 ‘분산형 통계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통계청, 2018: 16).

집중형 통계제도는 한 나라의 모든 통계활동이 하나의 전문화된 통계작성기관에 집중되어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모두 작성·공급토록 되어 있는 제도로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분산형 통계제도는 통계활동이 각급 기관에 분산되어 각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는 각 기관의 책임 아래 작성하는 통계제도로서 미국, 일본, 영국, 대만 등이 채택하고 있다(통계청, 2018: 16-17). 분산형 통계제도하에서는 각급 기관의 통계활동 중복제거와 통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중앙에 통계종합조정기관을 설치한다(통계청, 2018: 18).

〈표 III-1-4〉 집중형과 분산형 통계제도의 장·단점

구분	집중형	분산형
장점	- 통계의 균형적 개발과 유기적 체계 확보 - 통계의 객관성 및 신뢰도 제고 - 통계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활용 가능	- 분야별 전문지식을 관련 통계개발에 활용 가능 - 통계 수요에 신속히 대응
단점	- 관련행정 분야별 전문지식 활용 미흡 - 통계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곤란	- 통계작성상의 중복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 초래 - 체계적인 통계개발의 제약 - 통계전문요원의 집중적인 활용 곤란 - 통계의 객관성에 대한 의혹 초래

구분	집중형	분산형
특징	- 국가기본통계를 단일화된 통계전문기관에서 작성 - 부처간 통계연락기구의 설치	- 부처별로 필요한 통계를 작성 - 통계조정기관의 설치

출처: 통계청(2018). 통계행정편람. p.18

3) 우리나라의 국가통계제도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분산형 통계제도하에서는 하나의 기관에서 통계를 작성하는 집중형 통계제도(통계청, 2018: 16)와는 달리 통계활동의 중복으로 인한 국가 자원의 낭비와 국민의 응답부담 가중, 관련통계 상호간의 비교성 결여, 통계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통계의 질적 수준 저하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통계청, 2018: 19).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국가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통계청은 일반목적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의 기능과 통계조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통계청, 2018: 19).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통계법 제5조의2 및 국가통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 28211호)에 근거해 ‘국가통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통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III-1-5〉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 그밖에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통계법(법률 제17339호) 제5조의2 2항

나. 국가통계 승인의 조건

1) 통계작성 승인제도

어떤 통계를 국가정책에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통계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 정책에 활용 및 일반 국민·기업들의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 혹은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라는 이름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정지범, 2014: 10). 우리나라 통계법 제3조 1항에서는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법의 통계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 정의라기 보다는 국가통계 혹은 공식통계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다(정지범, 2014: 11).

즉, 국가승인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통계를 처음 작성하거나 기존 승인통계 이외의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통계작성 승인을 받도록 하는 ‘통계작성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정지범, 2014: 15).

통계법 제15조에서는 국가통계 승인을 요청하는 기관에 일정 요건을 심의하여 지정하는 경우와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지정,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표 III-1-6〉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통계법(법률 제17339호) 제15조

2) 통계작성의 승인 신청 절차 및 승인 요건

통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 시작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²⁴⁾.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III-1-7〉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2. 통계의 작성 목적
3. 통계작성의 사항
4. 통계작성의 대상
5. 통계작성의 기준 시점·기간 및 주기. 단, 조사통계의 경우 통계작성기간 대신 통계조사기간을 기입
6. 통계작성의 방법
7. 자료수집체계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
9.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10.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출처: 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21호) 제25조

앞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통계청에 의뢰하는 의뢰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4) 통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표 III-1-8〉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서 포함 사항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의 목적
3. 통계작성의 대상
4. 통계작성의 주기 및 방법
5. 통계작성의 체계
6. 통계작성의 항목 및 관련 행정자료 목록

출처: 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21호) 제24조제2항

통계청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통계작성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승인하지 않는 경우 문서에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²⁵⁾.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을 승인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²⁶⁾, 승인 고시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III-1-9〉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 포함 사항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 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목적
5. 통계작성의 대상
6. 통계작성의 주기
7. 통계작성의 방법

출처: 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21호) 제24조제5항

한편, 신청한 통계작성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는 통계법 제18조3항에서 정하고 있다. 통계법에서 명시한 통계작성 미승인 사유에 따르면, 역으로 국가통계는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과학적 체계성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의 국가통계와 차별성 있는 목적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향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국가통계 승인을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서 기획하는 내용이 기존의 국가통계와 차별적인 정보를

25) 통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26) 통계법 제18조제4항.

제공한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 모집단 규모와 공표수준, 총화기준 등을 고려한 과학적인 표본설계와 조사 방법의 제시도 필요할 것이다.

〈표 III-1-10〉 통계작성의 미승인 사유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출처: 통계법(법률 제17339호) 제18조제3항

2. 국가승인통계 현황

앞서 상술한 국가통계 승인 절차를 통해 국가통계로 승인된 통계는 주제 부문별로 〈표 III-2-1〉과 같다.

2021년 9월 3일 현재 승인통계는 1,248개에 달하며, 부문별로는 지역통계가 603개(4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승인통계의 종류별로는 지정 통계가 92개, 일반통계가 1,156개이며, 작성방법에 따라서는 조사 통계가 550개로 가장 많고 보고 통계 478개, 가공 통계 220개 순이다.

〈표 III-2-1〉 부문별 승인통계 현황(2021. 9. 3. 기준)

단위: 개

구분	작성통계수		종류별		작성방법		
	통계수	구성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1,248	100	92	1,156	550	478	220
인구	9	0.7	3	6	1	4	4
사회일반	24	1.9	2	22	20	2	2
범죄·안전	31	2.5	0	31	11	20	0
노동	37	3	6	31	21	10	6
소득·소비·자산	6	0.5	4	2	6	0	0
보건	61	4.9	3	58	19	32	10

구분	작성통계수		종류별		작성방법		
	통계수	구성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복지	28	2.2	1	27	14	11	3
교육·훈련·문화·여가	39	3.1	2	37	25	11	3
주거/국토이용	25	2	3	22	8	12	5
경제일반·경기/기업경영	38	3	5	33	26	1	11
농림/수산	57	4.6	9	48	38	16	3
광업·제조업	17	1.4	3	14	13	2	2
건설/교통·물류	47	3.8	4	43	19	27	1
정보통신/과학·기술	56	4.5	4	52	48	5	3
도소매·서비스	21	1.7	3	18	20	0	1
임금·물가	20	1.6	7	13	15	2	3
국민계정	23	1.8	5	18	0	0	23
정부·재정	21	1.7	1	20	4	17	0
금융/무역·국제수지	32	2.6	5	27	6	16	10
환경	38	3	4	34	15	20	3
에너지	15	1.2	1	14	7	6	2
지역통계	603	48.3	17	586	214	264	125

출처: 승인통계 부문별 현황(<http://www.narastat.kr/pms/pub/scs/css/selectConfmStatsStatusRealm.do>에서 2021. 9. 3. 인출)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사회서비스 혹은 돌봄과 관련된 통계는 ‘복지’ 부문에 포함되며, ‘복지’ 부문의 작성통계 수는 28개로 전체 승인통계 중 2.2%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2-2〉 복지 부문 승인통계 현황(2021. 9. 3. 기준)

통계명	승인일자	작성기관(주)	통계 종류	작성방법 (작성유형)	근거법률
퇴직연금통계	20161215	통계청	일반	가공	
장애인생활체육조사	20081216	문화체육관광부	일반	조사	
장기요양실태조사	20190830	보건복지부	일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
장애인학대현황	20200331	보건복지부	일반	보고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10제2호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장애인 학대 현황 조사”

통계명	승인일자	작성기관(주)	통계 종류	작성방법 (작성유형)	근거법률
노인복지시설현황	19961016	보건복지부	일반	보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0조의2(보고)
노숙인등의실태조사	20170622	보건복지부	일반	조사	
국민생활실태조사	20160929	보건복지부	일반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2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20080704	보건복지부	일반	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자현황	19770209	보건복지부	일반	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5조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및종사자현황보고	19961016	보건복지부	일반	보고	
사회서비스수요. 공급실태조사	20090625	보건복지부	일반	조사	
노인실태조사	20080522	보건복지부	일반	조사	노인복지법 제5조 (노인실태조사)
한국의사회복지지출	20090427	보건복지부	일반	가공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 황조사	19950609	보건복지부	일반	조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 제11조
보육실태조사	20041019	보건복지부	일반	조사	영유아보육법 제9조
장애인실태조사	19901205	보건복지부	지정	조사	장애인복지법 제31조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 소녀가정현황	20080110	보건복지부	일반	보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현황	20060727	보건복지부	일반	보고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20061025	보건복지부	일반	보고	통계법 18조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19940129	보건복지부	일반	보고	
한부모가족실태조사	20121023	여성가족부	일반	조사	
국민연금통계	20061107	국민연금공단	일반	보고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0050830	국민연금공단	일반	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0060330	한국고용정보원	일반	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20061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20111215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보고	노인장기요양법
장애인실태패널조사	20180906	한국장애인개발원	일반	조사	
차상위및한부모가족 수급자현황	2019122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일반	가공	

출처: 승인통계검색_복지부문(<http://www.narastat.kr/pms/pub/scs/css/selectConfmStatsList.do>에서 2021. 9. 3. 인출)

3. 복지 부문 주요 돌봄 관련 승인통계의 추진현황

본 절에서는 향후 복지 부문의 승인통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추진에 시사점을 얻기 위해 복지 부문의 승인 통계 중 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돌봄’ 관련 주요 통계로 ‘보육실태조사’와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추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가. 보육실태조사²⁷⁾

보육실태조사는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때는 조사 주기가 5년이었으나, 2011년 법 개정으로 5년에서 3년으로 조사 주기가 단축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8: 42). 2004년 1차 조사 실시 중인 2004년 10월 통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2011년 법 개정 후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3~5차 조사때마다 변경 승인을 받았다.

1차 조사는 2004년 당시 보육업무 주무부처인 여성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공동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수조사로 실시되었으나, 2009년부터 어린이집과 영유아 가구 대상의 표본조사로 실시되게 되었다. 2009년 조사 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3차, 2015년 4차, 2018년 5차 조사가 실시되었고 현재 2021년 6차 전국보육실태조사가 실시중이다.

보육실태조사의 조사는 가구조사와 어린이집 조사의 2종으로 나뉘며, 가구조사의 대상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가구, 어린이집 조사의 대상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이다. 자료수집은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 조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표 III-3-1〉 보육실태조사의 통계 개요

구분	내용
• 작성기관 및 부서	보건복지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조사 목적 및 활용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실태, 이용에 따른 만족도, 요구도 파악 및 보육시설 운영의 전반적 현황 파악을 통한 보육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보육실태 기초 자료 생산

27) 이 부분은 보육실태조사 통계설명자료 (<http://www.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에서 2021. 9. 3. 인출)에 근거함.

구분	내용
• 작성유형	조사통계
• 조사대상	
- 범위	- 가구조사: 미취학 아동 가구의 주양육자 및 아동 - 시설조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 지역	전국
- 조사단위	가구, 시설
- 조사대상 규모	- 가구: 500조사구 2,500가구 - 시설: 3400개소
• 표본설계	
- 목표모집단 (2018년 조사)	- 가구 : 2018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있는 가구 - 시설 : 2018년 6월말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부모협동 시설 제외)
- 표본추출방법	- 가구 : 층화2단집락추출 - 시설 : 층화계통추출
• 공표주기	3년
• 조사주기	3년
•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9조
• 조사연혁	- 최초 작성년도: 2004년도(통계청 승인: 2004.10.19.: 작성협약(제33107호)) 2004년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5년마다 보육실태조사 실시 법적 근거 마련 - 제1차 보육실태조사 최초 실시 - 여성부(당시 보육사업 주무부처)와 교육인적자원부 공동으로 유치원과 어린이 집 전수조사 2009년 -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어린이집과 영유아 가구 대상의 2차 조사 실시(표본조사) 2011년 6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해 보육실태조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통계청 변경 승인: 2011년 12월 5일, 통계청 고시 제2011-230호) 2012년(통계청 변경 승인: 2012년 7월 30일, 통계청 고시 제2012-146호) - 제3차 보육실태조사 실시(표본조사) 2015년(통계청 변경 승인: 2015년 8월 24일, 통계청 고시 제2015-291호) - 제4차 보육실태조사 실시(표본조사) 2018년(통계청 변경 승인: 2018년 9월 10일, 통계청 고시 제2018-378호) 제5차 보육실태조사 실시(표본조사)
• 조사체계	조사전문업체(방문면접조사) →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

출처: 보육실태조사 통계설명자료(<http://www.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에서 2021. 9. 3.인출)

보육실태조사는 2018년 제5차 조사로 수행되면서 기존의 설문조사표의 수정작업을 7.3~7.31일에 걸쳐 단기간에 완료하였으며, 변경통계승인 신청하여 승인된 시점은 '18년 9월 12일이다.

2018년 보육실태조사의 경우 5번째로 수행되는 조사로 조사표 개발이 단기간에 추진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2〉 보육실태조사의 추진 일정(2018년)

추진과제	세부추진내용	추진시기
설문지 개발 및 확정	조사표 초안 작성	'18. 7. 3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서면 자문	'18. 7. 10 ~ 7. 17
	연구진-보건복지부 관계자 대상 전문가 워크숍 실시	'18. 7. 27
	사전조사 실시 후 수정 보완, 조사표 확정	'18. 7. 17 ~ 7. 31
통계승인	통계변경승인	'18. 9. 12

출처: 『보육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보건복지부, 2019). p.1 추진과제별 일정(2018년) 표 일부 재구성

나. 장기요양실태조사²⁸⁾

장기요양실태조사는 2016년 5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제6조의2에 근거하여 법정조사가 된 이후 2019년 최초로 장기요양실태조사를 기획하여 실시 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법 제6조의2에서는 장기요양실태조사는 장기요양인정,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등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를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 장기요양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의 현황을 조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양적 및 질적 개선을 도모하며,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실시 전 약 4개월 간의('19. 3. 15 ~ '19. 7. 23) 설문 조사표 개발, 장기요양제도 전문가 및 실무자 자문회의(총 11차), 주무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4차), 전문가 및 실무자 서면조사(2차)의 과정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

28) 이 부분은 『장기요양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보건복지부, 2020)에 근거함.

〈표 III-3-3〉 장기요양실태조사의 통계 개요

구분	내용
• 작성기관 및 부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 조사 목적 및 활용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책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
• 작성유형	조사통계
• 조사대상	- 2019.3월 급여청구 실적이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요원
- 지역	전국
- 조사단위	개인
- 조사대상 규모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65만 9천명) - 장기요양기관(1만7천개) - 장기요양요원(30만6천명)
• 표본설계	
-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 표본추출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 수급자 목록 및 급여청구 실적
- 표본추출단위	- 수급자: 급여 유형별 수급자 - 기관: 급여 유형별 기관 - 요원: 급여 유형별 및 직종별 요원
- 표본추출방법	층화계통추출
- 표본배분방법	추출단위 별 제급금 비례 배분
• 공표주기	3년
• 조사주기	3년
•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
• 조사연혁	최초작성연도: 2019년
• 조사체계	대상처 → 조사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보건복지부

출처: 장기요양실태조사 통계설명자료(<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17104&inpYear=2019,2021>. 9. 3. 인출)

장기요양실태조사는 통계승인을 위해 매뉴얼, 결과표 등 통계승인 자료를 '19년 3월19일~8월 31일에 걸쳐 작성하였으며, 설문지 개발을 '19. 7. 15일 확정 후 통계승인신청하여 승인된 시점은 '19년 8월 30일이다.

장기요양실태조사의 경우 조사표 개발에 상당한 기간을 할애했으며 조사표 개발의 기간 동안 통계승인을 위한 자료 작성을 동시에 추진하여 조사표 개발 직후 통계승인 신청과 승인이 단기간에 잘 추진이 된 사례라 사료된다.

〈표 III-3-4〉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추진 일정(2019년)

추진과제		세부추진내용	추진시기
설문지개발 및 확정	설문지 개발	조사표 개발	'19. 3. 15 ~ '19. 7. 23
	최종 설문지 확정	설문지 확정	'19. 7. 23
		국어연구원 감수	'19. 7. 15
통계승인		매뉴얼, 결과표 등 통계승인 자료 작성	'19. 3. 19 ~ '19. 8. 31
		통계승인신청 및 승인	'19. 8. 30

출처: 『장기요양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보건복지부, 2020). p.1 장기요양 실태조사 추진일정(2019년) 표 일부 재구성

4. 시사점 및 추진 일정(안)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가 2022년 실시되고, 국가승인통계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최근 승인을 받은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추진 일정을 염두에 두나 더욱 빠른 일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는 조사 대상이 4종이나 되어 설문지의 구성과 매뉴얼, 통계승인 자료 작성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승인통계로 추진하기 위해 통계청 관련 부서와의 논의도 사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연내 조사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려면 조사는 9월 중 실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통계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2022년 3월부터는 적어도 설문지의 구성, 통계승인을 위한 서류 준비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통계 승인을 위한 서류 중 매뉴얼과 결과표는 설문지의 구성이 확정되어야 작성 가능하므로 무엇보다 설문지 구성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표본 설계의 경우도 빠르게 작업이 될 필요가 있으나,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이 매월 이용자가 누적되는 형태의 서비스는 조사 시점을 언제로 정하는지에 따라 모집단의 규모와 표본 규모에 변동이 생기며 이는 표본설계에도 변동을 초래한다. 이에 조사표 개발과 통계승인 관련 각종 서류 작성과 더불어 통계승인 신청을 앞둔 1달 이내 모집단 정보를 확보하여 빠른 표본설계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정을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추진 일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4-1〉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추진 일정(안)

추진과제		세부추진내용	추진시기
통계청 담당부서 협의		조사의 필요성(차별성), 효과성	‘22. 2 ~ 4
설문지 개발 및 확정	설문지 개발	조사표 개발	‘22. 3 ~ 5
		전문가 워크숍	‘22. 5
	최종 설문지 확정	예비조사	‘22. 5 ~ 6
		설문지 확정	~ ‘22. 6
표본설계		모집단 규모 확정	~ ‘22. 6
		모집단 정보/명단 확보에 따른 표본설계	~ ‘22. 7
통계승인		매뉴얼, 결과표 등 통계승인 자료 작성	‘22. 6 ~ ‘22. 7
		통계승인신청 및 승인	‘22. 8. 10 ~ 8. 30
조사추진		조사업체선정	‘22. 8. 10 ~ 8. 30
		실사	‘22. 9

IV

종합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조사 설계 제안

- 01 조사 모집단 및 주요 특성
- 02 조사대상별 표본설계에 반영할 주요 변수 및 적정 표본규모
- 03 조사 방법
- 04 조사 항목

IV. 종합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조사 설계 제안

이 장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사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사종별 모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고,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의 규모를 산정하며, 가능한 조사 방법과 항목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조사 모집단 및 주요 특성

가. 서비스 대상자 조사: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서비스 이용대상자 조사의 모집단과 주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이용대상인 우리나라 만 12세 이하 아동의 인구 현황을 분석하고, 대상 연령가구의 맞벌이 특성을 살펴보았다. 통계자료는 최신의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인구총조사 자료,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1) 만 12세 이하 아동 인구

먼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모집단 규모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2세 이하 아동 인구는 총 5,361,526명이다(표 IV-1-1 참조). 만 0~2세 영아는 901,344명, 만 3~5세 유아 1,220,046명, 만 6~8세 초등저학년 1,372,206명, 만 9~12세 초등고학년 1,867,930명으로 파악된다(표 IV-1-1 참조).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만 36개월 미만 영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서비스 대상자 규모는 약 90만 가구라고 볼 수 있으며, 시간제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서비스 대상자 규모는 약 536만 가구라고 볼 수 있다. 각 연령별로는 만 4~12세는 연령별로 약 40만명 이상이지만, 만 3세(약 36만명), 만 2세(약 33만명), 만 1세(약 30만명), 만 0세(약 27만명) 등 만 3세 이하의 연령별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최근 저출생 현상의 심화로 인한 것으로 이와 같은 추세라면 향후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이용대상자 규모가 점차 감소해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광역단위가 되는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이용대상자의 규모가 큰 지역은 경기도(약 154만명)와 서울(약 84만명)이며, 인천(약 30만명)까지 포함하면 수도권에 약 269만명이 거주하고 있어 전체 대상아동의 50.2%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1-1 참조). 그 다음으로 경남(약 37만명), 부산(약 31만명), 경북(약 25만명), 대구(약 24만명)의 순으로 지역에서는 경상권에 이용대상자가 많은 편이다. 그 다음으로 충남(약 23만명), 전남(약 18만명), 전북(약 18만명), 충북(약 17만명), 광주(약 16만명), 대전(약 16만명)의 순으로 충청권과 전라권에 이용대상자가 분포해 있으며, 이용대상자가 적은 지역은 강원(약 14만명), 울산(약 13만명), 제주(약 8만명), 세종(약 6만명)이다(표 IV-1-1 참조).

〈표 IV-1-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 인구: 만 12세 이하 아동 인구(2020년 주민등록인구통계)

단위: 명, (%)

행정 기관	총 인구	연령구간 인구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전국	51,829,023	5,361,526 (100.0)	265,087	304,651	331,606	363,250	412,429	444,367	440,710	441,560	489,936	476,474	473,919	448,450	469,087
			901,344			1,220,046			1,372,206			1,867,930			
서울	9,668,465	842,538 (15.7)	45,165	50,482	53,099	57,331	64,404	68,808	68,085	68,257	75,438	72,676	73,776	70,062	74,955
부산	3,391,946	310,626 (5.8)	14,785	17,149	19,312	21,565	24,563	26,588	26,220	25,895	28,642	27,637	27,143	24,917	26,210
대구	2,418,346	241,074 (4.5)	10,935	13,326	14,626	16,445	18,868	20,143	20,147	19,952	22,240	21,544	21,397	20,137	21,314
인천	2,942,828	308,620 (5.8)	15,253	17,615	19,126	20,685	23,641	25,731	25,361	25,436	28,005	27,781	27,197	25,999	26,790
광주	1,450,062	163,942 (3.1)	7,147	8,656	9,663	10,801	12,503	13,394	13,631	13,760	15,364	14,773	15,024	14,337	14,889
대전	1,463,882	155,664 (2.9)	7,303	8,488	9,347	10,596	11,950	12,950	12,755	12,990	14,099	14,051	13,811	13,257	14,067
울산	1,136,017	132,115 (2.5)	6,375	7,398	8,022	9,069	10,471	11,231	11,203	11,034	12,165	11,538	11,491	10,863	11,255
세종	355,831	62,407 (1.2)	3,344	3,807	4,174	4,566	5,010	5,307	5,109	5,123	5,567	5,276	5,208	4,903	5,013
경기	13,427,014	1,541,495 (28.8)	76,810	88,101	96,802	105,278	119,777	128,940	127,560	126,241	140,538	135,937	134,861	127,586	133,064
강원	1,542,840	144,027 (2.7)	7,736	8,636	8,752	9,396	10,689	11,374	11,283	11,603	13,114	13,015	13,061	12,514	12,854

IV. 종합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조사 설계 제안

행정 기관	총 인구	연령구간 인구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충북	1,600,837	166,877 (3.1)	8,399	9,382	10,742	11,439	12,815	13,562	13,403	13,663	15,143	14,823	14,962	14,049	14,495
충남	2,121,029	233,118 (4.3)	11,733	13,382	14,425	15,791	17,742	19,205	18,957	19,291	21,299	20,803	20,601	19,588	20,301
전북	1,804,104	177,929 (3.3)	7,947	9,047	10,130	11,469	12,905	14,398	14,538	14,935	16,608	16,715	16,771	15,823	16,643
전남	1,851,549	179,804 (3.4)	9,445	10,725	10,884	11,764	13,216	14,266	14,124	14,758	16,584	16,436	16,305	15,384	15,913
경북	2,639,422	254,571 (4.7)	12,555	14,495	15,853	17,312	19,846	21,326	20,855	21,259	23,345	22,715	22,020	21,088	21,902
경남	3,340,216	365,164 (6.8)	16,327	19,365	21,667	24,279	27,882	30,544	30,731	30,531	34,073	33,367	32,987	30,978	32,433
제주	674,635	81,555 (1.5)	3,828	4,597	4,982	5,464	6,147	6,600	6,748	6,832	7,712	7,387	7,304	6,965	6,989

주: 2020년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 2021. 10. 19. 인출)

2020년 인구총조사를 통해서도 행정구역별(읍면동)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만 12세 이하 아동은 주로 동부(약 444만명)에 거주하고 있으며, 읍부(약 58만명)와 면부(약 32만명)에는 약 90만명 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표 IV-1-2 참조).

〈표 IV-1-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 인구: 만 12세 이하 아동 인구(2020년 인구총조사)

단위: 명

행정구역별 (읍면동)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전국	5,342,735	282,707	312,274	338,002	369,569	419,529	440,028	434,715	440,438	478,184	471,230	453,447	438,994	463,618
읍부	584,887	30,447	33,832	36,637	40,009	45,472	47,775	47,499	48,727	53,041	52,613	49,935	48,185	50,715
면부	317,736	18,271	19,788	20,899	22,120	24,560	25,716	25,172	25,761	27,975	28,009	26,855	25,749	26,861
동부	4,440,112	233,989	258,654	280,466	307,440	349,497	366,537	362,044	365,950	397,168	390,608	376,657	365,060	386,042
서울	830,770	48,535	52,113	54,282	58,277	65,662	67,544	66,306	66,811	72,015	70,530	69,043	67,033	72,619
부산	306,335	15,730	17,213	19,453	21,624	24,617	25,937	25,543	25,542	27,689	27,192	25,630	24,463	25,702
대구	240,236	11,859	13,393	14,921	16,545	19,049	19,828	19,707	19,902	21,789	21,248	20,621	19,970	21,404
인천	311,153	16,542	18,562	19,498	21,436	24,393	25,777	25,250	25,526	27,666	27,721	26,292	25,685	26,805
광주	164,665	7,659	8,807	9,944	11,058	12,693	13,372	13,636	13,819	15,167	14,845	14,564	14,211	14,890
대전	155,737	7,707	8,734	9,483	10,799	12,152	12,896	12,596	13,118	13,758	13,997	13,369	13,127	14,001
울산	132,530	6,770	7,495	8,219	9,332	10,626	11,163	11,116	11,088	11,891	11,569	11,194	10,754	11,313
세종	61,018	3,473	3,843	4,109	4,496	4,937	5,132	4,943	5,093	5,320	5,193	4,893	4,735	4,851
경기	1,539,890	81,905	91,067	99,109	107,669	122,236	128,397	125,950	126,206	137,461	134,327	129,121	125,010	131,432

행정구역별 (읍면동)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강원	142,750	8,052	8,509	8,836	9,471	10,720	11,114	11,133	11,474	12,949	12,837	12,584	12,271	12,800
충북	167,177	8,853	9,735	10,958	11,605	12,984	13,419	13,435	13,654	14,911	14,962	14,410	13,789	14,462
충남	235,032	12,567	13,746	14,874	16,175	18,177	19,211	18,915	19,497	21,034	20,816	20,238	19,393	20,389
전북	176,368	8,301	9,147	10,295	11,499	13,170	14,231	14,305	14,979	16,277	16,579	15,929	15,381	16,275
전남	177,643	9,844	10,661	10,931	11,726	13,327	14,011	13,957	14,863	16,192	16,371	15,308	14,908	15,544
경북	253,634	13,336	14,790	15,930	17,457	20,091	21,105	20,547	21,322	22,877	22,521	21,248	20,658	21,752
경남	365,689	17,418	19,732	21,994	24,776	28,400	30,279	30,598	30,589	33,612	33,173	31,937	30,800	32,381
제주	82,108	4,156	4,727	5,166	5,624	6,295	6,612	6,778	6,955	7,576	7,349	7,066	6,806	6,998

주: 2020년 인구총조사 결과임.

자료: KOSIS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3&conn_path=I2, 2021. 10. 19 인출)

이상에서 2020년 기준으로는 3세 이하에서는 연령이 어릴수록 출생아 수가 적어지는 경향이 짝으며, 4세 이상에서는 연령별로 대략 40만명의 규모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도권에 대상아동의 과반수가 밀집되어 있고, 시도별로 이용대상자의 분포가 고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용대상자 조사 표본설계 시 대상아동의 연령과 지역정보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2)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구 현황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는 주요한 이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맞벌이 가구 특성 파악을 위해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살펴보았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규모는 155만 4천 가구로 전체 유배우 가구 중 48.7%가 맞벌이 가구이며, 맞벌이 가구 비중은 전년 대비 0.2%p 감소했다(표 IV-1-3 참조). 세부적으로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44.8%(81만 3천 가구)이며, 7~12세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53.9%(74만 1천 가구)이다(통계청 보도자료, 2021. 6. 22: 8). 2020년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으나, 7~12세 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전년대비 0.9%p 감소하였다(표 IV-1-3 참조). 자녀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중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맞벌이 가구 비중이 적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IV-1-1 참조).

〈표 IV-1-3〉 만 12세 미만 자녀 연령별 맞벌이 가구 현황(2019~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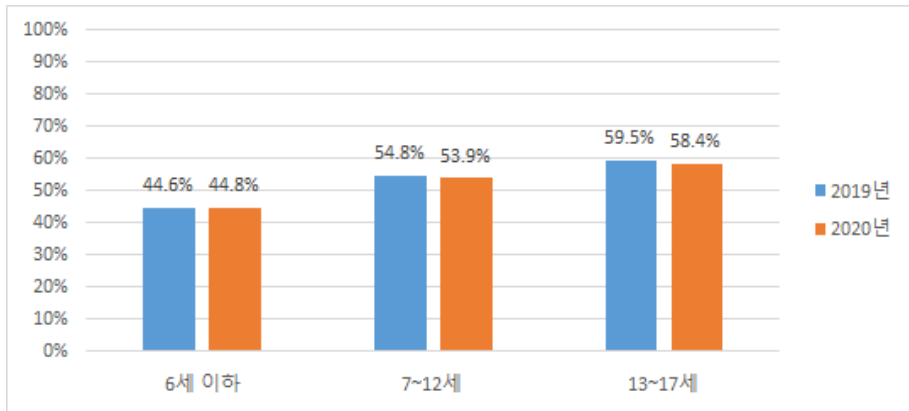
단위: 천가구, %, %p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유배우 가구(A)	맞벌이 가구(B)	비중 (B/A)	유배우 가구(C)	맞벌이 가구(D)	비중 (D/C)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중
전체	3,313	1,619	48.9	3,192	1,554	48.7	-121	-65	-0.2
6세 이하	1,932	861	44.6	1,817	813	44.8	-115	-48	0.2
7~12세	1,381	758	54.8	1,375	741	53.9	-6	-17	-0.9

주: 막내자녀 18세미만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여 진행된 조사의 결과로 본 절의 분석대상인 만 12세 이하 가구 수치만 발췌하여 표를 구성하였음.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1. 6. 22).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p.8.

〈그림 IV-1-1〉 자녀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중(2019~2020)



주: 통계청 보도자료(2021. 6. 22).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p.8의 〈자녀 연령별 맞벌이 가구 표〉를 그래프로 변형함.

자녀 연령별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을 살펴보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2시간으로 전년 대비 평균 0.9시간 감소하였고, 7~12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0.2시간으로 전년 대비 평균 1시간 감소하였다(통계청 보도자료, 2021. 6. 22: 9). 만 18세 미만 전체를 살펴봐도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적어 영유아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가장 적다(통계청 보도자료, 2021. 6. 22: 9). 이러한 맞벌이 가구의 취업시간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아버지의 주중 취업시간은 약 43시간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으나, 어머니의 주중 취업시간은 7~12세 가구는 36.7시간, 6세 이하 가구는 33.2시간의

로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주중 취업시간이 적어지며, 6세 이하에서는 아버지와 주중 취업시간이 평균 10시간 차이난다. 통상적인 상근직 근로가 주 40시간인 것을 감안할 때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가 시간제 근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V-1-4〉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주당 평균 취업시간(2019~2020)

단위: 시간

구분	2019년				2020년			
	0~17세	6세 이하	7~12세	13~17세	0~17세	6세 이하	7~12세	13~17세
맞벌이 가구	40.6	39.1	41.2	41.9	39.5	38.2	40.2	40.6
남자	44.7	44.5	45.0	44.6	43.3	43.2	43.6	43.1
여자	36.4	33.6	37.4	39.2	35.7	33.2	36.7	38.0

주: 막내자녀 18세 미만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외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1. 6. 22).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p.9.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가 7~12세 이하인 경우 보다 맞벌이 가구 비중이 적은 편이며,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도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가 7~12세 이하인 경우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향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조사를 위한 모집단의 분포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단,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이용가구 조사의 모집단 분포와 특성은 2020년말의 기준이므로, 조사가 실시될 시점에 모집단의 분포와 특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20년 12월말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누적 이용가구는 59,663가구로 시간제 일반형의 이용 비중이 88.9%로 가장 높고, 영아종일제 이용 가구가 5.3%, 질병감염 아동 서비스 3.7%, 시간제종합형 이용가구가 2.1%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일반형서비스 이용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시간제종합형서비스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도 시간제로 이용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크게 시간제와 영아종일제서비스로 이용되고 있으며, 94.7%는 시간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대상이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 제한되므로 이용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이 두드러지므로 표본설계 시 ‘영아종일제’이용가구가 일정 비율 이상 조사대상에 배분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이용가구 모집단의 분포에서 이용서비스의 유형은 시간제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는 특성이 두드러지나 소득유형(가~라형)별로는 어느 정도 이용 가구가 분산되어 있는 특징이 나타난다.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가구는 ‘가’형, 75~120%이하는 ‘나’형, 120~150%이하는 ‘다’형, 150% 초과는 ‘라’형으로 구분되는데, 2020년말 누적 기준 이용가구는 ‘가’형이 51.1%로 반 이상을 차지하며, ‘라’형 22.6%, ‘나’형 21.5%, ‘다’형 4.8%로 소득유형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유형에 따른 정부지원율과 본인부담액의 차이가 나타나 서비스 접근성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표본설계 시 이용가구의 ‘소득유형’을 고려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표 IV-1-5〉 서비스 유형별·소득유형별 이용가구 수

단위: 가구(%)

구분	계	75% 이하	75~120% 이하	120~150% 이하	150% 초과
시간제일반형	53,046(88.9%)	27,036	11,298	2,564	12,148
시간제종합형	1,246(2.1%)	644	233	55	314
질병감염아동	2,233(3.7%)	970	469	162	632
종일제	3,138(5.3%)	1,843	812	67	416
합계	59,663(100.0%)	30,493 (51.1%)	12,812 (21.5%)	2,848 (4.8%)	13,510 (22.6%)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를 기초로 구성함.

한편, 2020년말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수(누적) 기준의 모집단 분포를 살펴보았다. 서비스 유형별 이용 아동 수를 분석한 결과, 시간제일반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이 91.1%로 가구 수 기준보다도 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영아종일제 4.0%,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2.9%, 시간제종합형 서비스 2.0% 순으로 나타나 아동 수 기준으로도 시간제일반형에 집중된 모집단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아동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주로 어떤 연령층의 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

인할 수 있는 통계치로 모집단의 특성 확인에 매우 중요한 수치라 할 수 있다.

〈표 IV-1-6〉에 따르면 0~2세 영아의 비중이 41.4%이며, 3~5세 32.5%, 6~8세 19.8%, 9~12세 6.3%의 이용자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아이돌봄서비스는 주로 영아와 유아 위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 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이용이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아이돌봄서비스의 주된 이용 대상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아동인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설계에 있어서 이러한 모집단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이용 아동의 연령별 분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1-6〉 서비스 유형별·연령별 아동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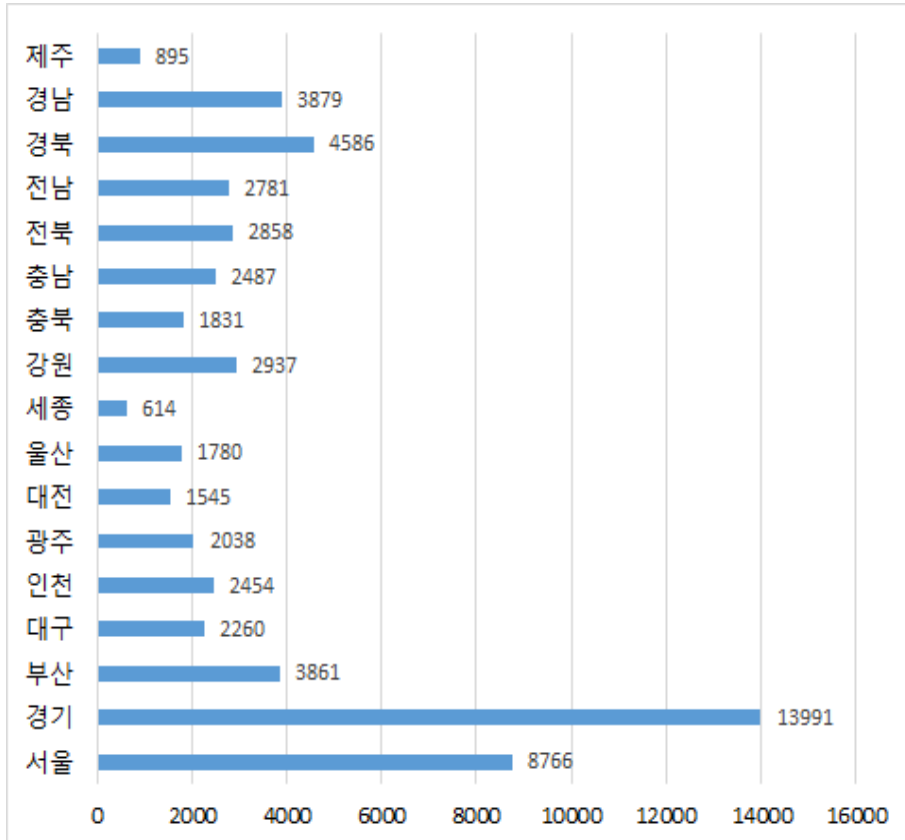
구분	계	0~2세	3~5세	6~8세	9~12세
시간제일반형	83,575 (91.1%)	32,605	28,033	17,390	5,547
시간제종합형	1,855 (2.0%)	613	568	441	233
질병감염아동	2,656 (2.9%)	1,164	1,166	302	24
영아종일제	3,629 (4.0%)	3,629	-	-	-
총계	91,715 (100.0%)	38,011 (41.4%)	29,767 (32.5%)	18,133 (19.8%)	5,804 (6.3%)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를 기초로 구성함.

다음으로 이용가구 모집단의 2020년 말 누적 기준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림 IV-1-2]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총 이용가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전국 이용가구 수 대비 23.5%(13,991가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시 8,766가구(14.7%), 경북 4,586가구(7.7%), 경남 3,879가구(6.51%), 부산 3,861가구(6.4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로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용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용가구 조사 표본설계 시에 이러한 지역 분포의 특성도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1-2] 2020년 지역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현황

단위: 가구



주: 이용가구 수는 2020년 12월까지의 누적 수치임.
 자료: 여성가족부(2020b),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통계(세부자료)), 2020년 12월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다.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대상 조사를 위한 모집단의 분포와 특성을 지역과 연령 분포를 통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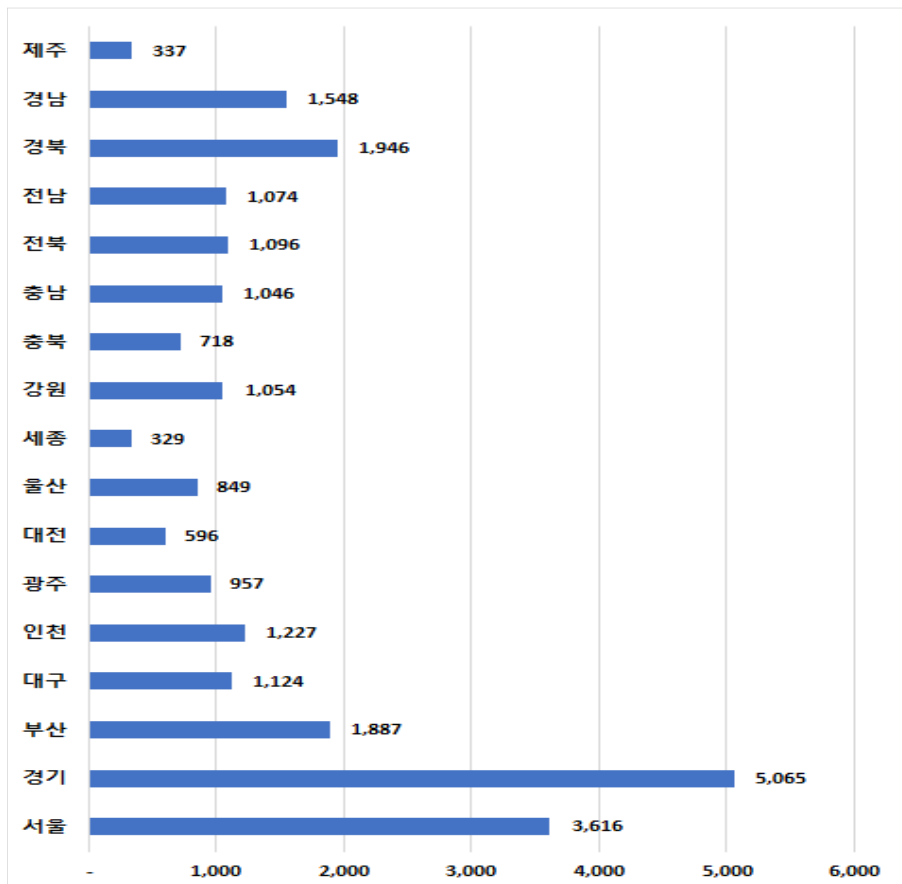
먼저 2020년 12월 누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 활동 아이돌보미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그림 IV-1-3 참조). 그 결과 경기도에서 5,065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기도와 서울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 분

포가 가장 높은 이 두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아이돌보미 수요와 공급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뒤를 경북, 부산, 경남, 인천, 대구 순으로 따르고 있는데, 그 수가 경기와 서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가 1,000명을 넘지 않는 지역은 세종, 제주, 대전, 충북, 울산, 광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와 지역 내 대상 아동 인구수/가구수를 고려하여 아이돌보미 비율을 산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수도권 지역에서 아이돌보미가 활발히 활동 중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V-1-3] 2020년 지역별 아이돌보미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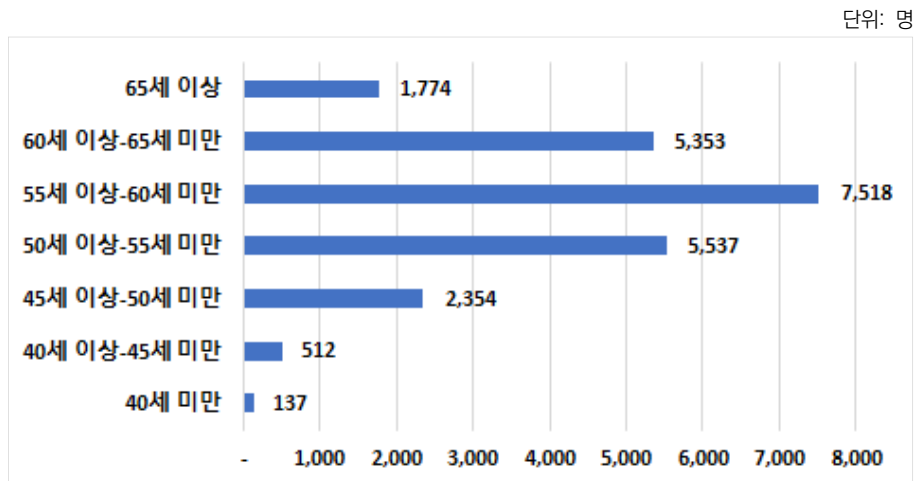
단위: 명



주: 활동돌보미 수는 2020년 12월까지의 누적 수치임.
 자료: 여성가족부(2020b).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통계(세부자료)). 2020년 12월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한편 2020년 12월 기준 소속돌보미로 등록되어있는 아이돌보미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보면, 55세 이상~60세 미만이 7,5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40세 미만 아이돌보미는 137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게 보고되었다. 만 55세 이상인 아이돌보미는 총 12,998명으로 전체 소속도우미의 63.2%로 나타나, 아이돌보미 종사자의 연령이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아이돌보미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는 이러한 아이돌보미의 연령과 지역별 분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IV-1-4] 2020년 아이돌보미 연령 분포 현황(소속돌보미 기준)



주: 소속돌보미 수는 누적 수치가 아닌, 월별로 산출된 수치로 본 결과는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함.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p.18. 바탕으로 재구성.

라.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와 이용 가정 사이에서의 서비스 연계를 직접 지원하는 역할과 지원 실적 통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여성가족부, 2021a: 14, 18), 2021년 1월 기준으로 전국 총 227개소가 존재한다. 이들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는 148개소,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18개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6개소, 여성단체 여성인력은 9개소, 지자체 직영 10개소, 사회복지관 4개소, 자활센터 3개소, 기타 29개소로 분류되었다. 이들 중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제공기관 유형은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전체의 75.8%가 이에 해당된다.

〈표 IV-1-7〉 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2021년 1월 기준)

단위: 개소

종류	수
서비스제공기관 전체	227
건강-다가 통합센터	148
건강가정지원센터	18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6
여성단체 여성인력	9
지자체 직영	10
사회복지관	4
자활센터	3
기타(YWCA/YMCA, 산학협력단, 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29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front/main/main.do>에서 2021. 8. 26. 인출.

한편, 지역별로 서비스제공기관을 분류해보면, 최대 31개소부터 최소 1개소까지 전국적으로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경기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이 3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울 25개소, 경북 23개소, 전남 21개소, 경남 20개소 순으로 줄어들었다. 서울,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는 대체로 10개 미만의 서비스제공기관이 있었으며, 제주도가 2개소, 세종시가 1개소로 그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별 서비스제공기관 목록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전국의 기초지자체 수준에 설립되어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종사자 대상 조사는 2018년 시범실태조사 실시의 경우 기관당 1~2명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 되었으며 모집단 크기가 작아 전수조사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조사대상별 표본설계에 반영할 주요 변수 및 적정 표본규모

여성가족부에서 향후 추진할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별 적정 표본규모 산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18년 여성가족부 수탁과제로 진행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데이터와 모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표본규모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규모 산출은 모집단 규모를 알고 있을 때 단순랜덤추출을 가정하여 표본수를 산정할 수 있는데, 이 때 신뢰수준과 오차한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수준 95%, 90%, 오차한계 0.05, 0.03, 0.01의 경우를 각각 살펴보았고, 적정 표본 수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 0.05 또는 0.03을 가정한 결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과거 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요항목의 추정량에 대한 변동성을 판단하는 측도인 상대표준오차를 제시하였다. 상대표준오차는 공표가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측도로 통계청의 국가통계승인 시에도 검토사항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모집단 규모 분석 결과와 과거 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적정 표본규모 산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서비스제공기관 조사는 전수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적정 표본규모 산정은 서비스 대상자 조사, 이용가구 조사, 아이돌보미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서비스 대상자 조사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조사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가 모집단이다. 주민등록인구 2021년 9월 기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모집단 정보(5,209,721명)를 이용하여 단순랜덤추출 가정 하에 대표성 있는 표본수를 산정 해보았을 때,

- * 90%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 272명
- * 95%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 384명
- * 90%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 0.03일 경우 756명
- * 95%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 0.03일 경우 1066명
- * 90%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 0.01일 경우 6797명
- * 95%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 0.01일 경우 9586명

의 샘플 수가 필요하다.

만 12세 이하 아동의 모집단을 아동연령구간인 0~2(영아) 3~5(유아) 6~8(초저) 9~12(초고)로 나누어서 오차한계 0.05와 0.03일 경우의 샘플수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1〉 아동연령집단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단위: 명

아동연령구간	아동 수	신뢰수준 90%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0~2세(영아)	849,210	272	384
3~5세(유아)	1,136,234	272	384
6~8세(초저)	1,339,610	272	384
9~12세(초고)	1,884,667	272	384
합계	5,209,721	1,089	1,536

〈표 IV-2-2〉 아동연령집단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단위: 명

아동연령구간	아동 수	신뢰수준 90%에서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0~2세(영아)	849,210	756	1,066
3~5세(유아)	1,136,234	756	1,066
6~8세(초저)	1,339,610	756	1,066
9~12세(초고)	1,884,667	756	1,067
합계	5,209,721	3,023	4,265

아동연령집단별 서비스 대상자 표본규모는 신뢰수준 및 오차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3일 경우 4,265명이다. 따라서 아동연령집단만 고려하였을 때의 표본 규모는 4천여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가구인 서비스 대상자 표본규모 산정 시, 아동연령구간인 0~2(영아), 3~5(유아), 6~8(초저), 9~12(초고) 구분과 함께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정보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연령집단만 고려하였을 때보다 필요한 표본 수가 더 많아진다. 지역규모 및 아동연령집단별 아동 수 모집단 정보를 이용하여 오차한계 0.05와 0.03일 경우의 샘플수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3〉 지역규모 및 아동연령집단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단위: 명

지역	아동연령구간	아동수	신뢰수준 90%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대도시	0~2세(영아)	341,150	272	384
	3~5세(유아)	454,387	272	384
	6~8세(초저)	534,983	272	384
	9~12세(초고)	751,241	272	384
중소도시	0~2세(영아)	464,310	272	384
	3~5세(유아)	627,080	272	384
	6~8세(초저)	738,486	272	384
	9~12세(초고)	1,033,270	272	384
농어촌	0~2세(영아)	43,750	271	381
	3~5세(유아)	54,767	271	381
	6~8세(초저)	66,141	271	382
	9~12세(초고)	100,156	272	383
	합계	5,209,721	3,261	4,598

〈표 IV-2-4〉 지역규모 및 아동연령집단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단위: 명

지역	아동연령구간	아동수	신뢰수준 90%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대도시	0~2세(영아)	341,150	755	1,064
	3~5세(유아)	454,387	755	1,065
	6~8세(초저)	534,983	755	1,065
	9~12세(초고)	751,241	755	1,066
중소도시	0~2세(영아)	464,310	755	1,065
	3~5세(유아)	627,080	755	1,065
	6~8세(초저)	738,486	755	1,066
	9~12세(초고)	1,033,270	756	1,066
농어촌	0~2세(영아)	43,750	743	1,042
	3~5세(유아)	54,767	746	1,047
	6~8세(초저)	66,141	748	1,050
	9~12세(초고)	100,156	751	1,056
	합계	5,209,721	9,029	12,715

지역규모 및 아동연령집단별 모집단 정보를 이용하였을 때의 적정 표본 수는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인 4,598명이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조사의 응답자가 가구이기 때문에 가구 정보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8년도 조사 데이터(여성가족부, 2018)를 분석하였다.

2018년에 조사된 서비스 대상자는(일반 국민 중 12세 이하 아동 가구)는 2,020 가구이다(여성가족부, 2018). 이 표본수에 대한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표준오차, 신뢰구간을 살펴보았다. 이용가구 조사에서 고려한 주요 설문 항목은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일-양육 양립의 어려움(이른 출근으로 아침시간에 아이를 맡겨야 할 때)이다.

서비스대상자 조사 데이터에서 지역규모 및 자녀구분(연령대)별 가구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IV-2-5〉 2018년 서비스대상자 조사 데이터 지역규모 및 자녀연령대 분포

단위: 명

지역규모	자녀구분				전체
	영아	유아	초저	초고	
대도시	169	182	184	212	747
중소도시	176	192	195	225	788
농어촌	109	118	121	137	485
전체	454	492	500	574	2,020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원데이터를 분석함.

데이터 분석은 지역규모 및 자녀연령구분 정보를 활용하여 2,020가구에 대한 주요 항목을 분석하였다.

〈표 IV-2-6〉 지역규모 대도시의 자녀연령대별 주요항목 상대표준오차(CV, %)

항목		자녀구분			
		영아	유아	초저	초고
		CV	CV	CV	CV
주요 항목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2.11	2.21	2.09	1.90
	일-양육 양립의 어려움(이른 출근으로 아침시간에 아이를 맡겨야 할 때)	3.87	3.75	4.40	3.48

〈표 IV-2-7〉 지역규모 중소도시의 자녀연령대별 주요항목 상대표준오차(CV, %)

항목		자녀구분			
		영아	유아	초저	초고
		CV	CV	CV	CV
주요 항목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2.30	1.91	1.99	2.02
	일-양육 양립의 어려움(이른 출근으로 아침시간에 아이를 맡겨야 할 때)	4.91	3.57	3.99	3.67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원데이터를 분석함.

〈표 IV-2-8〉 지역규모 농어촌의 자녀연령대별 주요항목 상대표준오차(CV, %)

항목		자녀구분			
		영아	유아	초저	초고
		CV	CV	CV	CV
주요 항목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2.91	3.11	2.69	2.31
	일-양육 양립의 어려움(이른 출근으로 아침시간에 아이를 맡겨야 할 때)	5.31	4.32	4.71	5.04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원데이터를 분석함.

지역규모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누고 자녀연령구분별로 상대표준오차를 구하였을 때 6%이내였다.

〈표 IV-2-9〉 소득기준유형 구분별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단위: 리커트척도

지역규모	아동연령집단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대도시	영아	0.04	1.93	2.10
	유아	0.04	2.02	2.20
	초저	0.04	2.02	2.19
	초고	0.03	1.99	2.14
중소도시	영아	0.04	1.88	2.06
	유아	0.04	2.04	2.20
	초저	0.04	2.02	2.19
	초고	0.04	1.92	2.08
농어촌	영아	0.05	1.85	2.08
	유아	0.06	1.94	2.19
	초저	0.05	1.97	2.20
	초고	0.04	1.92	2.11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원데이터를 분석함.

〈표 IV-2-10〉 소득기준유형 구분별 [일-양육 양립의 어려움(이른 출근으로 아침시간에 아이를 맡겨야 할 때)]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단위: 리커트척도

지역규모	아동연령집단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대도시	영아	0.14	3.38	3.95
	유아	0.12	2.96	3.44
	초저	0.13	2.72	3.24
	초고	0.10	2.85	3.27
중소도시	영아	0.17	3.21	3.91
	유아	0.12	3.25	3.74
	초저	0.12	2.90	3.40
	초고	0.11	2.80	3.24
농어촌	영아	0.19	3.30	4.09
	유아	0.14	3.07	3.65
	초저	0.15	2.90	3.51
	초고	0.14	2.64	3.23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원데이터를 분석함.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대상자(여성가족부, 2018)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실시할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목표 상대표준오차를 표본규모별(완료수 기준)로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11〉 서비스대상자 조사 주요 항목에 대한 2022년 CV값

단위: 가구, %

항목	2018		2022 (예상)	
	표본	CV	표본	목표 CV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2,020	0.64	2,000	0.64
			3,000	0.52
			4,000	0.45
			5,000	0.40
일-양육 양립의 어려움(이른 출근으로 아침시간에 아이를 맡겨야 할 때)	2,020	1.20	2,000	1.20
			3,000	0.98
			4,000	0.85
			5,000	0.76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원데이터를 분석함.

2022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서비스 대상자 조사 표본규모는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2천여명을 조사 완료했을 경우를 포함하여 적절한 표본규모를 CV값으로 비교·산출한 결과, CV값이 모두 1.5% 내외였다.

2022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서비스 대상자 적정 표본 규모는 2018년도의 완료 표본 수보다 많게 조사된다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 대상자 조사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가 모집단이기 때문에 모집단 가구 정보 및 취약계층의 현황 정보, 맞벌이 가구 정보를 확보한다면 이를 표본설계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조사에서는 위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시점의 모집단 정보 및 예산과 조사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본규모를 산정해야 할 것이다.

나. 이용가구 조사

서비스 이용가구는 2020년 기준으로 59,663가구이다. 모집단 정보(59,663가구)를 이용하여 단순랜덤추출 가정 하에 대표성 있는 표본수를 산정 해보았을 때,

- * 90%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 271가구
- * 95%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 381가구
- * 90%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 0.03일 경우 747가구
- * 95%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 0.03일 경우 1048가구
- * 90%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 0.01일 경우 6109가구
- * 95%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 0.01일 경우 8272가구

의 샘플 수가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가구를 소득기준 유형별로 나누어서 오차한계 0.05와 0.03일 경우의 샘플수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12〉 소득기준유형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단위: 가구

소득기준유형	이용 가구수	신뢰수준 90%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75% 이하	30,493	270	379
75~120% 이하	12,812	267	373
120~150% 이하	2,848	248	339
150% 초과	13,510	267	374
합계	59,663	1,052	1,464

〈표 IV-2-13〉 소득기준유형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단위: 가구

소득기준유형	이용 가구수	신뢰수준 90%에서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75%이하	30,493	738	1,031
75~120%이하	12,812	714	985
120~150%이하	2,848	598	776
150%초과	13,510	716	989
합계	59,663	2,766	3,781

소득기준 유형별 서비스 이용가구 표본규모는 신뢰수준 및 오차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3일 경우 3,781가구이다. 2018년도 조사에서 6천 가구 이상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모집단 규모를 고려한다면 4천가구 정도의 규모로 조사가 이루어져도 유의미한 신뢰수준과 오차한계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서비스 이용가구 표본규모 산정 시, 아동연령구간을 0~2(영아), 3~5(유아), 6~8(초저), 9~12(초고)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아동수를 기준으로 표본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데, 아동연령구간 및 소득유형별 이용아동 수 모집단 정보를 이용하여 오차한계 0.05와 0.03일 경우의 샘플수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14〉 아동연령집단 및 소득기준유형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소득기준유형	소득기준유형	이용 아동수	신뢰수준 90%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0~2세(영아)	75%이하	20,370	269	377
	75~120%이하	9,218	264	369
	120~150%이하	1,640	233	311
	150%초과	6,783	262	364
3~5세(유아)	75%이하	15,815	268	375
	75~120%이하	6,321	261	362
	120~150%이하	1,528	231	307
	150%초과	6,103	261	361
6~8세(초저)	75%이하	10,574	265	371
	75~120%이하	2,938	249	340
	120~150%이하	811	204	261
	150%초과	3,810	254	349
9~12세(초고)	75%이하	3,718	254	348
	75~120%이하	443	169	206
	120~150%이하	172	105	119
	150%초과	1,471	230	305
	합계	91,715	3,779	5,124

〈표 IV-2-15〉 아동연령집단 및 소득기준유형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단위: 명

아동연령집단	소득기준유형	이용 아동수	신뢰수준 90%에서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0~2세(영아)	75%이하	20,370	729	1,014
	75~120%이하	9,218	699	956
	120~150%이하	1,640	518	646
	150%초과	6,783	680	922
3~5세(유아)	75%이하	15,815	722	1,000
	75~120%이하	6,321	675	913
	120~150%이하	1,528	506	628
	150%초과	6,103	673	908
6~8세(초저)	75%이하	10,574	706	969
	75~120%이하	2,938	601	783
	120~150%이하	811	391	461

아동연령집단	소득기준유형	이용 아동수	신뢰수준 90%에서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150%초과	3,810	631	834
9~12세(초고)	75%이하	3,718	628	829
	75~120%이하	443	279	313
	120~150%이하	172	140	148
	150%초과	1,471	499	618
	합계	91,715	9,079	11,943

아동연령구간 및 소득유형별 이용아동 수의 모집단 정보를 이용하였을 때 적정 표본수는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인 5,124명으로 볼 수 있다.

표본규모의 적정성은 모집단 정보를 분석하여 산출할 수도 있지만 기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9월에 시행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이용가구 조사는 6,730가구가 조사 완료 표본수이다(여성가족부, 2018: 37). 이 표본수에 대한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표준오차, 신뢰구간을 살펴보았다. 이용가구 조사에서 고려한 주요 설문 항목은 아이돌봄서비스 주당 총 이용시간, 월평균 이용 비용, 비용 만족도이다.

이용가구 조사 데이터에서 소득기준 유형별 가구수는 다음과 같다.

〈표 IV-2-16〉 2018년 이용자 조사 데이터 소득기준유형별 가구수

단위: 가구, %

소득기준유형	가구수	비율
75%이하	1,861	27.7
75~120%이하	886	13.2
120~150%이하	859	12.8
150%초과	2878	42.8
모르겠음	246	3.7
합계	6,730	100.0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원데이터를 분석함.

데이터 분석은 소득기준 유형의 질문에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대상자를 제외한 6,484가구에 대한 주요 항목을 분석하되, 항목별 결측치는 제거하였다.

〈표 IV-2-17〉 소득기준유형 구분별 주요항목 상대표준오차(CV, %)

항목		전체	소득기준 구분			
			75%이하	75~120% 이하	120~150% 이하	150% 초과
		CV	CV	CV	CV	CV
주요 항목	아이돌봄서비스 주당 총 이용시간	1.05	1.95	2.93	2.90	1.54
	월평균 이용 비용	0.97	2.44	2.65	2.41	1.31
	비용 만족도	0.42	0.69	1.19	1.22	0.67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원데이터를 분석함.

〈표 IV-2-18〉 소득기준유형 구분별 [아이돌봄서비스 주당 총 이용시간]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단위: 시간

소득기준 구분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체	0.18	16.73	17.43
75% 이하	0.35	17.27	18.65
75~120% 이하	0.53	17.07	19.15
120~150% 이하	0.52	17.08	19.15
150% 초과	0.25	15.45	16.41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원데이터를 분석함.

〈표 IV-2-19〉 소득기준유형 구분별 [월평균 이용 비용]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단위: 만원

소득기준 구분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체	0.44	44.52	46.26
75% 이하	0.57	22.50	24.77
75~120% 이하	1.01	35.97	39.93
120~150% 이하	1.21	47.58	52.32
150% 초과	0.79	58.65	61.76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원데이터를 분석함.

〈표 IV-2-20〉 소득기준유형 구분별 [비용 만족도]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단위: 리커트척도

소득기준 구분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체	0.01	3.18	3.24
75% 이하	0.02	3.48	3.58
75~120% 이하	0.03	2.99	3.13
120~150% 이하	0.04	2.88	3.02
150% 초과	0.02	3.08	3.16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원데이터를 분석함.

주요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1%내외이고, 소득기준유형 구분별 주요항목 상대표준오차는 모두 3% 이내였다.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여성가족부, 2018) 이용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실시할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목표 상대표준오차를 표본규모별(완료수 기준)로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N_1 CV_1^2 = N_2 CV_2^2$$

N_1 : 2018년 조사 표본규모

CV_1^2 : 2018년 조사 결과 상대표준오차

N_2 : 2022년 조사 산출된 표본규모(완료수 기준)

CV_2^2 : 2022년 조사 목표 상대표준오차

〈표 IV-2-21〉 이용자 조사 주요 항목에 대한 2022년 CV값

단위: 가구, %

항목	2018		2022 (예상)	
	표본	CV	표본	목표 CV
아이돌봄서비스 주당 총 이용시간	6,358	1.05	4,000	1.32
			5,000	1.18
			6,000	1.08
			7,000	1.00
월평균 이용 비용	6,378	0.97	4,000	1.22
			5,000	1.09
			6,000	1.00
			7,000	0.92

항목	2018		2022 (예상)	
	표본	CV	표본	목표 CV
비용 만족도	6,484	0.42	4,000	0.53
			5,000	0.47
			6,000	0.43
			7,000	0.40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원데이터를 분석함.

2022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이용자 조사 표본규모는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6천여명을 조사 완료했을 경우를 포함하여 적절한 표본규모를 CV값으로 비교·산출한 결과, CV값이 모두 2% 내외였다. 따라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조사의 경우, 4,000가구 이상 조사 완료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의 조사에서는 위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과 조사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본규모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다. 아이돌보미 조사

아이돌보미 조사에 대한 적정 표본규모 산출을 위해 모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이돌보미는 지역별 분포, 소속기관별 분포, 연령대가 중요한 표본설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소속기관은 아이돌봄지원법개정(2022년부터 전국 227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시, 도 하나씩임)로 바뀌게 된다²⁹⁾). 따라서 지역과 돌보미의 연령대를 고려한 표본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활동서비스 유형은 크게 영아종일제/ 기타(시간제, 질병감염아동, 기관파견 등 다른 유형 모두)로 고려할 수 있는데, 중복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본설계에서 층화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다. 아이돌보미 연령대 분석은 소속돌보미 수, 지역 분포 분석은 활동돌보미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아이돌보미의 소속돌보미 수는 2020년 기준으로 23,185명이다. 모집단 정보(23,185명)를 이용하여 단순랜덤추출 가정 하에 대표성 있는 표본수를 산정 해보았을 때,

29)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4.30.).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가족 지원 체계 강화.

- * 90%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 269명
- * 95%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 377명
- * 90%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 0.03일 경우 732명
- * 95%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 0.03일 경우 1020명
- * 90%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 0.01일 경우 5261명
- * 95%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 0.01일 경우 6790명

의 샘플 수가 필요하다.

아이돌보미를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오차한계 0.05와 0.03일 경우의 샘플수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22〉 연령대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단위: 명

연령대	소속돌봄비 수 (2020년 기준)	신뢰수준 90%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40세 미만	137	91	101
40세이상-45세미만	512	178	219
45세이상-50세미만	2,354	244	330
50세이상-55세미만	5,537	259	359
55세이상-60세미만	7,518	263	365
60세이상-65세미만	5,353	259	358
65세이상	1,774	236	316
합계	23,185	1,530	2,050

〈표 IV-2-23〉 연령대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단위: 명

연령대	소속돌봄비 수 (2020년 기준)	신뢰수준 90%에서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40세 미만	137	116	121
40세이상-45세미만	512	305	346
45세이상-50세미만	2,354	572	734
50세이상-55세미만	5,537	665	895
55세이상-60세미만	7,518	687	934
60세이상-65세미만	5,353	663	890
65세이상	1,774	530	666
합계	23,185	3,539	4,587

연령대별 아이돌보미 조사 표본규모는 신뢰수준 및 오차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3일 경우 4,587명이다. 즉, 모집단 정보를 이용하였을 때 5천여 명 정도 규모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조사의 적절성에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아이돌보미 조사의 표본규모 산정 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 정보도 중요한 층화변수이다. 지역별 활동돌보미 수 모집단 정보를 이용하여 오차한계 0.05와 0.03일 경우의 샘플수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24〉 지역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단위: 명

지역	활동 돌보미 수	신뢰수준 90%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서울	3,616	253	347
경기	5,065	258	357
부산	1,887	238	319
대구	1,124	219	286
인천	1,227	223	293
광주	957	212	274
대전	596	187	234
울산	849	206	264
세종	329	149	177
강원	1,054	216	282
충북	718	197	250
충남	1,046	216	281
전북	1,096	218	284
전남	1,074	217	283
경북	1,946	239	321
경남	1,548	232	308
제주	337	151	180
합	24,469	3,631	4,740

〈표 IV-2-25〉 지역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단위: 명

지역	활동 돌보미 수	신뢰수준 90%에서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서울	3,616	625	824
경기	5,065	658	881
부산	1,887	540	682
대구	1,124	452	547
인천	1,227	468	571
광주	957	422	505
대전	596	333	382
울산	849	400	473
세종	329	229	251
강원	1,054	440	530
충북	718	368	429
충남	1,046	439	528
전북	1,096	447	541
전남	1,074	444	535
경북	1,946	545	689
경남	1,548	508	632
제주	337	233	256
합	24,469	7,553	9,257

지역별 활동돌보미 수 모집단 정보를 이용하였을 때의 적정표본수는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인 4,740 명 정도로 볼 수 있다.

2018년 9월에 시행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8) 아이돌보미 조사는 6,111명이 조사 완료 표본수이다. 이 표본수에 대한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표준오차, 신뢰구간을 살펴보았다. 2018년 아이돌보미 조사(여성가족부, 2018) 분석데이터에는 지역정보가 없기 때문에 연령대별 분포로만 고려하였다. 그리고 2018년 조사가 돌보미 연령대를 고려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40대 이하의 돌보미들이 조사대상자에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8년도 데이터 분석은 50세 미만으로 구분하였다.

아이돌보미 조사 데이터에서 연령대별 돌보미 수는 다음과 같다.

〈표 IV-2-26〉 2018년 아이돌보미 조사 데이터 연령대별 돌보미 수

단위: 명, %

연령대	돌보미 수	비율
50세미만	626	10.2
50세이상~55세미만	1,258	20.6
55세이상~60세미만	2,156	35.3
60세이상~65세미만	1,535	25.1
65세이상	529	8.7
무응답	7	0.1
합계	6,111	100.0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원데이터를 분석함.

아이돌보미 조사에서 고려한 주요 설문 항목은 총취업경력(년), 아이돌보미 활동 만족도(시간당 급여), 아이돌보미 활동만족도(제도 전반)이다. 돌보미 연령 질문에 무응답으로 처리된 7케이스를 제외한 6,104명에 대한 주요 항목을 분석하되, 항목별 결측치는 제거하였다.

〈표 IV-2-27〉 연령대별 주요항목 상대표준오차(CV, %)

항목		전체	연령대 구분				
			50세미만	50세이상 55세미만	55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65세미만	65세이상
		CV	CV	CV	CV	CV	CV
주요 항목	총취업경력(년)	1.06	3.60	2.32	1.82	1.99	3.59
	아이돌보미 활동만족도 (시간당 급여),	0.51	1.68	1.19	0.89	0.96	1.49
	아이돌보미 활동만족도 (제도 전반)	0.37	1.25	0.85	0.64	0.70	1.08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원데이터를 분석함.

〈표 IV-2-28〉 연령대 구분별 [총취업경력]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단위: 년

연령대 구분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체	0.07	6.46	6.73
50세 미만	0.21	5.43	6.25
50세 이상 55세 미만	0.14	6.04	6.62

연령대 구분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55세 이상 60세 미만	0.11	6.26	6.72
60세 이상 65세 미만	0.13	6.52	7.05
65세 이상	0.28	7.43	8.56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원데이터를 분석함.

〈표 IV-2-29〉 연령대 구분별 [아이돌보미 활동만족도(시간당 급여)]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단위: 리커트척도

연령대 구분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체	0.01	2.42	2.47
50세 미만	0.04	2.33	2.49
50세 이상 55세 미만	0.02	2.27	2.38
55세 이상 60세 미만	0.02	2.35	2.43
60세 이상 65세 미만	0.02	2.51	2.60
65세 이상	0.04	2.62	2.78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원데이터를 분석함.

〈표 IV-2-30〉 연령대 구분별 [아이돌보미 활동만족도(제도 전반)]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단위: 리커트척도

연령대 구분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체	0.01	3.10	3.15
50세 미만	0.03	2.99	3.14
50세 이상 55세 미만	0.02	2.99	3.09
55세 이상 60세 미만	0.01	3.06	3.14
60세 이상 65세 미만	0.02	3.16	3.25
65세 이상	0.03	3.21	3.35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원데이터를 분석함.

주요항목에 대한 전체 상대표준오차는 1%내외였으며, 연령대를 구분하여 상대표준오차를 산출하였을 때는 4%이내였다.

2018년 아이돌보미 조사(여성가족부, 2018)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실시할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목표 상대표준오차를 표본규모별(완료수 기준)로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조사에서 고려한 예상 표본 수는 2018년도 조사 완료 표본인 6천여 명을 포함한 규모로 산정하였다.

〈표 IV-2-31〉 아이돌보미조사 주요 항목에 대한 2022년 CV값

단위: 명, %

항목	2018		2022 (예상)	
	표본	CV	표본	목표 CV
총 취업경력(년)	5,825	1.05	4,000	1.26
			5,000	1.13
			6,000	1.03
			7,000	0.95
아이돌보미 활동만족도 (시간당 급여)	6,104	0.97	4,000	1.19
			5,000	1.07
			6,000	0.97
			7,000	0.90
아이돌보미 활동만족도 (제도 전반)	6,104	0.42	4,000	0.51
			5,000	0.46
			6,000	0.42
			7,000	0.39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원데이터를 분석함.

2018년도 주요 항목의 CV값을 이용하여 2022년 예상 표본 규모에 따른 목표 CV값을 산출한 결과, CV값이 모두 2% 내외였다. 따라서 아이돌보미 조사는 5천 명 정도의 규모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2022년 실제 조사에서는 위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과 조사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본규모를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조사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가 시범 실태조사와 같이 이용대상자, 이용자,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될 경우 가능한 조사 방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대상자, 이용자, 아이돌보미 대상의 조사는 모집단의 규모, 조사 목적 대비 조사기간 및 예산 등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전체 모집단 중 적정 규모의 표본을 추출하여 표집된 표본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표본조사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별 1명 이상의 업무담당자를 조사하면

되므로, 모집단의 규모가 작아 전수조사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용자 조사와 아이돌보미 조사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명단 확보를 통해 확보 명단에 대한 무작위 표본추출의 실시로 조사 표본에 접근하는 것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나, 명단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면 서비스제공기관별 이용가구(이용아동), 아이돌보미의 분포에 따른 조사 사례 할당과 서비스제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차선택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아이돌보미는 2022년 소속이 기존의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광역서비스지원센터로 변경될 예정이므로³⁰⁾, 이용자의 조사 사례 할당은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아이돌보미의 조사 사례 할당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용대상자 조사의 경우 전국의 만 12세 이하 아동의 지역별·연령별 주민등록 인구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설계에 따라 조사구 방식으로 조사 대상에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방법의 경우, 면접조사 외 온라인조사 방식의 활용도 가능하나 2018년 시범 실태조사가 웹설문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활용하였을 때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의 아이돌보미들의 어려움이 보고된 바 있다. 이에 가급적 아이돌보미의 경우 사례수를 줄이더라도 면접조사를 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온라인 조사의 활용 증가로 웹설문의 구현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으나,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문항 구성의 복잡성 수준을 고려해 조사원이 설명을 통해 문항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면접조사를 추진하거나 온라인 조사로 추진할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V-3-1〉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종별 조사 방법(안)

구분	접근 방법	조사 방법	비고
이용대상자 조사	조사구 방식 활용	면접조사	표본조사
이용자 조사	1안) 서비스 이용자 명단 확보를 통한 접근(랜덤 샘플링) 2안) 서비스제공기관별 조사사례 협조를 통한 접근	1안) 면접조사 2안) 온라인 조사 (이메일, 모바일 활용)	
아이돌보미	1안) 아이돌보미 명단 확보를 통한 접근	1안) 면접조사	

30)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4. 30.).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가족 지원 체계 강화.

구분	접근 방법	조사 방법	비고
	(랜덤 샘플링) 2안) 광역서비스지원센터별 조사사례 협조 및 할당을 통한 접근	2안) 온라인 조사 (이메일, 모바일 활용)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명단 확보를 통한 접근	1안) 온라인 조사 (이메일, 모바일 활용)	전수조사

4. 조사 항목

아이돌봄지원법 제28조의2에서는 ‘아이돌보미 실태조사(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목적을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여성가족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158호) 제15조의2에서는 실태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 IV-4-1〉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실태
2. 아이돌보미의 특성 및 활동 실태
3. 서비스기관의 운영 현황 및 종사자 실태
4.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 정도 및 이용 수요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실태조사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158호, 2021. 1. 4.)

이에 이 절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 포함된 조사 종별로 포함되어야 할 조사 항목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8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던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8)의 설문 항목을 기본으로, 이후의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련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추가, 삭제, 변경(수정) 필요 항목을 선별하여 조사 목적에 맞는 문항(안)을 제안하였다.

가. 서비스대상자(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조사항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8)의 이용대상자용(일반국민) 조사항목을 검토하였다. 이 조사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목적은 잠재 수요를 예측하고 필요 서비스 규모 및 예산 규모 추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여성가족부, 2018: 3).

검토 결과, 전체적으로 ‘자녀 양육실태,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및 이용경험, 이용 수요 파악을 위한 향후 서비스 이용 계획 및 의사, 민간육아도우미 이용 경험 및 인식, 아이돌봄서비스 정책 만족도 및 개선요구’의 기존 조사항목의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표 IV-4-2 참조).

수정사항으로는 먼저 이용수요 파트를 최신 정책상황에 맞게 업데이트(서비스 유형, 정부지원 사항 등) 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및 이용경험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향후 이용계획을 기존 조사항목에서는 5년간의 계획을 물었으나 5년은 장기간이어서 다소 변동성이 크므로 실태조사 주기에 맞춰 향후 3년 정도의 이용계획을 묻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전문화된 서비스 유형 필요여부와 필요서비스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 예컨대 장애아동, 환아처럼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아동을 위한 전문서비스, 또는 놀이나 활동 혹은 학습에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이 조사의 목적에 잠재 수요를 예측하고 필요 서비스와 예산 등의 규모를 추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도 있으므로 돌봄공백이 있어 서비스가 필요하나 미이용한 가구가 있는지 파악하고, 돌봄공백이 있음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8년 시범 조사문항에서는 서비스 인지도와 이용률만을 포함하고 있어 이 부분을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용수요 파트에서 돌봄공백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을 서비스 인지도 문항 앞에 추가하여 필요가구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돌봄 공백이 있지만 미이용한 가구에게 미이용 이유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필요가구의 이용 저해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과 대비했을 때 공공사업으로서 아이돌봄서비스에 기대하는 일반 국민의 기대수준 혹은 질적 수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공공 아이돌보미의 필요요건(자격)’, ‘공공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민간과 대비하여 어떤 차별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고 제도개선의 방향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에 돌봄인력이 파견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서비스의 일환이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개인대리양육을 통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양육현황 및 수요를 파악하는 문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팬데믹 등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변화가 있을지, 비용 및 이용시간 또는 기간의 장기성이나 심각도(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같은 돌봄계획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본인 부담 비용 임계점과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할 사항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 보기 선택지 수준의 경미한 수정사항은 조사항목(안)에서 상세기술하였다. 이용대상자 조사의 조사항목(안)은 다음 <표 IV-4-2>와 같다.

<표 IV-4-2> 서비스대상자(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 대상 조사항목

구분	문항 번호	2018년 조사 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응답가구 특성	선문	대상자녀 유무, 자녀수, 대상자녀 출생연월/성별, 거주지역, 응답자 성별, 가족유형	(유지)
	1	가구원수	(유지)
	2	부모 취업관련 특성(취업상태, 근로형태, 일평균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u>맞벌이</u>) 일/학업으로 인한 양육 어려움 정도	(유지) (수정) 부모 취업관련 특성에 교대근로 등의 특수한 근로형태 추가, 맞벌이대상을 맞벌이(한부모포함)으로 수정
	3	가구소득	(유지)
	4	자녀 장애/질병 유무	(유지) 장애/질병 해당 예 추가
자녀 양육 실태	1	막내자녀 취학여부 막내자녀(취학/미취학)의 주양육자	(유지)
	2	막내 자녀 발달 시기별 돌봄사람(기관) 및 모의 취업상태)	(유지)

구분	문항 번호	2018년 조사 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3	긴급 돌봄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유지)
	4	인지여부	(유지)
	5	신청경험 여부	(유지)
아이돌봄 서비스 인지 및 이용경험	6	<u>이용 경험 여부</u> (이용경험자) 이용해 본 <u>서비스 유형</u> , (이전경험자) 중단 <u>이유</u> (종일제 이용경험자) 이용 <u>이유</u>	(유지) 과거이용자 이용기간 응답란 추가, 이용 서비스유형 수정(질병감염아동지 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일시연계서 비스 추가), 중단이유 중폭응답으로 수정 (추가) 코로나19 관련 문항
	7	(이용경험자) 이용 <u>이유</u>	(유지) 보기 추가(정부지원 비용으로 경 제적 부담이 적어서, 국가 사업으로 신뢰가 가서)
	8	신청 후 대기 경험 여부 (신청 후 대기 중) 대기 기간 (신청 후 대기 중) 대기 중인 이유 (신청 후 대기 중단) 대기 중단 이유	(유지)
	9	(신청경험 없음) 미이용 <u>이유</u>	(유지) 보기 추가(아동학대 사례 보도/ 주변 경험 등 부정적 인식)
	10	(신청경험 없음) 정부 지원의 구체적 내용 인지 여부 정부 지원 세부사항 인식 전/후의 이용 의향	(유지) 정부지원 비용표 최신 업데이트
[이용수요] 향후 서비스 이용 계획	11	향후 이용 계획 의향 향후 5년('19-'23) 년도별 이용 의향 향후 5년('19-'23) 년도별 이용희망 유형 주간 이용 희망 시간대 야간 및 주말 서비스 이용 의향 (현재 미이용/향후 이용희망) 향후 이용 <u>희망</u> <u>이유</u> (이용의향자) 종합형/보육교사형 이용의향, <u>이용미희망 이유</u>	(유지) 향후 이용계획 기간 3년으로 단 축(5년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실태조 사 주기와 맞춰 수정), 향후 이용희망 이유 보기 수정(타 서비스와 비교내용 외에 본 서비스의 장점도 추가, 공공 서비스를 알게 되어서, 취학 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셔서 등) (추가) 전문화된 서비스 유형 필요여부, 필요 서비스 내용, 돌봄공백 여부, 돌 봄공백이 있는 미이용가구 대상 미이 용 이유
민간육아도 우미 이용 경험 및 인식	12	민간육아도우미 이용 경험 민간육아도우미 이용형태(유형, 월간이용 일수, 회당 이용시간, 월 이용비용) 민간육아도우미 이용 <u>이유</u>	(유지)
	13	(공공+민간 이용경험자) 공공 대비 민간육 아도우미의 장점	(유지) 보기 추가(민간 도우미가 더 빨 리 연결됨, 연속성)
	14	(공공+민간 이용경험자) 민간 대비 공공 아이돌봄의 장점	
아이돌봄 서비스 정책	15	정책평가(긍/부정 정도) 긍정평가 이유 부정평가 이유	(유지) 긍정평가 보기 추가(국가 사업으 로 신뢰할 수 있어서, 일가정 양립에 도움, 돌봄 부담 경감)

구분	문항 번호	2018년 조사 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만족도 및 개선요구			(추가) 공공 아이돌봄미 필요요건, 공공서비스로서 민간 대비 기대하는 차별성
	16	비용부담 수준 평가	(유지) 지원 단가 최신 업데이트
	17	최대 지불 의향 비용 수준	(유지) 보기 상향 수정(연속형 금액으로 수정도 고려)
	18	(이용경험자) 항목별 개선 필요도(비용 지원대상 확대, 비용 지원 수준 상향, 돌보미 모니터링 및 자격 기준 강화, 서비스 내용 전문성 제고, 이용시간 확대, 신청-연계 체계 효율화)	(유지) 항목에 '정부지원 시간 확대' 추가
추가항목		-	(추가) 코로나19 관련 문항 (코로나 전/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 여부, 증가 이유, 신청여부,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이용여부/이용만족도, 필요 서비스 유형/내용, 이용기관 휴원/휴교/교사 백신접종 혹은 자가격리 등 경험 여부, 코로나19 관련 긴급보육 시 대처 방법/필요 기간, 팬데믹으로 인한 가정양육 가능 최대 기간, 향후 팬데믹 시 기관 대신 이용 의향, 이용 이유/미이용 이유 등)

주: 1) 변경 전은 2018년 조사항목이고, 실태조사(안)은 본 연구의 결과임.

2) 수정할 항목은 밑줄로 표기함.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p.36, pp.373-384.

나. 이용자(가구) 조사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에서는 조사의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적시하였으므로 어렵지 않게 조사가 필요한 대상을 예측할 수 있다.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사 항목의 첫 번째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실태'이며, 이는 '이용 가구'가 조사 대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가 어떠한지 파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사업 목표(추진 목적)의 이용자 입장에서 달성 정도,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 사항의 파악을 위한 문항이 주요한 조사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추진 목적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으로 주요하게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2세 이하 영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21a: 7).

2018년도에 구성된 이용가구 대상의 실태조사 항목은 이용자 가구의 자녀 특성, 근로형태, 가족유형, 서비스의 이용 이유 등 돌봄 욕구, 틈새돌봄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이용의 형태, 개선 요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문항을 갖추고 있다.

다만, 미취학 자녀에 비해 취학 자녀의 돌봄 실태나 욕구 파악에 관한 문항이 미비하여 여기서는 취학자녀의 방과후 다양한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파악의 문항과 아이돌보미에게 기대하는 역할 문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밖에 2018년 이후 서비스 유형에서 제외된 '보육교사형 서비스'에 대한 문항을 삭제할 것과, 2019년 이후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시스템(대기시스템, 모바일 앱, 간편 결제 등)에 대한 이용 경험과 만족도, 개선 사항을 묻는 문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제도의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최저임금 상향 등의 영향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단가도 상승하고 있어,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문항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감 정도를 묻는 문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행태나 욕구의 변화, 지원에 대한 체감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의 추가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향후 추진 예정인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이용가구 조사 항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4-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대상 조사 항목(안)

구분	문항번호	2018년 조사 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자녀양육 특성	1	응답자 성별	(유지)
	2	총 자녀수	(유지)
	3	서비스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동의 수, 연령, 성별, 이용 여부(자녀별 응답)	(유지)
	(추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자녀	(추가) 응답 가구의 자녀들 중 서비스 이용 대상 자녀를 특정하는 질문 필요
	4	미취학 자녀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여부	(유지)
	4-1	미취학 자녀가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의 종류	(유지)
	4-2	아이돌봄서비스와 반일제 이상 기관을 함께 이용하는 이유	(유지)
	(추가)	취학 자녀가 방과후에 이용하는 기관 유무	(추가) 취학자녀의 방과후 돌봄기관 이용 특성
	(추가)	취학 자녀가 방과후에 이용하는 기관의 종류	(추가) 취학자녀의 방과후 돌봄기관 이용 특성
	(추가)	취학 자녀가 방과후에 아이돌봄서비스와 기관을 함께 이용하는 이유	(추가) 취학자녀의 방과후 돌봄기관 이용 특성
	(추가)	취학자녀의 돌봄에 대한 아이돌보미에 기대하는 역할	(추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	5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정책에 관한 인지 여부	(유지) 정책 변경 내용을 반영한 보기 수정
	(추가)	이용해본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6	현재 이용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유지) 서비스 유형의 변경 사항 반영
	6-1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가구의) 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함에도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유지)
	7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유지)
	8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작 시기	(유지)
	9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기간	(유지)
	(추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방법	대기시스템 이용 경험 질문 추가
	(추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시스템 이용 만족도	대기시스템 이용 경험 질문 추가
	(추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점 항목 동의도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점 항목에 대한 동의도 추가
	10	아이돌봄서비스 정기적 이용 여부	(유지)
	10-1	(정기 이용시) 주당 이용 횟수	
	10-2	(정기 이용시) 주당 이용 시간	

구분	문항번호	2018년 조사 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추가)	(정기 이용시) 이용 시간대	(추가) 현재 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욕구 파악 필요. 문 20-1, 20-2을 활용해 현재 이용 시간대에 대한 설문으로 변형
	(추가)	(정기 이용시) 주당 이용 시간에 대한 만족도	(추가)
	(추가)	(정기 이용시 주당 이용시간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더 이용하지 않는 이유	(추가)
	10-3	(정기 이용시) 주중/주말/방학중 이용시간대	
	(추가)	(수시 이용시) 월평균 이용 횟수	(추가) 수시 이용 형태 파악 필요
	11	아이돌봄서비스 회당 평균 이용시간	
	1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월평균 지출 비용(정부지원금 제외)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_이용 시간의 양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이용 변화 파악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_이용 시간대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이용 변화 파악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_지원대상 경험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경험 파악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만족도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경험 파악
	(추가)	지출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	(추가)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도 파악
	13-1	해당하는 소득기준 유형	(유지) 문 6 앞으로 위치 변경 고려
	13-2	이용요금 및 부담수준의 적절성 정도	(변형) '이용요금의 적절성 정도'와 '본인 소득기준 유형의 본인부담 적절성 정도'로 구분하여 질문
	13-3	부담가능한 최대 본인 부담액 수준	(삭제) 응답의 주관성이 높고, 응답 결과를 본인 부담 수준 결정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1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애로사항	(유지)
	1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유지)
	(추가)	대기시스템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	(추가)
	(추가)	간편결제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	(추가)
	(추가)	모바일 앱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	(추가)
	16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 체감하는 변화	(유지)
	17	아이돌보미와의 갈등 경험 여부	(유지)
	17-1	아이돌보미와의 갈등 이유	(유지)
	17-2	아이돌보미와의 갈등 해결 방법	(유지)
	18	선호하는 아이돌보미 연령	(유지)

구분	문항번호	2018년 조사 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18-1	해당 연령의 아이돌보미 선호 이유	(유지)
	(추가)	선호하는 아이돌보미 경력	(추가) 아이돌보미 질 제고 요구 관련 문항 추가
	(추가)	해당 경력의 아이돌보미를 선호하는 이유	(추가)
	(추가)	돌봄 관련 자격증 소유 아이돌보미에 대한 선호도	(추가) 아이돌보미 질 제고 요구 관련 문항 추가
	(추가)	자격증 소유 아이돌보미를 선호하는 이유	(추가)
	19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단 경험	(유지)
	19-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단 이유	(유지)
향후 아이돌보미 이용 계획 및 개선요구	20	향후 5년 내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유형별 이용 계획	(변경 또는 삭제) 향후 1년 이후의 이용 계획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결과 활용이 의문시. 다음해 이용 계획만 질문하거나 삭제.
	20-1	평일 희망하는 서비스 이용 시간	(변경) 현재 운영시간 외 희망 이용 시간 체크할 수 있도록 추가. 다음해 희망이용시간으로 한정
	20-2	평일 야간, 주말 서비스 희망 여부	(변경) 주말 희망하는 서비스 이용 시간 문항으로 변경.
	21	종합형 서비스 이용 희망 여부	(변경) 종합형 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서비스 이용 희망 여부를 질문하는 문항으로 변경
	21-1	종합형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변경) 서비스 유형별 해당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이유
	22	보육교사형 서비스 이용 희망 여부	(삭제) 보육교사형 서비스 미운영에 따라 삭제. 돌봄관련 자격증 소지 아이돌보미에 대한 선호 문항으로 대체될 수 있음.
	22-1	보육교사형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삭제) 서비스 미운영에 따라 삭제
	23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 요구 사항	(유지)
	24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논의 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	(변경) 보기의 개선사항 중 실현된 사항 삭제 및 해당 시점의 개선 논의 사항으로 보기 대체
아이돌보미 대체서비스 이용 경험	25	민간육아도우미 이용 경험	(유지)
	(추가)	(민간육아도우미 유경험자) 민간도우미 이용 경로	(추가) 민간도우미 이용 경로 변화 파악 필요
	25-1	(현재 이용중)민간육아도우미 병행 이용 이유	(유지)
	25-2	(현재 이용중)민간육아도우미 서비스 이용 기간	(유지)

구분	문항번호	2018년 조사 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추가)	(현재 이용중) 민간도우미 이용 형태	(추가) 정기/ 수시 이용 파악,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형태와 동일 형태 추가
	25-3-1	(현재 이용중) 민간도우미 이용 유형	(유지)
	25-3-2	(현재 이용중) 민간도우미 이용의 빈도	(유지)
	25-3-3	(현재 이용중) 민간도우미 1회당 이용 시간	(유지)
	(추가)	(현재 이용중) 민간도우미 시간당 급여	(추가)
	25-3-4	(현재 이용중) 민간도우미 월평균 이용 비용	(유지)
	26	민간도우미에 비한 아이돌보미(서비스)의 장점	(변형) 동일 항목에 대한 민간도우미와 아이돌보미의 특성에 대한 동의도 정도로 비교 가능하도록 함.
	27	아이돌보미(서비스)에 비한 민간도우미의 장점	
응답가구 특성	28	동거 가구원수	(유지)
	29	가족구성	(유지)
	30	가족유형	(유지) 양육공백 가정 종류 확인
	31-1	근로특성(취업 여부)	(유지)
	31-2	근로특성(취업자의 근로 형태)	(유지)
	31-3	근로특성(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유지)
	31-4	근로특성(종사상 지위)	(유지)
	32	가구소득	(변경) 총 가구소득만 질문
이용 중단가구 설문	(추가)	이용중단 가구의 (중단 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추가) 이용실태 범주의 설문 문항을 서비스 이용 중단 전의 이용실태로 응답하도록 동일 문항 구성으로 추가할 필요
기타 추가안			정부 정책의 변화 내용(서비스 이용요금, 돌보미 자격제도 도입, 모바일 앱, 대기시스템, 간편 결제 도입, 아이돌보미 만족도 평가 결과 열람, 아이돌보미 자격제도 도입 등)에 대한 인지 정도와 만족도 파악 문항
기타 수정안			서비스 대상자녀의 연령별로 구분된 범주 구성(영아/유아/초저/초고)

주: 변경 전은 2018년 조사항목이고, 실태조사(안)은 본 연구의 결과임.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p.36, pp.385-396.

추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이용자 대상 설문지의 응답 대상을 조사시점 현재 이용자로 한정할 것인지, 이전 이용 경험자를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현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불만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한 경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어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에 미흡할 수 있다. 한편, 시범 실태조사에서 포함되었던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구)에 대한 조사도 실제 실태조사에서 유지된다면 이러한 서비스 이용 중단가구가 조사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으나 그 사례수는 매우 미미한 비율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조사의 대상을 일정 기간 내 서비스를 중단한 가구까지 포함하는 것이 좀더 조사 목적 달성에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 경우 본 설문지의 문항에 상당 부분의 변경이 필요하다. 현재 문항 구성에 포함된 (현재)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범주의 문항을 서비스 이용중단 가구를 대상으로 ‘(중단전)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태’로 변형하여 추가 범주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 아이돌보미 대상 조사

2018년 아이돌보미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8)의 조사 항목을 바탕으로 종합 실태조사 설문지의 주요 항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2018년 조사 설문지의 취업경력 특성,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아이 돌봄 활동 실태와 만족도, 아이 돌봄 활동의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 응답자 특성에 관한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여 전체적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표 IV-4-4 참조).

추가되어야 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어려움에 관해 묻는 문항 추가가 필요하다. 감염병 재난 등 해당 연도에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웠던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지, 어떠한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아이돌보미 업무 수행을 위해 추가로 받은 지원이 있는지, 어떠한 점이 개선/보완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돌보미들의 의견 수집이 필요하다.

둘째,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으로 인해 2022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문항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아이돌보미와 관련하여 변

화된 내용은 아이돌보미 자격 제재 강화(자격정지 기간 3년으로 확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와 아이돌보미 인성 및 적성검사를 통한 자격 검증 과정 추가 등이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 4. 30). 따라서 아이돌보미 자격 제재 강화와 인적성 검사 추가에 대한 아이돌보미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 신설이 아동학대 예방으로 이어지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문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표 IV-4-4〉에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조사 항목 대비 종합실태조사에서 유지하고 수정, 추가해야 할 사항을 변인별로 정리하였다.

〈표 IV-4-4〉 아이돌보미 대상 조사 항목(안)

구분	문항 번호	2018년 조사 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취업경력 및 특성	1	아이돌보미 활동 여부, 활동 유형	(유지)
	2	취업 경력(기간)	(유지)
	3	아이돌보미 활동 이전 아동 대상 취업경력(직종/업무), 경력, 대상 아동 연령	(유지)
	4	정부 사업 활동 경험	(유지)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5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경험 유무 양성교육 내용 만족도 양성교육 방법 만족도 불만족 이유	(수정) 시간 적절성(교육 일수, 교육 시간, 교육 횟수), 내용 적절성(도움 되었던 교육 내용, 필요한 교육 내용) 질문으로 수정
	6	양성교육 개선사항	(유지)
	7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경험 유무 보수교육 내용 만족도 보수교육 방법 만족도 불만족 이유	(수정) 시간 적절성(교육 일수, 교육 시간, 교육 횟수), 내용 적절성(도움 되었던 교육 내용, 필요한 교육 내용) 질문으로 수정
	8	보수교육 개선사항	(유지)
아이돌봄 활동 실태와 만족도	9	아이돌보미 활동 경력(기간) - 구간	(유지) 연속변인으로 수정(0년 0월)
	10	돌보미로 활동하는 시간(종일제/시간제) 한 주 활동 시간(평일/주말) 선호하는 시간(평일/주말)	(유지)
	11	가장 선호하는 활동 시간대 선호하는 이유	(유지)
	12	돌봄 선호 연령	(유지)
	13	주당 돌보미 활동 시간	10번 문항과 중복되므로 삭제
	14	돌보미 활동 동기	(유지)
	15	돌보미 활동 외 정기적 유급 직업 활동 유무, 직업 종류, 월 평균 급여	(유지)

IV. 종합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조사 설계 제안

구분	문항 번호	2018년 조사 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16	선호 활동 유형(종일제 vs. 시간제) 선호 이유	(유지)
	17	활동 중단 여부(1개월 이상) 활동 중단 기간 중단 이유, 어려움 다시 일하게 된 이유	(수정) 활동 중단 이유만 남기고 활동 중 어려움(17-2-2)은 19번으로 통합
	18	아이돌보미 관련 만족도	(유지)
아이돌보 활동의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	19	아이돌보미 활동 어려움	(유지)
	20	활동 개선이 필요한 부분	(유지)
	21	4대 보험 만족도 만족하지 않는 이유	(수정) 1개월 기준 60시간 이상 근무일 때 4대보험을 제공하는 기준에 대한 만 족도를 묻는 질문으로 수정 4대 보험 가입 관련 개선점 질문 추가
	22	아이돌보미 직업 추천 의향 추천/비추천 이유	(유지)
응답자 특성	23	성별	(유지)
	24	연령	(유지)
	25	자녀 유무 자녀 수, 연령, 동거 여부	(유지)
	26	건강상태	(유지)
	27	월평균 가구소득 - 구간 아이돌보미 개인 월 평균 소득 - 구간 소득 만족도	(유지) 연속 변인으로 수정(000만원)
	28	희망 근무 시기(언제까지)	(유지)
	29	최종학력, 전공	(유지)
	30	소지 자격증	(유지)
추가안			코로나 관련 질문 추가(위생이나 감염 위 험 관련, 아이와의 상호작용 등) 인성 적성검사 받는 것에 대한 인식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pp.397-407 설문지 내용 바탕으로 정리

라.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조사

앞서 2장, 2절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현황 부분에서 아이돌보미의 전달 및 행정 체계가 2022년 1월 개정된 아이돌봄지원법 시행으로 변화하게 됨을 설명하였다. 2022년 1월부터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소속으로 계약을 하게 되며, 이들을 가정에 배치하는 업무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한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 4. 30.). 아이돌보미의 계약과 복무에 관련된 업무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안전 지원 업무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이 같은 체제의 변화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조사 항목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근무자와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사업 지원 종사자 대상 설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전국 227개소, 2021년 1월 기준)를 대상으로는 아이돌보미 가정 연계, 배치, 가정 대상 민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전국 17개소)에서는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등 아이돌보미 관련 민원처리, 돌보미 자격 관리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IV-4-5〉에는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변수 대비 종합실태조사에서 유지하고 수정, 추가해야 할 사항을 변인별로 정리하였다.

〈표 IV-4-5〉 광역지원센터,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조사 항목(안)

구분	문항 번호	2018년 조사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서비스제공기관
응답자 특성	1	성별	(유지)	(유지)
	2	아이돌보미 업무 종사 기간	(유지)	(유지)
	3	근무 지역	(수정) 시, 도로 작성	(수정) 시, 도로 작성
	4	인력 유형(전담/지원)	(유지)	(유지)
	5	소지 자격	(유지)	(유지)
기관 기본 현황 및 업무 수행 전반	6	기관 내 아이돌봄서비스 업무 담당 인력수	(유지)	(유지)
	7	기관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수	(수정) 광역지원센터에서 채용/계약한 아이돌보미 수(지난 한달 기준)	(수정) 기관에서 배치한 광 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 보미 수(지난 한달 기준)

구분	문항 번호	2018년 조사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서비스제공기관
	8	아이돌보미 관련 담당 업무	(유지)	(유지)
	9	(선발) 우선 선발 기준	(유지)	NA
	10	(선발) 선발 업무 어려움	(유지)	NA
	11	(가정 연계) 가정 연계 업무 어려움	NA	(유지)
	12	(가정 연계) 조정위원회 개최 여부, 횟수	NA	(유지)
	13	(가정 연계) 돌보미 교체 주요 사유	NA	(유지)
	14	(가정 연계) 돌보미 활동 계약 해지, 연계 중지 주요 사유	(유지)	
	15	(가정 연계) 이용 가정 서비스 제한 주된 사유	NA	(유지)
	16	(민원처리) 아이돌보미의 불만	(유지)	NA
	17	(민원처리) 정부 지원 이용 가정의 불만	NA	(유지)
	18	(민원처리) 정부 미지원 이용 가정의 불만	NA	(유지)
	19	지난 1년간 자격 정지 자격 취소된 아이돌보미 수	자격정지 기준 변화 내용 반영: 자격취소 사유에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 만료 이후 3년 내 자격정지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등 추가	NA
업무 및 처우에 대한 인식과 애로사항	20	제공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	(유지)	(유지)
	21	전담 인력 배치기준의 적정성 적절한 전담인력 1인당 아이돌보미 수	(유지) (수정) 적절한 전담인력 1인당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수/계약 대상 아이돌보미 수	(유지) (수정) 적절한 전담인력 1인당 배치하는 아이돌보미 수 아이돌보미 50명당 1명, 200명 이상시 팀장 배치 타당성
	22	기관 내 아이돌보미 업무 담당 총인력 충분성 필요한 인원 총원 수	(유지)	(유지)
	23	업무 담당 시 가장 어려운 점	(유지)	(유지)
아이돌봄서	24	아이돌보미 제도의 개선점	(유지)	(유지)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정비 방안

구분	문항 번호	2018년 조사항목	종합실태조사 조사항목(안)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서비스제공기관
비스 업무 개선 요구	25	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봄 업무 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선점	(수정) 광역지원센터의 아이돌봄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선점	(유지)
추가안			서비스 체계 변경 이후 운영 안정화 정도 체계 변경으로 인한 어려움	서비스 체계 변경 이후 운영 안정화 정도 체계 변경으로 인한 어려움

주: NA = 해당사항 없음.

자료: 1)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pp.408-413 설문지 내용 바탕으로 정리
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4. 30).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가족 지원 체계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활용 방안

01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활용 방안

02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제언

V.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활용 방안

I~IV장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받는 법정 실태조사로 추진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일정 계획, 적정한 조사 규모와 표본설계에 반영할 주요 변인, 조사 항목 등을 기술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설계를 통해 추진할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활용 방안

아이돌봄지원법 제29조의2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목적을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즉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를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태조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정책 측면에 부합하는 문항으로 적절한 대상에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각 조사대상별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부분을 짚어보도록 한다.

가. 이용대상자 조사

2020년 말 기준 만12세이하 아동 인구 5,361,526명³¹⁾ 중 서비스 이용 아동 인구는 91,715명³²⁾으로 약 1.7%에 해당한다. 아이돌봄지원법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 정도 및 이용 수요’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처럼 이용 인구가 극히 미미한 서비스에 있어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 추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요추정의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오히려 이보다는 미이용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인지도, 돌봄서비스 욕구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안하거나 못한 이유를 파악하여 아이돌봄서비

31) 본고 <표 IV-1-1>을 참고할 것.

32) 본고 <표 IV-1-6>을 참고할 것.

스 이용자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얻는데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 대상 가구 조사의 대다수를 차지할 미이용 가구의 자녀수와 아동 연령, 돌봄 공백 유형별 개별 돌봄서비스의 욕구와 대응 실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지원 정책에 대한 의향을 조사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나. 이용가구 조사

서비스의 유형별 이용 비중 등 추이는 여성가족부가 행정자료로 집계하고 있는 사업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용가구 조사에서는 이용가구가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별 상세한 이용 실태(이용횟수, 회당 이용 시간, 시간대, 비용 등)와 타 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 행태(이용 서비스와 구체적 이용 행태, 병행 이용 이유)의 파악과 개선사항, 정책변화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초점을 둔 문항 구성을 제안하였는 바, 이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 지원에 하고 있는 역할과 비중, 미흡한 점, 정책방향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만족도,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용자 입장에서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개선 정책 개발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아이돌보미 조사

아이돌보미 조사에서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의 특성과 일자리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아이돌보미라는 일자리의 주요 관심 대상층을 파악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양과 시간대, 소득 수준, 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제공의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양질의 일자리로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조사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와 이용을 원하는 기관을 매칭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며, 서비스제공기관의 종사자가 이러한 서비스 연계 및 민원처리, 아이돌보미 관련 노무 관리를 통해 운영이 되고 있어 서비스의 원활한 연

제와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업무 처리 환경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조사에서는 종사자들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업무의 현황과 애로사항,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정책 지원의 요구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어 서비스 연계 업무의 개선과 이용자, 아이돌보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제언

가. 육아지원체계 내에서의 차별화된 역할 정립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기의 기관보육시스템의 보편화와 초등학교령기의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축된 기관 돌봄시스템의 확대 속에서도 나타나는 틈새돌봄 수요와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돌봄서비스이다. 그러나, 이러한 틈새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을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통해 서비스 인력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미스매칭 문제와 아동수의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감소의 경향에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가정으로 찾아가는 1:1 서비스라는 점에서 인력의 신뢰성과 자질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입장벽 낮은 여성일자리로서 아이돌보미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용 기준을 강화한 전문화된 일자리로 접근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다수의 아동에 표준화된 내용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심의 돌봄서비스와 차별화된 아이돌봄서비스 만의 역할을 정립하고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받으려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 보육 이용 연령이 점점 하향화되고 있고 출산률의 급격한 감소로 수요층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며, 영아기 부모의 직접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수요는 2015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³³⁾. 즉, 아이돌봄서비스는

33) 본고의 2장 2절 <표 II-2-8>을 참조.

90% 이상이 시간제서비스에 대한 수요이며, 향후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동의 등하원(하교) 시간과 부모의 출퇴근 시간 간 공백 외에 어떠한 ‘틈새’에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숨어 있는 새로운 돌봄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개별돌봄서비스의 장점을 살려 수요자의 욕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나.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의 안정화

아이돌봄서비스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위해 시스템이 개편되었으나, 새로운 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잦은 과부하와 에러의 발생으로 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고, 이용자 측면에서도 불편과 민원이 초래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긴급돌봄서비스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접수,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서비스 도입 등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속한 안정화를 통해 서비스 업무의 고도화와 효율화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기관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에 비해 아이돌봄서비스는 더욱 집중적이고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나 한편으로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게 이용자는 가정의 공간을 개방해야하며 1:1에 의한 폐쇄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자체와 서비스 인력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

국가가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에 비해서는 신뢰가 높지만 여전히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인구가 희소하다보니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인지도도 높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에서의 사고들과 관련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업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아이돌보미의 자격제도 도입이 예정되고 있는 바, 자격제도 도입 이전에 아이돌보미에 양질의 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 기준을 높일 필요도 있다. 단지 국가가 제공하

는 서비스여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일정한 자격과 인성, 경력을 갖춘 인력이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여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승태(2011). 국가통계 품질제고를 위한 한국과 주요 외국의 통계제도 비교분석. 국제지역연구, 15(2), 243-270.
-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19). 『보육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보건복지부(2020). 『장기요양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 여성가족부(2020b).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통계(세부자료)).
- 여성가족부(2021a).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21b). 2021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여성가족부(2021c).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
- 이삼열·정운수(2008). 지식정보사회와 국가통계정책.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08(0), 1-10.
- 임명선(2015). 국가통계작성·승인 길라잡이. KIPA 조사포럼, 15(Winter), 62-69.
- 정지범(2014).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법제처·국정홍보처·중앙인사위원회·국가청소년위원회(2006. 11).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요약본).
- 통계청(2018). 통계행정편람. 통계청.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0). 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³⁴⁾.

【온라인 자료】

- 보육실태조사 통계설명자료(<http://www.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 2021. 9. 3. 인출)
- 승인통계검색_복지부문(<http://www.narastat.kr/pms/pub/scs/css/selectConfirmStatsList.do>, 2021. 9. 3. 인출)
- 승인통계 부문별 현황(<http://www.narastat.kr/pms/pub/scs/css/selectConfirmStatsStatusRealm.do>, 2021. 9. 3. 인출)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front/main/main.do>, 2021. 8. 26. 인출)
- 장기요양실태조사 통계설명자료(<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17104&inputYear=2019>, 2021. 9. 3. 인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 2021. 10. 19. 인출)
-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2021. 9. 2. 인출)
- KOSIS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3&conn_path=I2, 2021. 10. 19 인출)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06. 6. 21). 긴급상황 발생시 ‘아이를 돌봐드립니다’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4. 30).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가족 지원 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7. 8).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계기, 아이돌봄 지원 사업 운영 점검.
- 통계청 보도자료(2021. 6. 22).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34) 대외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 여성가족부 협조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임.

【관련 법령】

아이돌봄지원법(법률 제17539호)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158호)

통계법(법률 제17339호)

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21호)

부록 1. 부표

〈부록 표 1〉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별 서비스제공기관(2021년 기준)

지역	세부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서울 (25개소)	강남구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강동구	서울 강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북구	서울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강서구	서울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악구	서울 관악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진구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로구	서울 구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금천구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원구	서울 노원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봉구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동작구	동작구 아이돌봄지원사업
	마포구	서울 마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초구	서울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성동구	서울 성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북구	서울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송파구	서울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양천구	서울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용산구	서울 용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은평구	서울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로구	서울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중구	서울 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량구	종량구비전공유협동조합
부산 (14개소)	강서구	부산 강서구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금정구	부산 금정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장군	부산 기장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구	부산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동래구	부산 동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세부지역	서비스제공기관
	부산진구	부산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북구	부산 북구 사회복지법인공덕향
	사상구	부산 사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하구	부산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구	부산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영구	부산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제구	부산 연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도구	부산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운대구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8개소)	남구	대구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달서구	대구 달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달성군	대구 달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구	대구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북구	대구 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구	대구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성구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구	대구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천 (9개소)	강화군	인천 강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계양구	인천 계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구	인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구	인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가족센터
	부평구	인천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연수구	인천 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구	인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구	인천서구 아이돌봄지원센터
광주 (5개소)	광산구	광주 광산구 (사)광주디아코니아
	남구	광주 남구 사단법인 그루터기
	동구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북구	광주 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구	사)건강가정연구개발원
대전 (5개소)	대덕구	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성구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구	대전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구	무지개사회적협동조합
	중구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세부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울산 (4개소)	남구	울산 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구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북구	울산 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울주군	울산 울주군 아이돌봄지원센터
	중구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세종 (1개소)	세종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경기 (31개소)	가평군	경기 가평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양시	경기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과천시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광명시	경기 광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주시	경기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리시	구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포시	경기 군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두천시	동두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천시	경기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흥시	경기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산시	경기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성시	경기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양시	경기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주시	경기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양평군	경기 양평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주시	경기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천군	경기 연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오산시	경기 오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용인시	경기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왕시	경기 의왕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천시	이천YMCA
	파주시	경기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택시	경기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천시	경기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남시	경기 하남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화성시	화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세부지역	서비스제공기관
강원 (18개소)	강릉시	강원 강릉시 강릉어린이집연합회
	고성군	강원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동해시	강원 동해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삼척시	강원 삼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속초시	강원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구군	강원 양구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양군	강원 양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월군	강원 영월군 건가다가통합센터시범운영기관
	원주시	강원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제군	인제군건강가정다문화센터
	정선군	정선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철원군	강원 철원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춘천시	강원 춘천시 동부디아코니아
	태백시	강원 태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창군	강원 평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홍천군	강원 홍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화천군	강원 화천군 지역자활센터
	횡성군	강원 횡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북 (11개소)	괴산군	충북 괴산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양군	충북 단양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은군	충북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동군	영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옥천군	옥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음성군	충북 음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천시	충북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증평군	충북 증평군 증평여성단체협의회
	진천군	충북 진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주시	충북 청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주시	충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남 (15개소)	계룡시	계룡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주시	충남 공주시 사단법인 공주대 교육나눔
	금산군	금산군 가족통합지원센터
	논산시	충남 논산시 논산시청
	당진시	충남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보령시	충남 보령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여군	충남 부여군 부여군청

지역	세부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서산시	충남 서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천군	서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산시	충남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군	충남 예산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천안시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청양군	충남 청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태안군	충남 태안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홍성군	충남 홍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북 (14개소)	장수군	사단법인 장수군자원봉사센터
	고창군	전북 고창군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군산시	전북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제시	전북 김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원시	전북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무주군	전북 무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안군	전북 부안군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순창군	순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완주군	전북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익산시	전북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실군	전북 임실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주시	전북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읍시	전북 정읍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진안군	전북 진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남 (21개소)	무안군	무안군가족센터
	여수시	여수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강진군	강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흥군	전남 고흥군가족센터
	곡성군	전남 곡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양시	전남 광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례군	전남 구례군 (사)구례군새마을회
	나주시	전남 나주시 아이돌보미지원센터
	담양군	전남 담양군 여성단체협의회
	목포시	전남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성군	보성종합사회복지관
	순천시	전남 순천시 순천YWCA
	영광군	전남 영광지역자활센터
	영암군	전남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세부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완도군	전남 완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성군	전남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흥군	전남 장흥지역자활센터
	진도군	전남 진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함평군	사단법인나비뜰동산
	해남군	전남 해남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화순군	전남 화순군아이돌봄지원센터
경북 (23개소)	경산시	경북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주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고령군	고령군여성단체협의회
	구미시	경북 구미시 여성인력개발센터
	군위군	경북 군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천시	경북 김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경시	문경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봉화군	경북 봉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주시	경북 상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주군	경북 성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동시	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덕군	경북 영덕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양군	경북 영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주시	경북 영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천시	영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천군	예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울릉군	경북 울릉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울진군	울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성군	경북 의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도군	경북 청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송군	경북 청송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칠곡군	경북 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항시	경북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남 (20개소)	거제시	경남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거창군	거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성군	경남 고성군 고성지역자활센터
	김해시	경남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남해군	경남 남해군 남해여성회
	밀양시	경남 밀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세부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사천시	경남 사천시 사천YWCA
	산청군	경남 산청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산시	경남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의령군	경남 의령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진주시	경남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창녕군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진해	경남 창원시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통영시	경남 통영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동군	경남 하동지역자활센터
	함안군	경남 함안군 함안군청(주민복지과)
	함양군	경남 함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합천군	경남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
	창원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마산	사회적협동조합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제주 (2개소)	서귀포시	서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	제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front/main/main.do>에서 2021. 8. 26. 인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정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